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722-01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722-01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책임연구자】

유재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연구책임)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동연구진】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임정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재언

연구원 배혜원

임정미

이윤경

황남희

정경희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실태조사 검토	19
제1절 이론적 배경	21
제2절 기존 실태조사 검토	25
제3장 우리나라 노노돌봄 현황	31
제1절 전반적인 노인의 삶 현황	33
제2절 우리나라 노인 돌봄 수혜·제공 현황	38
제3절 우리나라 공식적 노노돌봄 및 정책 현황	44
제4절 전문가 관점에서의 노노돌봄 쟁점	70
제5절 소결	77
제4장 국내외 노노케어 사업 사례	79
제1절 해외 사례	82
제2절 국내 사례	94
제3절 소결	98

제5장 일반노인 노노돌봄 인식조사	99
제1절 조사 개요	101
제2절 조사 결과	103
제3절 소결	149
제6장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수혜자 심층대면조사	151
제1절 조사 개요	153
제2절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조사 결과	159
제3절 노노케어 사업 수혜자 조사 결과	180
제4절 소결	190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93
제1절 요약	195
제2절 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적 제언	198
참고문헌	205
부록	207
부록 1 노노돌봄에 대한 노인인식조사 조사표	207
부록 2 노노케어 참여자 심층대면조사 조사표	213
부록 3 노노케어 수혜자 심층대면조사 조사표	219
부록 4 부표 및 부그림	225

표 목차

〈표 2-1〉 제3기 인륜NAP 영역 구분, 대상, 내용	23
〈표 2-2〉 기존 조사의 노노돌봄 내용과 실태파악에서의 제한점	27
〈표 3-1〉 2000~2050년 인구 규모 및 구조 변화	34
〈표 3-2〉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55~79세)	36
〈표 3-3〉 현행 노인 일자리사업 체계(2017년 기준)	37
〈표 3-4〉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돌봄 수혜 실태	41
〈표 3-5〉 돌봄 내용별 노인의 돌봄 수혜 빈도	42
〈표 3-6〉 돌봄 내용별 주 돌봄 제공자	43
〈표 3-7〉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실태	45
〈표 3-8〉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공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실태	46
〈표 3-9〉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향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의향	47
〈표 3-10〉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향후 참여하고 싶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48
〈표 3-11〉 노노케어 정책의 변화양상(2005~2018년)	50
〈표 3-12〉 노노케어 사업의 개요(2018년)	53
〈표 3-13〉 노노케어 사업의 일반 현황(2015~2017년)	55
〈표 3-14〉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2015~2017년)	57
〈표 3-15〉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사유 및 사고 발생 현황(2015~2017년)	58
〈표 3-16〉 2016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584)	60
〈표 3-17〉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변경 경험(N=496)	62
〈표 3-18〉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지 경로(N=584)	63
〈표 3-19〉 2016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동기(N=584)	64
〈표 3-20〉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활동시간 및 근로유형(N=584)	65
〈표 3-21〉 2016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시 어려움(N=584)	66
〈표 3-22〉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사업참여 후 가장 큰 변화(N=584)	66
〈표 3-23〉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활동 세부내용별 만족도(N=584)	67
〈표 3-24〉 2016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개선 요구사항(N=584)	69
〈표 3-25〉 노노돌봄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70
〈표 3-26〉 노노돌봄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주요 논의 내용	71
〈표 3-27〉 노노돌봄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주요 논의 내용	73
〈표 4-1〉 노노돌봄 증가 원인	82

〈표 4-2〉 노노돌봄 부정적 사례	84
〈표 4-3〉 충청북도 자연마을 현황	96
〈표 4-4〉 충청북도 '9988행복지킴이' 운영체계	97
〈표 5-1〉 일반 노인 대상 노노돌봄 인식조사 개요	101
〈표 5-2〉 일반 노인 대상 노노돌봄 인식조사 내용	102
〈표 5-3〉 응답자 특성	105
〈표 5-4〉 응답자 특성에 따른 노인 돌봄의 책임자	107
〈표 5-5〉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	111
〈표 5-6〉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생각	114
〈표 5-7〉 노노돌봄 장려에 대한 생각	116
〈표 5-8〉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	120
〈표 5-9〉 노노돌봄 제공 노인의 어려움	124
〈표 5-10〉 노노돌봄 중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점	127
〈표 5-11〉 노노돌봄 중 학대 경험 유무	130
〈표 5-12〉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	133
〈표 5-13〉 다른 노인을 돌볼 때 필요한 도움	136
〈표 5-14〉 돌봄 시 국가, 사회의 제공 필요 서비스 유형	140
〈표 5-15〉 노노케어 사업 인지 여부	143
〈표 5-16〉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145
〈표 5-17〉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 돌봄 의향	148
〈표 6-1〉 조사내용	154
〈표 6-2〉 조사응답자 현황	155
〈표 6-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I	157
〈표 6-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II	158
〈표 6-5〉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	158
〈표 6-6〉 응답자의 기관유형별 분포	158
〈표 6-7〉 참여자의 활동내용 현황 I	160
〈표 6-8〉 참여자의 활동 현황 II	161
〈표 6-9〉 참여자의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견해 I	163
〈표 6-10〉 참여자의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견해 II	164
〈표 6-11〉 노노케어 참여자 심층대면조사 결과 개요	165

〈표 6-12〉 수혜자의 노노케어 서비스 이용 현황 I 181

〈표 6-13〉 수혜자의 노노케어서비스 이용현황 II 182

〈표 6-14〉 서비스유형별 도움 이용수준과 필요수준 182

〈표 6-15〉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견해 I 184

〈표 6-16〉 수혜자의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견해 II 184

〈표 6-17〉 노노케어 참여자 심층대면조사 결과 개요 185

부표 목차

〈부표 1〉 건강상태: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228

〈부표 2〉 주변 노인 돌봄 여부: 귀하는 가족 등 주변 노인을 돌보고 계십니까? 230

〈부표 3〉 돌봄 수혜 여부: 귀하는 현재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232

그림 목차

[그림 1-1] 2017~2050년 노인인구비율 추계	11
[그림 1-2] 1970~2050년 평균 기대수명 변화(성별)	12
[그림 1-3] 비공식적·공식적 노노돌봄 현황	13
[그림 1-4] 연구 내용 및 연구 목적	15
[그림 2-1] 노인인권 6개 영역과 16개 실행영역	24
[그림 2-2] 기존 실태조사를 통한 노노돌봄 현황 파악 가능성	30
[그림 3-1] 일도별 노인(65세 이상)의 가구형태의 변화(2008~2017년)	34
[그림 3-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35
[그림 3-3] 노인 경제활동참여율 변화	36
[그림 3-4]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제한이 있는 노인 비율: ADL 항목별 비교	38
[그림 3-5] 전체 노인 대비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제한이 있는 노인 비율: IADL 항목별 비교	39
[그림 3-6] 노노케어 사업의 일반 현황(2015~2017년)	54
[그림 3-7]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61
[그림 3-8]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참여 동기	64
[그림 3-9]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사업참여 후 가장 큰 변화(N=584)	68
[그림 3-10]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활동 세부내용별 만족도(N=584)	68
[그림 4-1] 노노돌봄 규모	85
[그림 4-2] 노노케어(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이용절차	87
[그림 5-1] 노인 돌봄의 책임자	106
[그림 5-2]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	110
[그림 5-3]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생각	112
[그림 5-4] 노노돌봄에 장려에 대한 생각	115
[그림 5-5] 노노돌봄의 장점	118
[그림 5-6] 노인 돌봄 제공 노인이 겪는 어려움	122
[그림 5-7] 노노돌봄 중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점	125
[그림 5-8] 노노돌봄 중 학대 경험 유무	128
[그림 5-9]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	131
[그림 5-10] 다른 노인을 돌볼 때 필요한 도움	134
[그림 5-11] 돌봄 받을 때 필요한 국가, 사회가 제공하는 도움	138
[그림 5-12] 노노케어 사업 인지 여부	141

[그림 5-13]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144
 [그림 5-14]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 돌봄 의향 146
 [그림 6-1] 서비스유형별 도움 이용수준과 필요수준 183

부그림 목차

[부그림 1]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조사 모집단 분포(2018년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분포) 225
 [부그림 2]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조사 목표할당 분포: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 225
 [부그림 3]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조사 조사결과 분포 226
 [부그림 4]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조사 셀 가중값 적용 226
 [부그림 5] 건강상태 227
 [부그림 6] 주변 노인 돌봄 여부 229
 [부그림 7] 돌봄 수혜 여부 231

제1장 서론

- 본 연구는 다각적인 노노돌봄 현상을 검토하고 일반 노인과 노노케어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의 노노돌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연구내용은 노노돌봄 관련 문헌자료 검토, 국내의 법, 제도, 사업 현황 등의 기존 실태조사 검토,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노노돌봄 현황 검토, 선진 해외사례와 국내 우수사례 소개, 노노돌봄 관련 일반 노인 인식 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수혜자 심층대면조사 실시 및 분석으로 구성함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통계자료 분석, 노노돌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함
 - 설문조사는 전국의 60세 이상 일반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노돌봄의 책임, 가족 돌봄에 대한 생각, 우려 사항 등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조사를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함
 - 심층대면조사는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117명과 수혜자 100명을 대상으로 노노케어 참여 및 이용 현황과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함. 이와 함께 3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노돌봄 서비스 진단과 평가,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조사도 진행함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실태조사 검토

- 노인인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인인권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정리함

2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 노노돌봄과 관련된 기존 실태조사 검토를 통해 활용도 진단 및 제한점 분석을 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새롭게 조사해야 할 대상자와 조사내용을 도출함
- 노인실태조사, 고령화연구패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 등 기존 실태조사의 자료만으로는 비공식적·공식적 노노돌봄 제공자와 수혜자의 특성과 현황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노돌봄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

제3장 우리나라 노노돌봄 현황

- 우리나라 노노돌봄의 수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하고, 노노돌봄 제공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6년 노인일자리 사업 실태조사'를 검토함
- 돌봄 수혜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노인의 9%가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제한, 약 24%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제한이 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고령, 사별, 단독가구일 경우 돌봄 수혜욕구가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돌봄 내용별로 주된 돌봄 제공자에 차이가 있음. 청소, 빨래, 시장보기, 목욕, 식사 준비 등은 배우자가 주된 돌봄 제공자인 경우가 많고, 외출동행은 아들이 주된 돌봄 제공자인 비율이 높음
- 돌봄을 제공하는 노노케어 참여자의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평균 연령은 75세로 고연령인 것으로 나타남
 - 노노케어 사업 참여 동기는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등 경제적인 동기가 70% 이상이고,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도 경제적인 보탬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사유에서 수요처/수혜자의 관계는 2016년 기준 4.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 일자리 전체 참여자의 동일 사유가 1.4%인 것에 비해 약 4배 높음

- 전문가 관점에서 노노돌봄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무자, 사회과학계열 교수 및 연구자, 공무원, 법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자문 회의를 실시함
- 전문가 심층면접의 참여자는 실무자 24명과 사회과학계열 교수 및 연구자 5명, 공무원 7명, 법학 전문가 2명의 총 38명으로 구성됨
- 실무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에서는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인식, 사업 운영, 서비스 내용에 관한 쟁점을 주로 논의함
- 사회과학계열 교수 및 연구자, 법학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에서는 비공식적 노노돌봄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노돌봄에서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하여 연구결과에 기반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함

제4장 국내외 노노케어 사업 사례

- 노노돌봄의 국내외 선진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사례와 국내 우수사례를 검토함
- 미국의 고령자동료프로그램은 노후소득 보장 지원과 함께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의 에이지웰(Agewell), 샌프란시스코의 엔보이(Envey) 등 노노돌봄 참여자와 수혜자를 연계, 관리해주는 민간의 영리 시장도 다양하게 활성화 되어 있음
- 유럽의 경우, 영국은 홈헬퍼 서비스를 통해 가사, 신체수발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지방정부 주도하에 시설 돌봄을 지양하고 재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은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가 70.3%로 교토시 실버인재센터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독거노인안부확인 서비스, 커뮤니티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서대문구의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참여자에게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충청북도

4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9988행복지킴이’는 읍면동 보다 작은 마을 단위로 참여자와 수혜자를 매칭시켜 다른 농어촌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큼

제5장 일반노인 노노돌봄 인식조사

□ 노노돌봄에 대해 60세 이상의 일반노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노인 노노돌봄 인식조사’를 실시함

〈표 1〉 일반 노인 대상 노노돌봄 인식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규모(최종응답자수)	총 1,000명(유선전화 255명, 무선전화 745명)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조사일시	2018년 9월 10일 ~ 9월 18일

○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및 가구 특성과 함께 노인 돌봄의 책임자 및 배우자, 자녀, 며느리의 돌봄에 대한 생각, 노노돌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및 우려, 필요한 국가정책 등으로 구성함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노노돌봄의 책임은 배우자(39.1%), 국가(27.3%), 노인인 자녀(24.0%), 지역사회(9.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배우자에 더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83.7%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노인인 자녀 또는 며느리가 부모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56.9%로 배우자 돌봄에 대한 인식보다는 부정적임

○ 노노돌봄 장려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73.0%로 높게 나타났고,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노인 간에 서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4.2%로 높았음.

- 한편, 노인 돌봄 제공자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신체건강 악화(45.9%) 및 정서적 스트레스(25.6%)가 높았음
- 노노돌봄 중 학대를 직접 경험한 것은 2.4%에 불과했고, 대중매체 또는 주변을 통해 간접 경험한 경우가 40%, 나머지는 직간접적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노노돌봄에서 노인인권 보호 정도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63.4%로 높음
- 노인 돌봄 시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는 경제적 보상(40.6%), 근로자로서의 복지지원(22.9%)이 높게 나타났고, 국가, 사회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서비스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 한편, 노노케어 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7%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76.8%는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6장 노노케어 사업 수혜자·참여자 심층대면조사

-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수혜자의 돌봄제공/이용 현황 및 견해를 살펴보고자 2018년 현재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117명과 수혜자 100명의 총 217명을 대상으로 심층대면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참여자, 수혜자 공통으로 구성하였고, 노노케어 활동내용 및 이용 경험, 노노케어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등의 문항은 각 집단의 특성에 맞춰 상이하게 구성하되 개방형과 폐쇄형 문항을 복합적으로 구성함
- 응답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참여자와 수혜자는 성비가 8:2로 여성이 많았으며, 참여자보다 수혜자가 고연령이며,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참여자는 기혼 상태가 많은 반면, 수혜자는 사별이 70%로 높았음
 - 참여자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6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 평균 3년 2개월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12개월 참여 유형이 6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었고, 도보로 편도 1시간 미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공 서비스는 평균 3.2개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말벗,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외에 가사, 외출동행 등도 제공하고 있었음
- 참여자는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3.6점(4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와 이용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90% 이상임
- 다만, 적정 활동비는 평균 31만 원이라고 응답하여 현행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적정 활동시간은 29시간으로 현행보다 다소 낮았음
- 심층대면조사 결과, 참여자는 사업내용, 자격 및 선발기준, 운영방법, 활동교육 및 관리 등의 활동규정의 제약으로 인해 수혜자와 불평등한 위계적 관계 형성, 수혜자 발굴, 무급 활동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수혜자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노케어 서비스 외에 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자는 16.3%에 불과했으나,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없는 노인이 62.6%로 높았음
- 이러한 돌봄 공백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노인이 월평균 10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음
- 서비스 유형별 이용수준과 필요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말벗, 안부확인 등의 정서적 서비스는 다소 감소하기를 원하는 반면, 청소나 빨래 등의 신체적인 서비스는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 서비스 만족도는 높았으나, 이용을 추천하는 수혜자는 74%였음
- 심층대면조사 결과, 수혜자들은 서비스 내용, 시간, 장소의 다양화와 별도의 물질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노노돌봄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음

- 노인 부부 가구 수가 늘어나고 노인 스스로의 인식도 변화되면서 가족 내 배우자에 의한 돌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배우자 노노돌봄보다 비중이 적고 우선순위가 낮아도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초고령 노부모를 연소 노인인 자녀 세대가 부양하는 부모-자녀 간 노노돌봄도 늘어날 수 있음
- 노노돌봄 인식조사 결과, 사회적 활동으로의 공식적 노노돌봄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할 것임
 - 경제적 보상이 있다면 가족이 아닌 노인을 돌볼 의향을 가진 노인이 50% 이상임
 -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정부 노노케어 사업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77%임

□ 노노돌봄 순기능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와 사회의 지원 필요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등에서 노인인권이 강조됨
- 2017~2021년 시행 제3기 인권 NAP에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권 보장'을 국가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를 추진함
 -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기회 보장
 - 다양한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 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 독거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노노돌봄 관련 정책적 제언

- 노노돌봄의 긍정적 효과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 고령의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찾아가는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
 -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8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에서 노인부부와 단독가구를 핵심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 노노케어 사업에서의 참여자와 수혜자의 권리 보장

- 모든 공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과 별개로 노노케어 사업에 적합한 규정을 새로 마련
- 출석 확인 및 활동 일지 작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노케어 사업에서의 과도한 관리·감독을 완화
- 수혜자 발굴·모집의 과도한 업무지시, 수혜자의 금품 요구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참여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신고·보호 장치 마련
- 수혜자가 노노케어 신청 시 불필요한 증빙서류(예: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제출을 요구받지 않도록 수행기관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교육하여 수혜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
- 수행기관 담당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또는 안내 실시

*주요용어: 노노돌봄, 노노케어, 노인인권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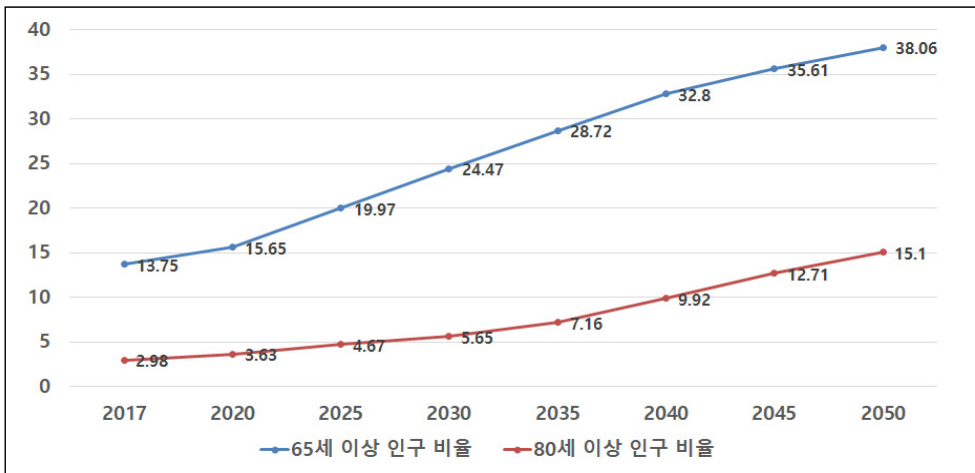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수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17년 전체 인구의 13.8%에 해당하는 708만 명에서 2025년 전체 인구의 20.0%인 1,05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은 1997년 74.7세에서 2017년 82.6세가 되었고, 20년 후인 2037년에는 86.4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이번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1] 2017~2050년 노인인구비율 추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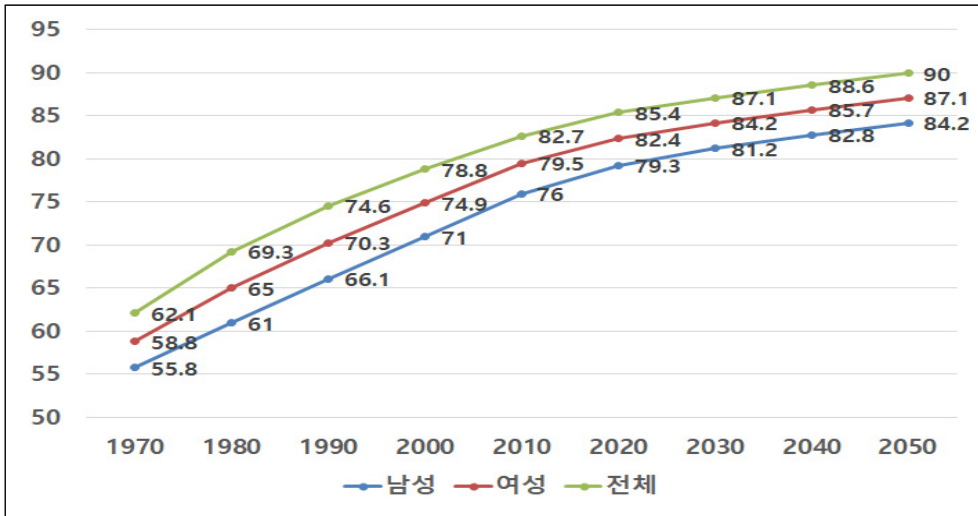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12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그림 1-2] 1970~2050년 평균 기대수명 변화(성별)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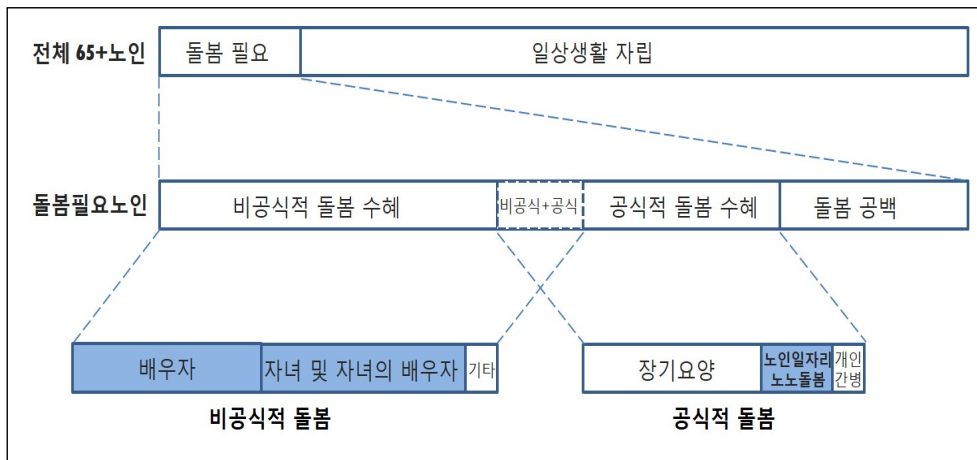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이러한 배경에서 돌봄 수혜자인 동시에 돌봄 제공자로서 노인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지만, 공식적·비공식적 관계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이하 노노돌봄)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미비한 상황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 18%가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이나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노노돌봄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40%는 배우자(노인)에게 돌봄을 받고 있고, 나머지 50%는 주로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에게 비공식적으로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노인의 74% 이상(80~84세 74.6%, 85세 이상 85.9%)이 타인에게 돌봄을 받는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자녀의 배우자도 노인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비공식적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로서 공식적인 노노돌봄을 하는 노인들에 관한 실태조사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공식적 노인 돌봄 비중보다는 적지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25%(장기요양보험서비스 19.0%, 노인 돌봄종합(기본)서비스 4.2%, 개인간병인·가사도우미 1.4%)가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 돌봄종합(기본)서비스와 같은 노인 돌봄제도는 2000년대 우리나라에도 도입 및 시행되면서 관련 연구와 정보가 급속히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노케어에 대해서는 참여자와 수혜자의 규모와 성·연령 특성 외에 당사자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제도적 요구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노노돌봄을 노인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한 국내의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림 1-3] 비공식적·공식적 노노돌봄 현황



주: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노노돌봄 유형을 도식화함.

노인 인권 보장 측면에서 노노돌봄 현상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노노돌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노돌봄에서의 신체·심리·경제적 부담이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간 노인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노돌봄 당사자 양측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노돌봄 당사자들의 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노노돌봄에서의 논점을 정리하고, 노노돌봄에 관한 법·제도·통계 현황 및 국내외 다양한 노노돌봄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자료만으로는 노노돌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대표성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노노케어¹⁾ 당사자(참여자와 수혜자) 실태조사, 전문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노노돌봄에 대한 찬반 및 이유, 노노돌봄 서비스 요구 등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노케어 사업의 두 당사자인 참여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공식적 노노케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다양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노노돌봄에서의 노인인권 보장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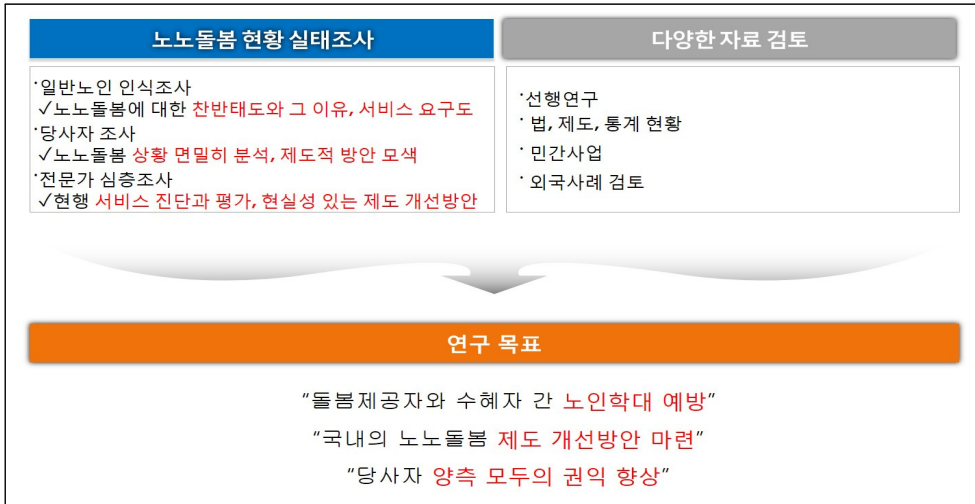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지니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노돌봄에 관한 문헌 자료, 법·제도·사업, 통계를 검토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노노돌봄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노돌봄에 특화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2017년 노인실태조사 등 기존 조사와 내용과 중복되지 않고 노노돌봄 당사자들의 인권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셋째, 노노돌봄에 관한 일반 노인 인식조사를 통해 노노돌봄에 대한 찬반 및 이유, 정책지원 요구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노노돌봄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넷째, 노노케어 사업의 제공자와 수혜자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 노인들이 막연하게 인식하는 것과 달리 실제 노노케어에서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규명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노인 돌봄제도가 발전된 국가의 노노돌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노노돌봄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노노돌봄 문제점을 개선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노노돌봄 현상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노노돌봄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본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비공식적·공식적 노인 간 돌봄에서는 노노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의 공익형 노노케어 사업은 정식 사업명인 '노노케어'로 표현함.

[그림 1-4] 연구 내용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은 문헌자료 검토, 국내의 법·제도·사업 현황 정리,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기존 통계자료 조사·분석, 노노돌봄을 주제로 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으로 구성하였다. 문헌자료 검토에서는 비공식적·공식적 노노돌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고찰하였고, 수집 대상은 논문, 공공기관 보고서, 언론 기사 등이다.

국내의 노노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도 추진 과정과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법·제도·사업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의 노노돌봄 서비스 우수사례는 전국적으로 보급·전파될 수 있도록 대도시에서의 민간 주도 상향식 사례와 중소도시·농어촌에서의 공공 주도 하향식 사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노노돌봄 정책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일본, 미국, 유럽국가 등의 선진국가에 대한 노노돌봄 법안과 제도, 사업 등을 검토하였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가부장적 전통문화를 가진 국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고 고령화 수준도 우리나라보다 높아서 향후 변화 전망에 참고하는 데 적합하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노노케어 사업과 가장 유사한 고령자동료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노노돌봄 서비스 사업 사례에 관해서도

참고하기에 적절하다. 그리고 대다수의 OECD 국가가 속한 유럽은 전반적인 제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에서는 비공식적 노노돌봄 실태 파악을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직접 분석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노노케어 사업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2차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노노돌봄에 초점을 맞춘 문항들을 구성하여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어려움, 제도적 지원 필요성, 서비스 실태, 긍정적/부정적 측면, 법·제도적 개선방안, 노노돌봄 당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방안 등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통계자료 분석, 노노돌봄 실태조사 실시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문헌연구는 국내외 논문, 공공기관 보고서, 언론 기사 문헌 자료를 수집해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미국, 일본, 유럽국가에서의 노노돌봄 법·제도·사업 우수 사례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나라의 노노케어와 비교를 한다. 또한, 국내의 노노케어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다른 지역 사업에서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사점도 제시한다. 통계자료분석은 행정통계와 기존에 수집된 ‘2017년 노인실태조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실태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해 비공식적 노노돌봄과 노인 일자리사업인 노노케어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본다.

여기에 더해 노노돌봄에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술 통계 분석을 한다. 노노돌봄 실태조사는 전국의 60세 이상 일반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을 전화조사한다. 또한, 노노케어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표집 한 참여자 117명과 수혜자 1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진과 조사원이 2인 1조로 방문하여 노노케어 참여자와 수혜자 각각을 대면 설문조사 하고, 설문조사 자료는 기초통계 분석을 하고 녹취된 심층면접조사 자료는 질적 분석을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연구기관 종사자, 법학 및 법조계 전문가, 사회복지공무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자체 공무원, 노노돌봄 서비스기관 운영자 등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노노돌봄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나온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노노케어 참여자와 수혜자, 전문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고, 보고서에서 이름은 가명으로 대체하며 소속, 직책,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사전에 연구윤리심의회 심사를 받았고, 심층면접 시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실태조사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기존 실태조사 검토

2

이론적 배경 및 << 기존 실태조사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 노인인권 개념

계층, 성별, 연령 등의 조건에 제한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인권의 기본 개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밝히고 있다(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2018; 원영희 외, 2017).

2. 국제, 국내 노인인권 정책

인권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인권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리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사회적 약자의 상황에 놓여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어서 노인 인권 실태를 더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유엔(국제연합 또는 United Nations: UN) 등 국제기구는 오래전부터 노인인권에 관한 선언을 실시하고 원칙과 행동 계획을 제시해왔다. 세계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 종합 보고서’에서 노인인권 국제동향을 정리한 바에 따르면, 1948년에 유엔이 처음으로 10가지 권리를 제시하는 노인 권리선언(Declaration of Old Age Rights)을 발표했다. 이후 1982년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f Ageing),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2002년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이 제시되었고, 국제노인인권협약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포괄적인 인권과 관련된 법으로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다(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2018). 노인인권과 관련된 법률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후준비지원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있다(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2018; 원영희 외, 2017).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 이하 인권NAP)을 수립하여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추진하는데, 노인도 인권NAP에서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2007~2011년 제1기, 2012~2016년 제2기를 거쳐, 2017~2021년까지 제3기 인권NAP가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권고를 한다.

노인에 관련하여 제3기 인권NAP에서는 1) 평균수명의 연장과 전통적 가족주의 변화로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 2) 우리 사회는 초단기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서, 3)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급증하였고 노인 학대와 자살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으며, 4) 고령사회에 적합한 취업 대책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체계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고 사회적 배경을 진단하였다. 그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인권 보장’의 목표 하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권 보장’을 국가의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1) 건강(의료)보호 및 연령 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 기회 보장, 3) 다양한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4) 노인관련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보장

을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5) 독거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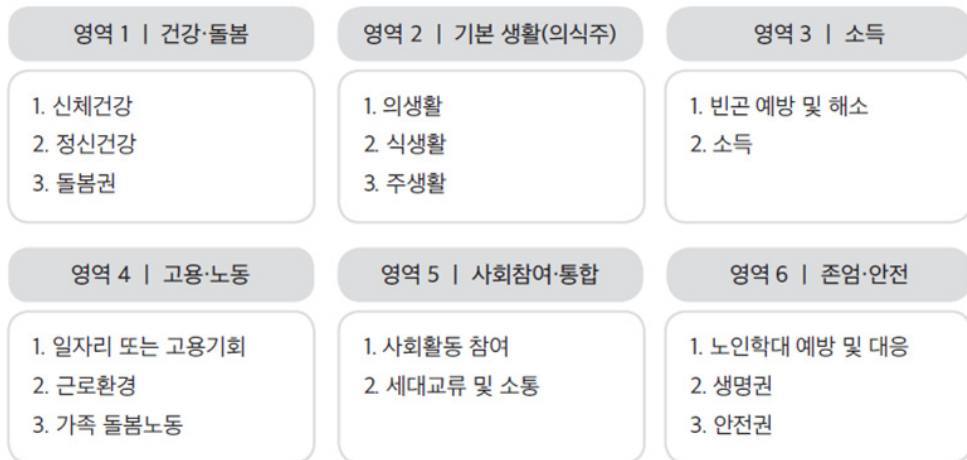
〈표 2-1〉 제3기 인권NAP 영역 구분, 대상, 내용

영역 구분		대상 및 내용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민 -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 노인 -병력자 -군인·의경 -시설생활인 -성적 소수자 -재외동포 -범죄피해자 -북한인권
인권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신체의 자유 -참정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인권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학술·예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생명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사회보장권 -근로의 권리 -근로3권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문화권 -환경권
	인권교육 강화	-학교 부문 인권교육 -공직종사자 인권교육 -시민사회 인권교육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제3기 인권 NAP에서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노인의 인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3) 인권교육 강화,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에는 신체의 자유, 참정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인권,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학술·예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생명권이 포함된다. 두 번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은 사회보장권 근로의 권리, 근로3권,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문화권, 환경권이 해당된다. 세 번째, 인권교육 강화는 학교 부문 인권교육, 공직종사자 인권교육, 시민사회 인권교육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마지막 네 번째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에는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의 내용이 해당된다.

[그림 2-1] 노인인권 6개 영역과 16개 실행영역



자료: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2018).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인권NAP와 별개로 ‘2017년 노인인권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노인인권종합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2017년 노인인권 실태조사’와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서는 노인 인권을 크게 1) 건강·돌봄, 2) 기본 생활(의식주), 3) 소득, 4) 고용·노동, 5) 사회참여·통합, 6) 존엄·안전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16개 실행영역으로 세분화했다. [영역1-건강·돌봄]은 (1)신체건강, (2)정신건강, (3)돌봄권, [영역 2-기본 생활(의식주)]은 (1)의생활, (2)식생활, (3)주생활, [영역 3-소득]은 (1)빈곤

예방 및 해소, (2)소득, [영역 4-고용·노동]은 (1)일자리 또는 고용기회, (2)근로환경, (3)가족 돌봄노동, [영역 5-사회참여·통합]은 (1)사회활동 참여, (2)세대교류 및 소통, [영역 6-존엄·안전]은 (1)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2)생명권, (3)안전권으로 각각 구성된다(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2018; 원영희 외, 2017).

본 보고서에서는 비공식적·공식적 노노돌봄 실태를 방금 소개한 인권NAP의 내용과 노인인권종합보고서의 노인인권 영역을 토대로 진단하고, 노노돌봄을 주고받는 노인들의 인권이 증진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제2절 기존 실태조사 검토

1. 기존 실태조사 검토 필요성

본 절에서는 노노돌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의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시기, 내용 등을 검토함으로써 노노돌봄 실태를 분석의 활용도와 제한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실시할 조사 대상자와 조사 내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노인실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최인희 외(2014) 연구, 홍석원 외(2015) 연구,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등의 기존실태조사를 검토하였다.

2. 기존 조사의 노노돌봄 내용과 제한점

가. 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법에 의거 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했다.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000명 정도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전문 조사원이 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면접조사를 했다. 그동안 1994년부터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까지 24년 동안 7번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은 조사 때마다 조금

씩 변동되었지만, 2017년 기준으로는 가구 일반 사항, 경제 상태, 가족관계, 건강 상태, 건강행태,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경제활동,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의 인식, 노후생활과 삶의 질, 생활환경, 인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노노돌봄 관련해서는 비공식적·공식적 돌봄을 받는 노인 현황, 배우자 노노돌봄 제공자로서의 노인 배우자, 돌봄 수혜자로서의 노인배우자 현황, 부모자녀 노노돌봄 제공자로서의 노인자녀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 노노돌봄 제공자 현황 파악이 어렵고, 공식적 돌봄 제공자 연령 정보가 없어서 공식적 노노돌봄 수혜자 현황 파악이 안 되며, (노인)자녀나 자녀의 배우자로부터의 노노돌봄 수혜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수행기관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약 10,0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CAPI 활용한 직접 면접조사를 하고,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여 제6차 조사까지 완료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 가족(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 자매), 건강, 고용, 소득·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삶의 질이다. 노노돌봄 관련해서는 노인 배우자와 노인 자녀에게 돌봄을 받는 노노돌봄 수혜자, 노인배우자와 노인부모를 돌보는 노노돌봄 제공자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 노노돌봄의 제공자와 수혜자 특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노노돌봄 실태를 파악할 때의 제한점이다.

〈표 2-2〉 기존 조사의 노노돌봄 내용과 실태파악에서의 제한점

연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연도	조사내용	노노돌봄 내용	제한점
노인 실태 조사	≥65세 노인 약 10,000명	조사원 직접 면접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가구 일반사항 -경제상태·활동 -가족관계 -건강상태·행태 -기능상태, 간병수발 -여가활동, 사회활동 -정책적 이슈 -노후생활, 삶의 질 -생활환경 -인지기능	-노노돌봄 수혜자 -배우자 노노돌봄 -부모자녀 돌봄 제공자	-공식 돌봄 제공자 -공식 돌봄 수혜자 -부모자녀 돌봄 수혜자
고령화 연구 패널	≥45세 노인 (2006년 기준) 약 10,000명	조사원 CAPI 직접 면접	2006년부터 2년 주기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건강 -고용 -소득·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 -삶의 질	-비공식 돌봄 수혜자 -비공식 돌봄 제공자	-공식 돌봄 수혜자 -공식 돌봄 제공자
한국 복지 패널	약 7,000 가구 저소득층 절반	조사원 CAPI 직접 면접	2006년부터 매년	-가구 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 -보험·퇴직·연금 -의료, 주거 -생활여건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세제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인식	-공식 돌봄 서비스 -공식 돌봄 수혜자 -공식 돌봄 인식태도	-노노돌봄과 일반돌봄 구분 어려움
최인희 외(2014)	수도권 ≥60세 유배우 여성 300명	조사원 직접 면접	2012년	-돌봄 제공자 특성 -가구형태 -돌봄기간 -건강상태 -신체·정서·경제부담 -건강상태 -공식 돌봄 정보인지 -공식 돌봄 이용 -정책욕구, 요구도	-여성 배우자 노노돌봄	-공식 돌봄 제공자 -공식 돌봄 수혜자 -부모자녀 돌봄 제공자 -부모자녀 돌봄 수혜자 -배우자 돌봄 수혜자 -남성 돌봄 제공자
홍석원 외 (2015)	노인 일자리 제공자, 수혜자	행정 DB	2012년	-노노 서비스 제공 -노노 서비스 수혜	-노인일자리 돌봄 제공자 -노인일자리 돌봄 수혜자	-노인일자리사업 외 공식 돌봄 -비공식 돌봄 수혜자 -비공식 돌봄 제공자
윤기연 외 (2016)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2,500명	면접 조사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향후 3년 주기 예정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실태 및 만족 -일반·가구 특성 -건강 및 의료이용 -사회참여 특성 및 심리적 특성 -생활시간 -복지서비스 -노후설계 -경제상태, 경제활동	-노인일자리 돌봄 제공자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 및 수혜자 -공식적 돌봄 수혜자

다.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함께 수행하는 한국복지패널 조사가 있다.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대상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약 7,000가구 이고, 저소득층 가구가 절반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적인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CAPI 직접면접조사 하는 방법으로 실시했다. 조사 시기는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 제12차 조사까지 완료되었다. 조사내용은 가구일반 사항,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 사회보험·퇴직금·개인연금 가입, 의료, 주거, 생활비, 소득, 부채·이자, 생활여건,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세제,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가족, 복지 인식으로 구성된다. 노노돌봄 관련해서는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항을 통해 공식적 돌봄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며, 복지인식 문항을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긍정/부정 태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과 인식에 관해서만 알 수 있고, 노노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과 인식에 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라. 최인희 외(2014) ‘노년기 가족돌봄의 위기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인희 외(2014)가 수행한 ‘노년기 가족 돌봄의 위기와 지원 방안 연구’에서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배우자 노노돌봄 제공자로서의 60세 이상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 연구의 조사 시기는 2012년이었고, 돌봄 제공자의 연령, 가구 형태, 돌봄 기간, 건강 상태, 신체·정서·경제 부담, 건강 상태, 공식적 돌봄 서비스 정보 인지, 공식적 돌봄 서비스 이용, 정책욕구 및 요구도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노노돌봄 관련해서는 배우자 노노돌봄 제공자로서의 여성 노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 노노돌봄 수혜자와 제공자, 비공식적 노노돌봄에서의 부모 자녀 수혜자와 제공자, 배우자 노노돌봄 수혜자로서의 노인, 배우자 노노돌봄 제공자 중에서도 남성 노인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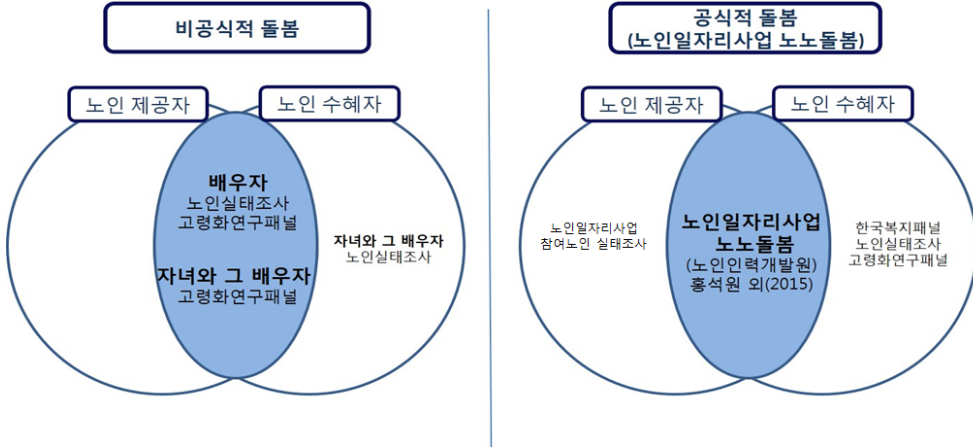
마. 홍석원 외(2015) ‘노노케어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간접적 건강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홍석원 외(2015)가 실시한 ‘노노케어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간접적 건강효과를 중심으로-’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의 노노돌봄 제공자와 수혜자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새누리 시스템의 노노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자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급여지급자료와 자격 자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조사 시기는 2012년이었고, 노노돌봄 서비스 제공 및 수혜 여부, 의료비, 의료이용에 관한 내용을 주로 조사했다. 노노돌봄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의 노노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특성 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도가 매우 높다. 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노돌봄은 공식적 노노돌봄 서비스 중에서도 그 비중이 적고, 비공식적 노노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현황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바. 윤기연 외(201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윤기연 외(2016)가 수행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2,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2007년부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장 최근 2016년까지 6번의 조사가 실시되었고, 향후 3년 주기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및 만족도, 일반 특성 및 가구 특성, 건강 및 의료이용, 사회참여 특성 및 심리적 특성, 생활시간, 복지서비스, 노후설계, 경제상태, 경제활동이었다. 이 조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돌봄 제공자에 대해 앞서 소개한 그 어떤 조사보다도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공식적 노노돌봄 수혜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제한점도 있다.

[그림 2-2] 기존 실태조사를 통한 노노돌봄 현황 파악 가능성



이를 종합하면, 선행연구와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해 비공식적 노노돌봄, 공식적 노노돌봄, 노노돌봄 제공자, 노노돌봄 수혜자 특성과 현황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2-2>와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공식적 노노돌봄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로 분석이 가능하나, 노노돌봄에 대한 노인들의 찬반 태도와 인식, 공식적 노노돌봄인 노노케어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 노노돌봄인 노인 일자리 사업의 노노케어 참여자에 관해서는 2016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나, 수혜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참여자와 수혜자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정책적 개선 요구는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다. 즉, 기존 실태조사 자료만으로는 비공식적·공식적 노노돌봄 제공자와 수혜자의 특성과 현황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노돌봄 전반에 관한 별도의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3 장

우리나라 노노돌봄 현황

제1절 전반적인 노인의 삶 현황

제2절 우리나라 노인 돌봄 수혜·제공 현황

제3절 우리나라 공식적 노노돌봄 및 정책 현황

제4절 전문가 관점에서의 노노돌봄 쟁점

제5절 소결

3

우리나라 노노돌봄 현황 <<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노돌봄 현황을 살펴보고자 전반적인 노인의 삶 현황, 노인돌봄 수혜현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노케어사업 현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및 가구형태, 부양가치관 변화, 노후준비, 경제활동 등의 노인의 삶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노인돌봄 수혜현황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외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정자료 및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노케어 사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노돌봄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1절 전반적인 노인의 삶 현황

1. 인구 및 가구 변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2000년 340만 명에서 2018년 738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50년에는 1,799만 명이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인구에 비해 총인구는 정체되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인구 대비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2018년 14.3%에서 2030년 24.3%, 2050년 37.4%에 이를 것이다. 그중에서도 75세 이상 후기 노인 인구는 2018년 6.2%에서 2030년 10.0%, 50년 23.1%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노케어 사업의 수혜자 대상 집단인 독거노인의 규모도 2018년 140만 명에서 2035년 300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4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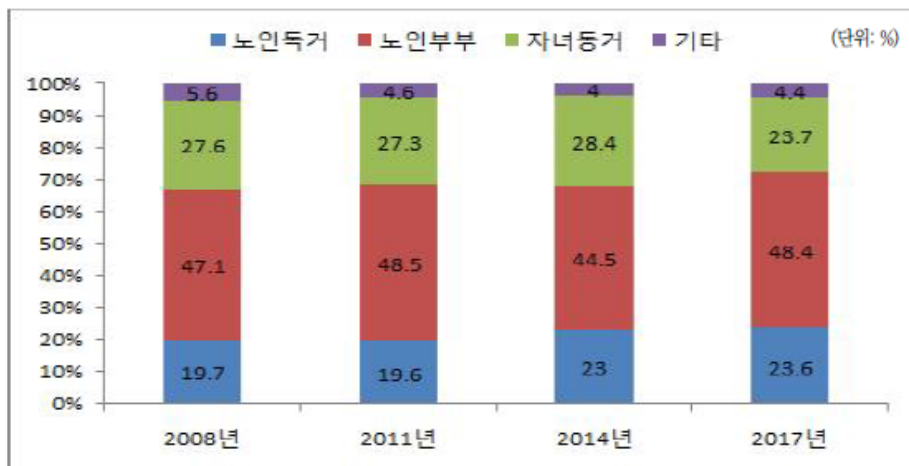
〈표 3-1〉 2000~2050년 인구 규모 및 구조 변화

구분	2000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50년
총인구	47,008	50,617	51,635	51,435	51,972	52,160	48,121
65세 이상 노인인구(명)	3,395	6,624	7,381	8,084	10,331	12,691	17,991
65세 이상 노인인구(%)	7.2	13.1	14.3	15.7	19.9	24.3	37.4
75세 이상 노인인구(%)	2.3	5.3	6.2	6.7	8.1	10.0	23.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8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 가구 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독거(2008년 19.7% → 2017년 23.6%)와 부부가구(2008년 47.1% → 2017년 48.4%)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의 비중은 2008년 27.6%에서 2017년 23.7%로 감소했다.

[그림 3-1] 일도별 노인(65세 이상)의 가구형태의 변화(2008~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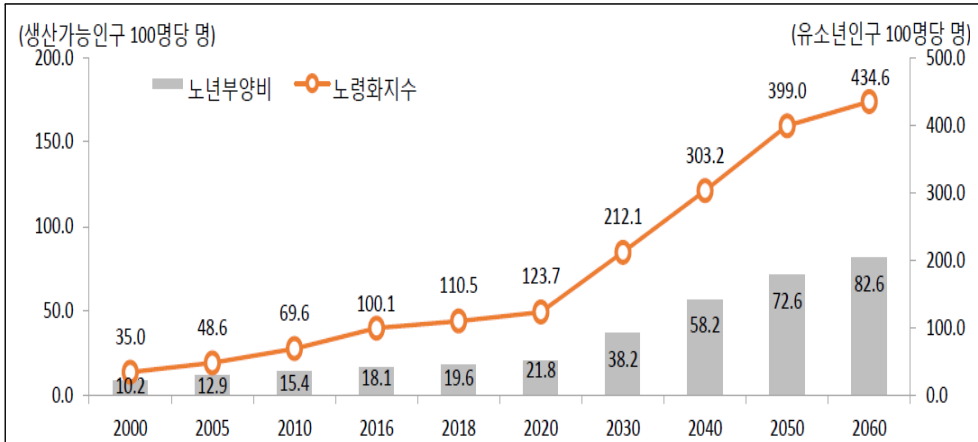


자료 : 2017년 노인실태조사

통계청의 201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의 노년부양비는 19.6명으로 15~64세 생산 가능인구 5.1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인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년부양비 증가가 가속화되어 2060년에는 82.6명이나 될 것으로 전

망된다. 노령화지수도 2018년 110.5명인데, 2060년에는 현재보다 4배나 높은 434.6명에 이를 것이다.

[그림 3-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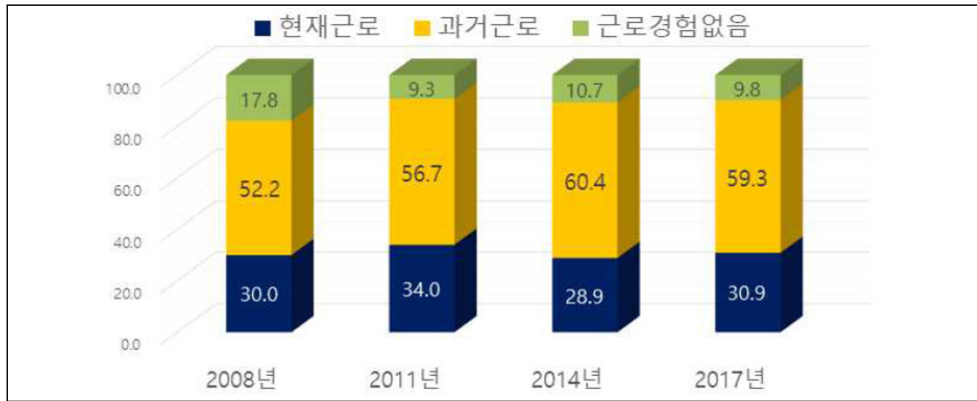
원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2018년 고령자 통계에서 재인용.

2. 경제활동

노인 인구와 가구 형태에 이어서 경제활동 현황도 살펴보겠다. 2017년 기준으로,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약 31%였고, 이는 2008년 이후 변동 폭이 좁았다. 한편, 2017년 기준으로 과거에는 근로를 했지만 현재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2008년에 비해 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은나, 2018). 그에 비해 생애 전반에서의 근로경험이 없는 노인의 비중은 2008년 18% 정도에서 2018년 약 10%로 감소했다.

[그림 3-3] 노인 경제활동참여율 변화

(단위: %)



원자료: 2008, 2011, 2014, 2017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2018)에서 재인용.

실제 근로 여부 못지않게 장래에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2018년 기준 55~79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장래에 근로하기를 원하는 비중은 64.1%였고, 2008년보다 7%p 상승했다. 근로를 원하는 비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22%p 높았지만, 남녀 모두 취업을 원하는 이유가 생활비 보탬(남자 56.7%, 여자 62.0%), 일하는 즐거움(남자 36.5%, 여자 30.7%) 순으로 높았다.

<표 3-2>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55~79세)

(단위: %)

연도	장래 근로 원함	취업을 원하는 이유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2008	57.1	100.0	34.6	54.8	2.0	3.0	5.3	0.2
2011	58.7	100.0	35.5	54.9	2.3	2.2	4.7	0.3
2012	59.2	100.0	36.5	54.5	1.9	2.1	4.7	0.2
2013	60.1	100.0	36.9	54.8	1.9	1.7	4.5	0.2
2014	62.2	100.0	38.8	54.1	1.6	1.5	3.8	0.1
2015	61.2	100.0	35.9	57.1	1.8	1.6	3.6	0.1
2016	61.5	100.0	34.8	58.1	2.2	1.5	3.3	0.0
2017	62.6	100.0	34.4	58.3	2.3	1.6	3.3	0.1
2018	64.1	100.0	33.9	59.0	2.2	1.5	3.3	0.0
남 자	75.6	100.0	36.5	56.7	3.0	1.3	2.5	0.0
여 자	53.6	100.0	30.7	62.0	1.2	1.7	4.4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 년도 5월, 2018년 고령자 통계에서 재인용.

60대 이상(일부 사업은 65세 이상)이 되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노노케어 실태조사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체계와 사업 규모 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약 47만 개이다. 그중에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이 약 34만 여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노케어, 보육 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고, 참여자는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주요 전달 체계로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이 있다.

〈표 3-3〉 현행 노인 일자리사업 체계(2017년 기준)

대상	유형	내용	지원	전달체계	일자리수 (천개)
총 계					467
만 65세 이상	공익활동	노노케어,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월 27만 원 9(12)개월 활동비	노인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337
	재능나눔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월 10만 원 6개월 활동비	노인 복지관, 노인회	45
만 60세 이상	시장형 사업단	실버카페, 반찬가게 등 제품 제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	연 200만 원 사업비	시니어 클럽 등	55
	인력파견형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에 연계	연 15만 원 사업비	무료직업소 개소 등	19
	시니어 인턴십	기업에서 인턴기회(3개월) 제공 후 계속 고용 유도	연 최대 270만 원 인건비 보조	민간 운영기관	7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적합업종 분야 내 노인 다수고용 기업 설립 지원	최대 3억 원 사업비	기업	2
	기업연계형	기업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델개발, 장비설비 구입 등 지원	연 200만 원 내의 사업비 보조	인력개발원 기업	3

제2절 우리나라 노인 돌봄 수혜·제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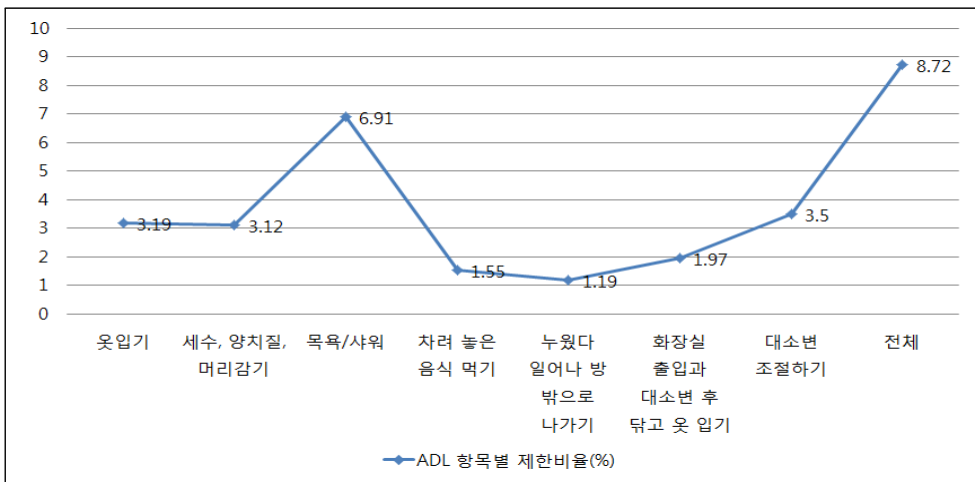
1. 우리나라 노인들의 돌봄 수혜 실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7개 항목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노인이 어떠한 항목에서 도움욕구를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약 8.72%의 노인이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목욕 및 샤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6.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대소변 조절하기 3.50%, 옷 입기 3.19%, 세수, 양치질, 머리 감기 3.12% 순이었지만 비중이 적고 항목 간 차이도 크지 않았다.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차려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항목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2% 미만이었다.

[그림 3-4]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제한이 있는 노인 비율: ADL 항목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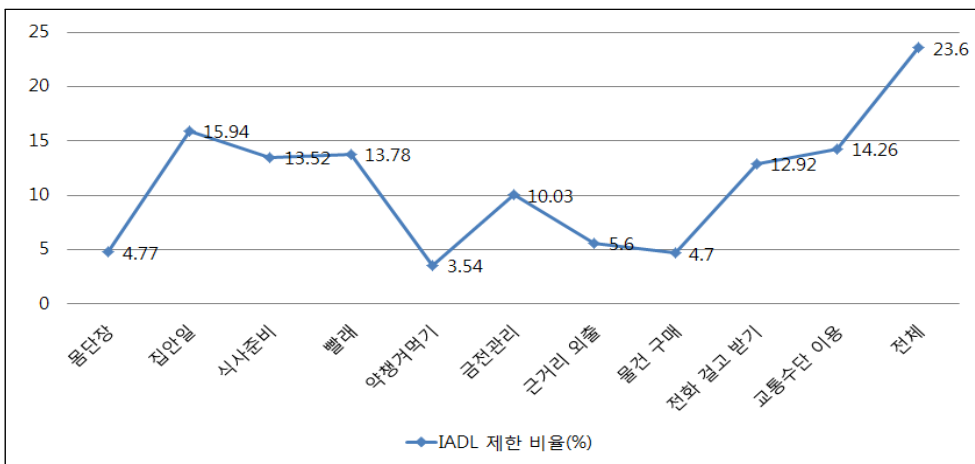


주: '2017년 노인실태조사' 응답자 10,299명을 대상으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직접 분석함.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에 이어서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도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약 24%의 노인이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에 도움을 필요로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집안일 15.94%, 교통수단 이용 14.26%, 빨래 13.78%, 식사 준비 13.52%, 전화 걸고 받기 12.92%, 금전관리 10.03% 순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비해서 근거리 외출(6%), 물건 구매(5%), 몸단장(5%), 약 챙겨 먹기(5%) 항목에서는 각각 5% 내외로 비중이 적었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일부 항목이라도 제한이 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전체 비중과 이러한 노인이 얼마나 도움을 받고있는지, 제한이 있는데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전체 노인 중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나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에 일부라도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중은 약 25%였다. 전체 노인의 18% 노인들은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노인의 7% 정도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이나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약 28%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림 3-5] 전체 노인 대비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제한이 있는 노인 비율: IADL 항목별 비교



주: '2017년 노인실태조사' 응답자 10,299명을 대상으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직접 분석함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돌봄수혜실태를 세분화하여 분석했다. 돌봄 수혜 욕구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성 노인의 비중은 전체 여성 노인의 10%로 3.5%인 남성에 비해 높았다. 돌봄 수혜 욕구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3.7%에서 80~84세 11.6%까지 나이가 들수록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비중이 점차 증가하다가 85세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반적으로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돌봄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글자를 모르는 무학의 경우 39%로 매우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 13.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미혼, 별거 등의 기타는 7.7%였고, 유배우자는 4.2%로 비교적 낮았다. 가구구조별로 세분화했을 때는 노인 단독가구의 16.7%는 돌봄 수혜 욕구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4.6%)나 자녀(4.3%)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중이 높았다. 가구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는 5분위보다 13.8%p나 높은 16.3%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표 3-4〉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돌봄 수혜 실태

(단위: 명, %)

구분	돌봄 받음		제한 있지만 돌봄 안 받음		제한 없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1,863	18.1	745	7.2	7,690	74.7	10,299	100.0
여성	1,297	21.9	592	10.0	4,035	68.1	5,924	100.0
남성	566	12.9	153	3.5	3,656	83.6	4,375	100.0
연령	1,863	18.1	745	7.2	7,690	74.7	10,299	100.0
65~69세	232	7.0	123	3.7	2,977	89.4	3,332	100.0
70~74세	262	10.3	170	6.7	2,127	83.1	2,560	100.0
75~79세	424	19.5	212	9.8	1,540	70.8	2,176	100.0
80~84세	438	32.3	157	11.6	760	56.1	1,356	100.0
85세 이상	506	57.9	83	9.5	285	32.6	875	100.0
교육수준	1,863	18.1	745	7.2	7,690	74.7	10,299	100.0
무학(글자모름)	413	61.0	263	38.9	1	0.1	677	100.0
무학(글자해독)	484	26.7	171	9.4	1,162	64.0	1,817	100.0
초등학교	524	14.9	187	5.3	2,804	79.8	3,514	100.0
중학교	198	11.4	57	3.3	1,480	85.3	1,735	100.0
고등학교	174	9.8	42	2.4	1,564	87.9	1,780	100.0
전문대학 이상	70	9.0	26	3.3	680	87.7	775	100.0
혼인상태	1,863	18.1	745	7.2	7,690	74.7	10,299	100.0
유배우	893	13.7	271	4.2	5,361	82.2	6,525	100.0
사별	909	28.0	434	13.4	1,901	58.6	3,244	100.0
기타(미혼·이혼·별거)	61	11.6	41	7.7	427	80.7	529	100.0
가구구조	1,863	18.1	745	7.2	7,690	74.7	10,299	100.0
노인단독	415	17.1	405	16.7	1,606	66.2	2,426	100.0
노인부부	682	13.7	227	4.6	4,071	81.8	4,980	100.0
자녀와 동거	633	25.9	105	4.3	1,706	69.8	2,444	100.0
기타	133	29.5	9	1.9	308	68.5	449	100.0
가구소득분위	1,863	18.1	746	7.2	7,689	74.7	10,298	100.0
1분위	382	20.1	310	16.3	1,207	63.6	1,899	100.0
2분위	390	20.3	166	8.6	1,368	71.1	1,924	100.0
3분위	330	16.7	115	5.8	1,529	77.5	1,974	100.0
4분위	385	17.9	96	4.5	1,670	77.6	2,151	100.0
5분위	376	16.0	58	2.5	1,914	81.5	2,349	100.0

주: '2017년 노인실태조사' 10,299명을 대상으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직접 분석함.

42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청소·빨래·시장보기, 외출동행, 식사 준비,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 지원의 돌봄 내용 별로 얼마나 자주 도움을 받고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청소·빨래·시장보기는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도움을 받는 경우가 38.1%로 가장 높았지만, 반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23.5%로 두 번째였고, 그다음으로 주 2~3회 17.5%, 일주일에 1회 13.2%, 격주 1회 이하 7.7% 순이었다. 외출동행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42.6%로 가장 높았고, 주1회 이상 외출동행을 받는 노인의 비율은 23%(주1일 11.9%, 주2~3회 5.5%, 거의 매일 5.9%)에 불과했다.

〈표 3-5〉 돌봄 내용별 노인의 돌봄 수혜 빈도

(단위: 명, %)

구분	돌봄 받음	
	빈도	비율
청소, 빨래, 시장보기	1,881	100.0
도움받지 않음	443	23.5
격주 1회 이하	145	7.7
일주일에 1일	248	13.2
주2~3회	329	17.5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716	38.1
외출동행	1,881	100.0
도움받지 않음	801	42.6
격주 1회 이하	641	34.1
일주일에 1일	223	11.9
주2~3회	104	5.5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111	5.9
식사준비	1,881	100.0
도움받지 않음	716	38.0
격주 1회 이하	90	4.8
일주일에 1일	100	5.3
주2~3회	121	6.5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855	45.4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 지원	1,881	100.0
도움받지 않음	1,317	70.0
격주 1회 이하	122	6.5
일주일에 1일	208	11.0
주2~3회	130	6.9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105	5.6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직접 분석함.

식사 준비는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도움을 받는 노인이 45.4%로 가장 많았지만, 이와 반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38.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또한, 격주 1회 이하(5%), 일주일에 1일(5%), 주2~3회(7%)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 지원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70.0%로 대부분이었고, 일주일에 1일이 두 번째였지만 11.0%로 비중은 적었고, 주2~3회(6.9%), 격주 1회 이하(6.5%), 거의 매일(주 4회 이상)(5.6%)은 더 적었다.

2. 우리나라 노인 돌봄 제공자 실태

돌봄 내용별로 주된 노인 돌봄 제공자를 분석한 결과, 돌봄 내용에 따라 주 돌봄 제공자에 차이가 있었다. 청소·빨래·시장보기는 주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40.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딸 23.1%, 며느리 16.5%, 아들 15.4%, 기타 5.0% 순이었다. 외출동행은 주 돌봄 제공자가 아들인 경우가 36.6%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27.9%, 딸 22.4%, 기타와 며느리는 각각 7% 수준이었다. 식사 준비는 배우자가 주 돌봄 제공자인 경우가 43.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딸 23.9%, 며느리 17.8%, 아들 10.4%, 기타 5.1%였다.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도 주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40.2%로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딸의 비중도 30.4%로 높았으며, 며느리(14.0%), 아들(10.4%), 기타(5.1%) 비중은 적었다.

〈표 3-6〉 돌봄 내용별 주 돌봄 제공자

(단위: 명, %)

구분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소, 빨래, 시장보기 (N=1,446)	580	40.1	222	15.4	334	23.1	238	16.5	72	5.0
외출동행 (N=1,068)	297	27.9	391	36.6	239	22.4	69	6.5	71	6.7
식사준비 (N=1,120)	490	43.8	106	9.4	267	23.9	199	17.8	58	5.2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 (N=512)	206	40.2	53	10.4	156	30.4	71	14.0	26	5.1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직접 분석함.

제3절 우리나라 공식적 노노돌봄 및 정책 현황

1.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실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체 노인의 85.4%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한 적도 없었고, 6.6% 정도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참여하지 않으나 과거에 참여했던 노인은 4.5%, 신청은 했으나 참여 기회는 없었던 노인은 3.4%였다(표 3-7 참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도 노노케어가 포함된 공익형 참여 실태를 보면, 전체 노인의 약 6%가 참여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참여 비율이 남성보다 3.4%p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75~79세가 9.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70~74세 6.8%, 80~84세 6.6%, 65~69세 3.0%, 85세 이상 1.7% 순이었다. 교육 수준별로는 무학은 16.2%(글자모름 7.8%, 글자해독 8.4%)가 공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공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비율은 낮아졌다.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은 18.8%로 유배우, 기타(미혼·이혼·별거)와 비교했을 때 각각 4.6%p, 5.6%p씩 높았다. 가구구조별로는 노인 단독가구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비율이 8.9%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와 사는 노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참여 비율은 4~5% 수준이었다. 가구소득분위별로는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공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비율이 높았다.

〈표 3-7〉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실태

(단위: 명, %)

구분	현재 참여		과거 참여		신청했으나 기회 없었음		신청한 적 없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674	6.6	464	4.5	352	3.4	8,746	85.4	10,236	100.0
여성	477	8.1	281	4.8	178	3.0	4,944	84.1	5,880	100.0
남성	196	4.5	183	4.2	174	4.0	3,802	87.3	4,356	100.0
연령	674	6.6	464	4.5	352	3.4	8,746	85.4	10,236	100.0
65~69세	123	3.7	92	2.8	125	3.8	2,986	89.8	3,326	100.0
70~74세	203	7.9	137	5.4	109	4.3	2,108	82.5	2,556	100.0
75~79세	233	10.7	133	6.1	72	3.3	1,731	79.8	2,169	100.0
80~84세	100	7.4	77	5.7	36	2.7	1,130	84.2	1,343	100.0
85세 이상	16	1.9	26	3.1	10	1.2	791	93.9	842	100.0
교육수준	674	6.6	464	4.5	352	3.4	8,746	85.4	10,236	100.0
무학(글자모름)	53	8.0	28	4.2	16	2.5	566	85.4	663	100.0
무학(글자해독)	167	9.3	126	7.0	70	3.9	1,429	79.8	1,792	100.0
초등학교	243	6.9	150	4.3	127	3.6	2,980	85.1	3,501	100.0
중학교	109	6.3	80	4.6	65	3.7	1,476	85.4	1,730	100.0
고등학교	92	5.2	59	3.3	57	3.2	1,569	88.3	1,777	100.0
전문대학 이상	10	1.3	23	2.9	17	2.2	725	93.6	775	100.0
혼인상태	674	6.6	464	4.5	352	3.4	8,746	85.4	10,236	100.0
유배우	340	5.2	253	3.9	236	3.6	5,675	87.3	6,504	100.0
사별	313	9.8	176	5.5	87	2.7	2,628	82.0	3,204	100.0
기타 (미혼·이혼·별거)	21	3.9	36	6.7	29	5.6	443	83.8	529	100.0
가구구조	674	6.6	464	4.5	352	3.4	8,746	85.4	10,236	100.0
노인단독	236	9.7	147	6.1	80	3.3	1,964	80.9	2,427	100.0
노인부부	268	5.4	191	3.8	172	3.5	4,351	87.4	4,981	100.0
자녀와 동거	147	6.0	108	4.4	89	3.7	2,099	85.9	2,444	100.0
기타	23	6.0	18	4.7	12	3.0	332	86.3	384	100.0
가구소득분위	674	6.6	464	4.5	352	3.4	8,745	85.4	10,235	100.0
1분위	186	9.8	118	6.2	71	3.7	1,524	80.3	1,898	100.0
2분위	171	8.9	123	6.4	74	3.9	1,551	80.8	1,919	100.0
3분위	143	7.3	85	4.4	72	3.7	1,663	84.7	1,963	100.0
4분위	102	4.8	75	3.5	86	4.0	1,871	87.7	2,134	100.0
5분위	72	3.1	62	2.7	49	2.1	2,137	92.1	2,320	100.0

주: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는 10,299명이 응답했지만, 결측값이 있는 경우 문항별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직접 분석함.

46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표 3-8〉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공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실태

(단위: 명, %)

구분	공익형 참여 안 함		공익형 참여 중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9,722	94.4	577	5.6	10,299	100.0
여성	5,506	93.0	417	7.1	5,924	100.0
남성	4,215	96.3	160	3.7	4,375	100.0
연령	9,722	94.4	577	5.6	10,299	100.0
65~69세	3,234	97.1	98	3.0	3,332	100.0
70~74세	2,387	93.2	173	6.8	2,560	100.0
75~79세	1,975	90.7	202	9.3	2,176	100.0
80~84세	1,266	93.4	90	6.6	1,356	100.0
85세 이상	860	98.3	15	1.7	875	100.0
교육수준	9,722	94.4	577	5.6	10,299	100.0
무학(글자모름)	624	92.2	53	7.8	677	100.0
무학(글자해독)	1,665	91.6	152	8.4	1,817	100.0
초등학교	3,305	94.0	209	6.0	3,514	100.0
중학교	1,643	94.7	92	5.3	1,735	100.0
고등학교	1,714	96.3	66	3.7	1,780	100.0
전문대학 이상	770	99.4	5	0.6	775	100.0
혼인상태	9,722	94.4	577	5.6	10,299	100.0
유배우	6,250	95.8	275	4.2	6,525	100.0
사별	2,959	91.2	286	8.8	3,244	100.0
기타 (미혼·이혼·별거)	513	96.9	16	3.1	529	100.0
가구구조	9,722	94.4	577	5.6	10,299	100.0
노인단독	2,209	91.1	217	8.9	2,426	100.0
노인부부	4,766	95.7	214	4.3	4,980	100.0
자녀와 동거	2,319	94.9	125	5.1	2,444	100.0
기타	427	95.1	22	4.9	449	100.0
가구소득분위	9,721	94.4	577	5.6	10,298	100.0
1분위	1,723	90.7	176	9.3	1,899	100.0
2분위	1,774	92.2	150	7.8	1,924	100.0
3분위	1,853	93.9	121	6.1	1,974	100.0
4분위	2,071	96.3	80	3.7	2,151	100.0
5분위	2,299	97.9	49	2.1	2,349	100.0

주: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는 10,299명이 응답했지만, 결측값이 있는 경우 문항별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직접 분석함.

향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의향을 보면, 전체 노인의 83.8% 노인은 나중에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6.2% 정도는 향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했다. 이는 현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중보다 약 10%p 높은 수치로 향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표 3-9〉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향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의향

(단위: 명, %)

구분	향후 참여 의향 없음		향후 참여 의향 있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8,445	83.8	1,638	16.2	10,083	100.0
여성	4,787	82.6	1,006	17.4	5,793	100.0
남성	3,659	85.3	631	14.7	4,290	100.0
연령	8,445	83.8	1,638	16.2	10,083	100.0
65~69세	2,785	84.0	532	16.0	3,317	100.0
70~74세	2,032	80.1	507	20.0	2,539	100.0
75~79세	1,730	80.9	408	19.1	2,139	100.0
80~84세	1,151	87.6	163	12.4	1,315	100.0
85세 이상	747	96.4	28	3.6	774	100.0
교육수준	8,445	83.8	1,638	16.2	10,083	100.0
무학(글자모름)	547	87.2	81	12.9	628	100.0
무학(글자해독)	1,446	81.8	321	18.2	1,767	100.0
초등학교	2,864	82.9	592	17.1	3,456	100.0
중학교	1,411	82.4	302	17.6	1,713	100.0
고등학교	1,481	84.5	272	15.5	1,753	100.0
전문대학 이상	696	90.8	71	9.2	766	100.0
혼인상태	8,445	83.8	1,638	16.2	10,083	100.0
유배우	5,440	84.7	982	15.3	6,422	100.0
사별	2,580	82.2	561	17.9	3,141	100.0
기타(미혼·이혼·별거)	425	81.7	95	18.3	519	100.0
가구구조	8,445	83.8	1,638	16.2	10,083	100.0
노인단독	1,967	81.3	451	18.7	2,418	100.0
노인부부	4,165	84.8	748	15.2	4,913	100.0
자녀와 동거	2,000	84.3	373	15.7	2,373	100.0
기타	314	82.8	65	17.3	379	100.0
가구소득분위	8,444	83.8	1,638	16.2	10,082	100.0
1분위	1,517	80.8	361	19.2	1,878	100.0
2분위	1,519	80.5	369	19.5	1,887	100.0
3분위	1,606	82.9	330	17.1	1,937	100.0
4분위	1,773	84.3	330	15.7	2,104	100.0
5분위	2,029	89.1	248	10.9	2,277	100.0

주: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는 10,299명이 응답했지만, 결측값이 있는 경우 문항별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직접 분석함.

48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표 3-10〉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향후 참여하고 싶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단위: 명, %)

구분	참여의향 없음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기타 ¹⁾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8,663	84.1	604	5.9	664	6.5	368	3.6	10,299	100.0
여성	4,918	83.0	460	7.8	401	6.8	145	2.4	5,924	100.0
남성	3,745	85.6	144	3.3	263	6.0	223	5.1	4,375	100.0
연령	8,663	84.1	604	5.9	664	6.5	368	3.4	10,299	100.0
65~69세	2,801	84.1	201	6.0	188	5.6	143	4.3	3,332	100.0
70~74세	2,054	80.2	203	7.9	198	7.7	105	4.1	2,560	100.0
75~79세	1,768	81.3	148	6.8	179	8.3	81	3.7	2,176	100.0
80~84세	1,192	88.0	45	3.3	84	6.2	34	2.5	1,356	100.0
85세 이상	847	96.8	8	0.9	15	1.7	5	0.6	875	100.0
교육수준	8,663	84.1	604	5.9	664	6.5	368	3.6	10,299	100.0
무학(글자모름)	596	88.1	32	4.7	37	5.5	11	1.7	677	100.0
무학(글자해독)	1,496	82.4	127	7.0	149	8.2	46	2.5	1,817	100.0
초등학교	2,923	83.2	249	7.1	243	6.9	99	2.8	3,514	100.0
중학교	1,433	82.6	104	6.0	132	7.6	65	3.8	1,735	100.0
고등학교	1,509	84.8	85	4.8	90	5.0	96	5.4	1,780	100.0
전문대 이상	705	90.9	7	0.9	14	1.8	50	6.4	775	100.0
혼인상태	8,663	84.1	604	5.9	664	6.5	368	3.6	10,299	100.0
유배우	5,544	85.0	322	4.9	378	5.8	282	4.3	6,525	100.0
사별	2,684	82.7	253	7.8	246	7.6	61	1.9	3,244	100.0
기타 (미혼·이혼·별거)	435	82.1	30	5.6	40	7.5	25	4.8	529	100.0
가구구조	8,663	84.1	604	5.9	664	6.5	368	3.6	10,299	100.0
노인단독	1,976	81.4	190	7.9	198	8.2	62	2.6	2,426	100.0
노인부부	4,233	85.0	252	5.1	287	5.8	208	4.2	4,980	100.0
자녀와 동거	2,071	84.7	140	5.7	151	6.2	82	3.4	2,444	100.0
기타	383	85.4	21	4.7	28	6.2	16	3.6	449	100.0
가구소득분위	8,662	84.1	604	5.9	664	6.5	368	3.6	10,298	100.0
1분위	1,539	81.0	131	6.9	168	8.8	61	3.2	1,899	100.0
2분위	1,556	80.9	144	7.5	159	8.3	65	3.4	1,924	100.0
3분위	1,644	83.3	130	6.6	130	6.6	70	3.6	1,974	100.0
4분위	1,822	84.7	117	5.5	122	5.7	90	4.2	2,151	100.0
5분위	2,101	89.5	81	3.5	85	3.6	82	3.5	2,349	100.0

주: 1)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친화기업, 기업연계 합계임.

2)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는 전체 10,299명이 응답했지만, 결측값이 있는 경우 문항별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직접 분석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향후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노인의 16% 정도가 향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노케어(6%) 참여 의향은 공공시설봉사 7%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다.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친화기업, 기업연계의 다른 유형에 비해 노노케어 참여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저소득층만 노노케어 참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가구소득 1~4분위에서 노노케어 참여의향 차이가 매우 적어서 중하층, 중층, 중상층에서도 노노케어 참여 욕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노노케어 사업의 배경과 경과

노노케어 사업은 노인이(老) 노인에게(老) 돌봄(care)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 개 창출’이라는 16대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2004년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4년 사업 초기에는 공공참여형, 공익 강사형, 인력파견형, 시장 참여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노노케어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2005년 노노케어 사업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노노간병사업’이 신설되었고, 2006년 교육복지형의 하위사업 유형으로 노노케어 사업이 추가되면서 ‘노노케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노노케어의 최장 참여 개월 수가 5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되었고, 복지형의 비율은 21%까지 확대되었다.

2007년부터는 교육복지형이 교육형과 복지형으로 이원화되면서 노노케어 사업은 복지형의 하위 사업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2010년 참여자 선발기준에서 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높아졌으나, 교육형, 시장형, 파견형 및 노노케어 사업(복지형)은 만 60~64세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노노케어 사업이 연중 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선발기준에 있어서 노노케어 사업(복지형)은 만 60~64세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하게 하였으나,

연중 일자리 시범사업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및 안부확인사업, 거동불편 노인 가사 및 활동보조사업, 경증 치매노인 활동보조사업, 경로당 노노케어 사업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생활시설 이용자 돌봄지원사업은 노노케어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2015년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 근로 등 다양한 노인의 활동 욕구를 반영하고 활동 유형별 특성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취약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취약노인의 안부확인, 말벗, 생활상태 점검 등을 전국형으로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현재의 ‘공익형’으로 노노케어 사업이 자리매김 하였다. 2018년 현재 노노케어 사업은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 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3-11〉 노노케어 정책의 변화양상(2005~2018년)

연도	유형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기간 / 활동비
2005	교육 복지형	복지형	노노간병사업	·독거노인, 고령 및 중증 노인을 보호하는 일자리	6개월 /20만 원
2006			노노케어 사업		
2007	복지형	-	거동불편 요보호자 돌봄 서비스, 사회복지(생활)시설 이용자 돌봄지원, (노인) 가구 주거개선 등	·돌봄이나 상담 등 전문기술을 습득한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7개월 /20만 원
2008	복지형	돌봄 서비스 사업	돌봄 서비스사업	·건강한 노인이 가정방문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대상의 일상생활을 관리·지원하는 사업 ·예시: 거동불편 요보호자돌봄 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생활)시설 이용자 돌봄지원 사업 등	
2009 ~2010	복지형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노노케어)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지원하는 사업(노인관련시설 지원사업 포함)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지원사업	

〈표 3-11〉 노노케어 정책의 변화양상(2005~2018년)(계속)

연도	유형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기간 /활동비
2011~ 2012	복지형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 (노노케어)	·지역 내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지원사업	7개월 /20만 원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자 택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 사업(노노케어)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지 원사업	
2013	복지형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자 택에서 일상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 사업(노노케어)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지 원사업	
2014	복지형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 달 및 안부확인사업	·지역 내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방문 하여 도시락 배달 및 말벗 등 기본적 안부를 관 리하는 사업	9개월 (12개월) /20만 원
			거동불편 노인 가사 및 활 동보조사업	·지역 내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 사 및 일상생활 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증치매 노인 활동보조사업	·지역 내 경증치매노인의 일상 안부확인 및 보호자 연락, 병원 동행, 간단한 인지재활 활동을 통해 대 상자의 치매 진행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사업	
			경로당 노노케어 사업	·경로당을 기반으로 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원 이 필요한 노인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보조를 지 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및 아동생 활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관리·지원사업	
2015	전국형	(자원봉사 활동) 노노케어	취약노인에게 노노케어 등 생활지원 강화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경증치매 노 인 등 취약노인의 안부확인, 말벗, 생활상태 점검 등을 전국적으로 추진 ·노노케어를 2015년부터 단일 유형으로 확대하여 실시(2013년 연중형 시범사업 실시) ·2인조 구성 취약노인 주당 2~3회, 월 30시간 케어	9개월 (12개월) /20만 원
	공익형 -지역형	(표준프로 그램) 노노케어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 사업	·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및 아동생 활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관리·지원활동	
2016 ~2017	노인 사회활동	공익활동	노노케어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경증치매 노 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 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생활 안전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9개월 (12개월) /22만 원
2018					27만 원

주: 1) 2015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변경됨

2) 2016년에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됨

자료: 1) 2005~2006년도는 엄지혜(2013), 노노케어의 시행과정과 향후 정책과제를 주요 자료로 하여 작성함

2) 2007년도 이후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안내의 각 년도 자료를 참고하였음

3. 노노케어 사업의 내용

노노케어 사업의 내용은 참여자 노인이 수혜자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 치매노인 등의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 점검 등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노노케어를 단일 유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 시작한 2015년 이전에는 도시락 배달, 가사 및 일상생활 보조 등의 신체적인 활동까지 포함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안부확인, 말벗, 생활안전 점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참여자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60점), 참여 경력(5점), 세대 구성(15점), 활동 역량(보행능력 10점, 의사소통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기간은 연중 12개월 또는 9개월로 진행되고 있으며,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되 1일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활동비는 교통비, 식비 및 간식비,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27만 원 이내로 지급되고, 참여 노인의 보호를 위해서 2인 1조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는 활동 종료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수혜자에게 확인(활동일지에 서명 날인)을 받아 매월 말일까지 활동일지를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참여자의 활동 현황에 근거하여 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수혜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의 취약한 노인 중 연령, 경제 상태, 건강 등 연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대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간병서비스, 노인 돌봄종합(기본)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복지도우미, 방문요양서비스 등 유사 재가서비스를 받고있는 서비스 대상자는 제외된다.

참여자는 프로그램 개요, 활동 방법 등에 대해 연간 12시간 이상의 교육과 함께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이수하게 되어있다. 반면 수혜자는 서비스 수혜에 대한 별도의 공식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다.

〈표 3-12〉 노노케어 사업의 개요(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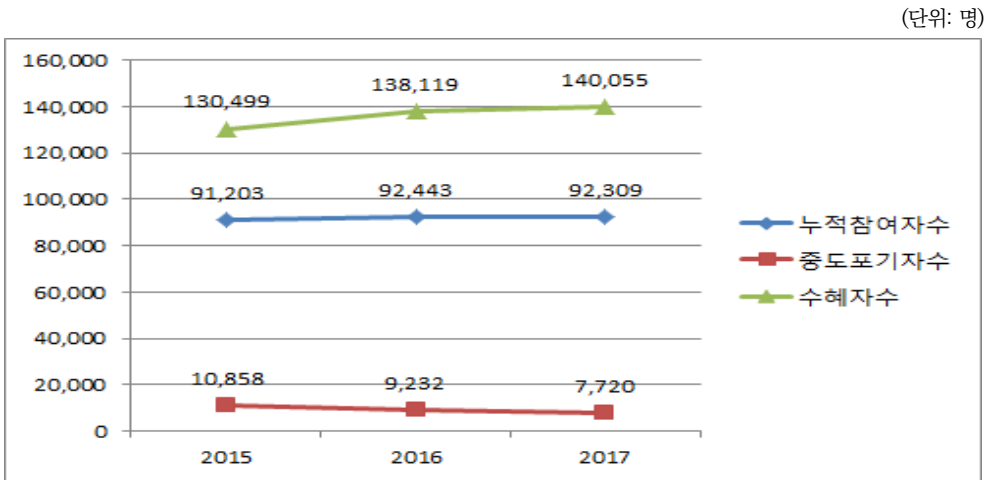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사업내용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참여자자격 및 선발기준	·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선발기준(100점): 소득인정액(60점), 참여경력(5점), 세대구성(15점), 활동역량(보행능력 10점, 의사소통 10점)
수혜자자격 및 선발기준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한 개인으로, 사업수행기관, 지역 내 복지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연계·발굴된 공익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로 본인(가족포함) 이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 노인 중 연령, 경제상태, 건강 등 연중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있는 노인은 제외 · 자활간병서비스, 노인 돌봄종합(기본)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복지도우미(보훈처),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통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있는 수혜자는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
운영기간 및 활동시간	· 운영기간: 연중(12개월), 9개월 · 참여자 활동시간: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 휴지기(12~2월), 휴지기(7~8월)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10시간 이내로 활동시간 단축하여 운영가능
예산지원	· 재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활동비: 참여자 1인당 27만 원 이내(교통비, 식비, 및 간식비, 활동실비 포함) - 교통비 3천 원, 간식비 3천 원, 식비 6천 원 - 활동실비 시간당 6천 원
운영방법	· 참여노인 보호 등을 위해 참여자는 2인 1조 활동, 지자체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 중복 수혜자 배제
활동교육	·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활동방법, 안전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 실시 · 활동교육: 참여 프로그램 개요, 활동방법 등 연간 12시간 이상 자율 편성하여 실시 · 안전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2시간 이상 실시 · 교육시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
활동관리	· 활동 후 본인서명 및 수혜자 확인을 받고 매일 말일까지 활동일지를 수행기관에 제출 - 참여자는 활동 후 활동일지에 반드시 자필 또는 지장으로 확인 서명 - 수혜자는 참여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일지에 서명 또는 날인, 지장 확인 ·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업기간 중 45일 이내에서 활동중단 신청 가능

자료: 20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4. 노노케어 사업의 현황

노노케어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노노케어사업이 단일 유형으로 확대하여 실시된 2015년 이후의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자료를 비교분석 하였다.²⁾ 현황의 세부내용으로는 노노케어 사업의 일반적 현황과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중도포기 사유 및 사고발생 현황 등을 포함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3-6] 노노케어 사업의 일반 현황(2015~2017년)



노노케어의 배정 사업량은 2015년 80,345개에서 2017년 73,302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업단은 1,219개에서 1,256개로 소폭 증가하였다. 누적 참여자 수는 91,203명에서 92,309명으로 1천 명가량 증가한 반면, 중도 포기자 수는 10,858명에서 7,720명으로 약 3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혜자 수는 130,499명에서 140,055명으로 약 1만 명 증가하였고, 참여 노인 1인 당 수혜자 인원은 약 1.7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2015년 이전의 노노케어 사업 현황에 대한 내용은 홍석원(2015), 노노케어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간접적 건강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건의료연구소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표 3-13〉 노노케어 사업의 일반 현황(2015~2017년)

(단위: 백만 원, 개,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노인일자리 사업 총 예산(국비)	358,063	403,486	523,200
배정사업량	80,345	80,694	73,302
사업단	1,219	1,278	1,256
누적참여자수	91,203	92,443	92,309
중도포기자수	10,858	9,232	7,720
수혜자수	130,499	138,119	140,055
참여노인 1인당 수혜자인원	1.7	1.7	1.7

자료: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각 년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4〉와 같다. 2015년에서 2017년간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75세 미만의 참여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참여자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69세는 16.4%에서 11.5%로, 70~74세는 37.4%에서 29.9%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75~79세는 33.0%에서 39.4%로, 80~84세는 11.4%에서 16.4%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연령은 2015년 75.3세에서 2017년 75.4세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체 참여자의 평균연령이 75.8세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약 2:8 수준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성의 비율은 2015년 22.2%에서 20.1%로 감소한 반면에 여성의 비율은 77.8%에서 79.9%로 소폭 증가하였다.

교육수준별 분포는 무학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초졸 이상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학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무학의 비율은 2015년 22.6%에서 2017년 18.1%로 감소하였고, 동기간 초졸의 비율은 48.8%에서 50.4%로, 중졸의 비율은 16.5%에서 18.4%로, 고졸의 비율은 9.6%에서 11.0% 등으로 증가하였다.

기관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노인복지관(23.4%), 시니어클럽(18.0%), 대한노인회(15.4%), 지자체(12.7%), 종합사회복지관(10.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2017년에는 노인복지관(22.8%), 대한노인회(20.3%), 시니어클럽(16.7%), 종합사회

복지관(1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기간, 기관 유형에 있어서 대한노인회가 4.8%p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지자체가 4.5%p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참여 동기는 2016년 자료의 수집 원칙이 선택 입력사항으로 변경되면서 통계치에서 제외하였으나, 2015년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 도움 59,490명(65.2%), 알 수 없음 23,421명(25.7%), 사회참여 4,348명(4.8%), 자기발전 1,517명(1.7%) 건강증진 969명(1.1%), 시간 활용 962명(1.1%), 기타 344명(0.4%), 자원봉사 152명(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2016년)에서도 노노케어 사업 참여노인의 참여동기 1순위가 생계비 마련(55.0%), 용돈 마련(24.1%), 건강유지의 수단(9.1%), 일을 통한 즐거움(5.7%)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요소가 가장 큰 참여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2015~2017년)

(단위: 명, %, 세)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인원(누적)	91,203 (100.0)	92,443 (100.0)	92,309 (100.0)
연령별			
60~69세 ¹⁾	14,956 (16.4)	13,262 (14.3)	10,618 (11.5)
70~74세	34,149 (37.4)	31,521 (34.1)	27,617 (29.9)
75~79세	30,108 (33.0)	33,073 (35.8)	36,392 (39.4)
80~84세	10,425 (11.4)	12,691 (13.7)	15,137 (16.4)
85세 이상	1,565 (1.7)	1,896 (2.1)	2,545 (2.8)
평균연령	75.3	74.8	75.4
성별			
남성	20,282 (22.2)	19,496 (21.1)	18,567 (20.1)
여성	70,921 (77.8)	72,947 (78.9)	73,742 (79.9)
교육수준별 ²⁾			
무학	26,603 (22.6)	15,039 (16.3)	9,161 (18.1)
초졸	44,551 (48.8)	35,114 (42.9)	25,558 (50.4)
중졸	15,024 (16.5)	11,785 (20.5)	9,305 (18.4)
고졸	8,725 (9.6)	6,771 (15.0)	5,574 (11.0)
전문대졸	543 (0.6)	367 (0.7)	283 (0.6)
대졸이상	1,325 (1.5)	999 (2.4)	821 (1.6)
알 수 없음	432 (0.5)	22,368 (3.1)	-
기관유형별			
지자체	11,621 (12.7)	9,442 (10.2)	7,599 (8.2)
시니어클럽	16,383 (18.0)	16,563 (17.9)	15,452 (16.7)
대한노인회	14,052 (15.4)	16,054 (17.4)	18,727 (20.3)
노인복지관	21,366 (23.4)	21,032 (22.8)	21,090 (22.8)
종합사회복지관	9,909 (10.9)	10,487 (11.3)	11,278 (12.2)
노인복지센터	8,056 (8.8)	8,862 (9.6)	9,387 (10.2)
지역문화원	49 (0.1)	48 (0.1)	50 (0.1)
기타 ³⁾	9,767 (10.7)	9,955 (10.8)	8,726 (9.5)

주: 1) 2015년도에는 65세 미만 노인이 포함되어 있어 60~69세로 분류하였음

2) 권익위 권고에 따라 2017년부터 참여신청서 상 학력정보를 선택정보로 변경함에 따라 최종학력 알 수 없음이 공익 활동 참여자의 53.3%(213,113명)으로 확인되어, 알 수 없음을 제외한 후 학력별 현황을 산출하였음.

3) 기타에는 실버인력뱅크, 지역사회활후견기관,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

4) 2016년부터 '참여 동기'는 선택입력사항으로 변경되어 동기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통계치는 제외함. 다만, 2015년에는 경제도움 59,490명(65.2%), 알 수 없음 23,421명(25.7%), 사회참여 4,348명(4.8%), 자기발전 1,517명(1.7%) 건강증진 969명(1.1%), 시간활용 962명(1.1%), 기타 344명(0.4%), 자원봉사 152명(0.2%)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자료: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각 년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중도 포기 사유 및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표 3-15>와 같다. 2015년과 2017년의 중도 포기 사유를 비교해보면, 자격 변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이중참여 등의 기타사유는 46.0%에서 30.2%로 감소한 반면, 건강 악화의 사유는 29.7%에서 42.0%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선발 기준에서 소득기준의 배점이 증가한 반면, 건강 기준의 배점이 감소한 것도 일부 영향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중도 포기사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수요처/수혜자와의 관계이다. 동기간, 해당사유는 3.7%에서 4.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체 참여자 중 수요처/수혜자 관계를 사유로 중도 포기한 노인의 비율이 1.4%인 것과 비교하면 노노케어사업의 참여자는 4배 가량 높은 것이다. 사고발생 비율은 0.17건으로 전체 참여자의 사고발생비율이 0.24건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표 3-15>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사유 및 사고 발생 현황(2015~2017년)

(단위: 명, %,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중도포기 사유			
총인원	10,858 (100.0)	9,232 (100.0)	7,720 (100.0)
진출	272 (2.5)	291 (3.2)	268 (3.5)
사망	207 (1.9)	227 (2.5)	226 (2.9)
수행기관 참여제한	49 (0.5)	39 (0.4)	113 (1.5)
적성, 근무조건 불일치	502 (4.6)	332 (3.6)	262 (3.4)
높은 노동강도	18 (0.2)	30 (0.3)	16 (0.2)
희망근로사업 참여	89 (0.8)	62 (0.7)	40 (0.5)
취업, 기타 일자리 참여	908 (8.4)	704 (7.6)	702 (9.1)
동료관계	119 (1.1)	102 (1.1)	59 (0.8)
수요처/수혜자와의 관계	403 (3.7)	430 (4.7)	379 (4.9)
가족반대	103 (0.9)	125 (1.4)	88 (1.1)
건강악화	3,220 (29.7)	3,435 (37.2)	3,239 (42.0)
기타 ¹⁾	4,968 (46.0)	3,455 (37.4)	2,328 (30.2)
사고발생 현황 ²⁾			
사고발생건수	-	96(626)	159(1,100)
발생비율 ³⁾	-	0.10(0.15)	0.17(0.24)

주: 1) 기타에는 자격변동(기초생활보장책정, 기초연금보장 중지, 장기요양등급판정 등)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이중 참여 등이 포함

2) 가로 안의 수치는 해당 연도의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 사고발생현황 수치임

3) 발생비율=(사고발생건수/누적참여인원)*100

자료: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각 년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노노케어 참여자 경험 및 실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실시한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노노케어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노케어 참여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79.3%)이 남성(20.7%)에 비해 약 4배 더 많았다. 평균 연령은 74.5세였다. 가구구조는 독거와 부부 거주가 각각 42.7%, 36.0%로 비중이 컸고, 다른 가구원과 거주하는 경우는 22.4%(경제력 무가족 동거 10.5%, 경제력 유가족 동거 11.7%, 기타 0.2%) 정도로 비중이 적었다. 평균 가구원 수도 1.8명 정도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53.8%)이 절반을 조금 넘었고, 중학교 졸업 16.7%, 무학 15.4%(글자 모름 4.6%, 글자 해독 10.8%), 고등학교 졸업 12.0%였다. 주택 점유형태는 74.7% 정도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10.5%), 월세(8.4%)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거주지역을 시군구로 살펴보았을 때는 시와 구가 각각 40.8%, 41.4% 정도로 많았고, 군은 17.8%로 시와 구의 절반 이하였다. 동/읍면리 기준으로는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68.7% 정도로 대다수였고, 읍면리에 거주하는 경우는 31.3% 수준이었다. 소속된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23.6%, 대한노인회 19.0%, 노인복지센터 16.8%, 사회복지관 15.4%, 기타 11.8%, 시니어클럽 10.3%, 지자체 3.1% 순이었다.

〈표 3-16〉 2016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584)

(단위: 명, %)

구분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성별	584	100.0
여성	463	79.3
남성	121	20.7
연령	74.5	4.6
가구구조	581	100.0
독거	242	42.7
부부	209	36.0
가족(경제력무) 동거	61	10.5
가족(경제력유)동거)	68	11.7
기타	1	0.2
가구원수	1.80	1.0
교육수준	582	100.0
무학(글자모름)	27	4.6
무학(글자해독)	63	10.8
초등학교	313	53.8
중학교	97	16.7
고등학교	70	12.0
2년제, 전문대학	5	0.9
4년제 대학	7	1.2
주택점유형태	570	100.0
자택	426	74.7
전세	60	10.5
월세	48	8.4
무료 임대	15	2.6
공동주거	6	1.1
기타	15	2.6
시군구	584	100.0
시	238	40.8
군	104	17.8
구	242	41.4
동/읍면리	584	100.0
동	401'	68.7
읍면리	183	31.3
수행기관	584	100.0
지자체	18	3.1
노인복지관	138	23.6
노인복지센터	98	16.8
대한노인회	111	19.0
시니어클럽	60	10.3
사회복지관	90	15.4
기타	69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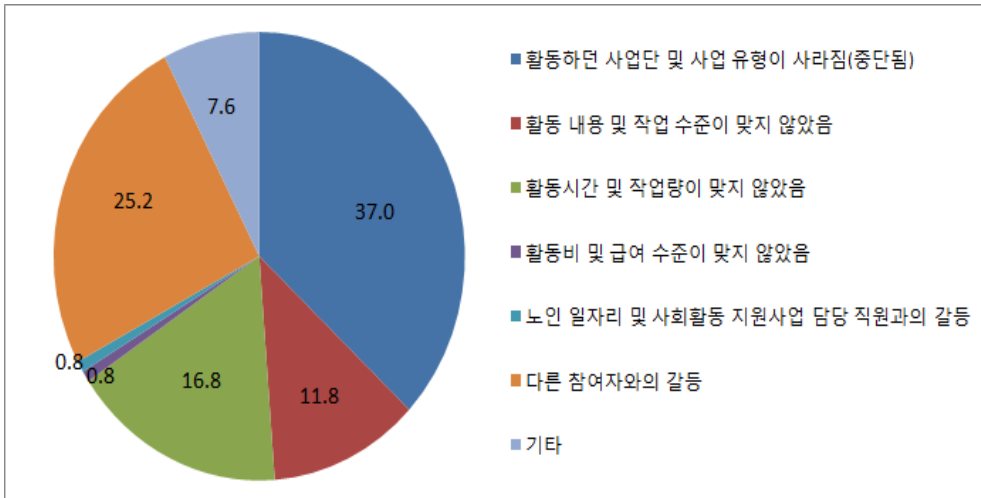
주: 문항별로 결측값이 있으면 사례수 다를 수 있음.

자료: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원자료의 노노케어 참여자 정보 직접 분석함.

2016sus 노노케어 참여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변경 경험을 살펴본 결과, 노노케어 참여자의 24.0%가 사업단이나 사업 유형 변경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3-7]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단위: %)



사업단이나 사업 유형 변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노케어 참여자(119명)의 변경 이유로는 활동하던 사업단 및 사업 유형이 사라졌기 때문인 경우가 37.0%로 가장 많았지만, 이 외에도 활동 시간 및 작업량이 맞지 않았다(16.8%)거나, 활동내용 및 작업 수준이 맞지 않았다(11.8%)는 비중도 적지 않았다.

사업단이나 사업 유형 변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노케어 참여자(119명)를 대상으로 전년도와 같은 사업단이나 근무처에서 활동하는지도 별도로 조사했다. 63.9%는 같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32.8%는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표 3-17〉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변경 경험(N=496)

(단위: 명, %)

내용	빈도	비율
사업단 및 사업 유형 변경 경험	496	100.0
변경 경험 있음	119	24.0
사업단 및 사업 유형 변경 이유	119	100.0
활동하던 사업단 및 사업 유형이 사라짐(중단됨)	44	37.0
활동내용 및 작업 수준이 맞지 않았음	14	11.8
활동시간 및 작업량이 맞지 않았음	20	16.8
활동비 및 급여 수준이 맞지 않았음	1	0.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 직원과의 갈등	1	0.8
다른 참여자와의 갈등	30	25.2
기타	9	7.6
전년도 동일 사업단 및 근무처 활동 여부	119	100.0
동일함	76	63.9
동일하지 않음	39	32.8
모름/무응답	4	3.4
변경 경험 없음	351	70.8
모름/무응답	26	5.2

주: 문항별로 결측값이 있으면 사례수 다를 수 있음.

자료: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데이터의 노노케어 참여자 정보 직접 분석함.

노노케어 참여자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인지하게 된 경로는 대부분 인적 자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이웃·친척·친구 등 지인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알게 된 경우가 41.8%로 가장 많았고, 이용하고 있던 기관(경로당, 복지관 등) 담당자를 통해 알게 된 경우도 36.1%로 많았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대중매체, 홍보물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게 된 경우는 매우 적었다.

〈표 3-18〉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지 경로(N=584)

(단위: 명, %)

내용	빈도	비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지 경로	584	100.0
이용하고 있던 기관(경로당, 복지관 등)담당자를 통해	211	36.1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을 통해	244	41.8
지역 내 통·반장 또는 이장을 통해	38	6.5
시군구(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통해	26	4.5
시군구(읍면동) 및 이용 기관의 현장 게시판을 보고	15	2.6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	3	0.5
시군구·이용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및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1	0.2
길거리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홍보물	30	5.1
기타	6	1.0
모름/ 무응답	1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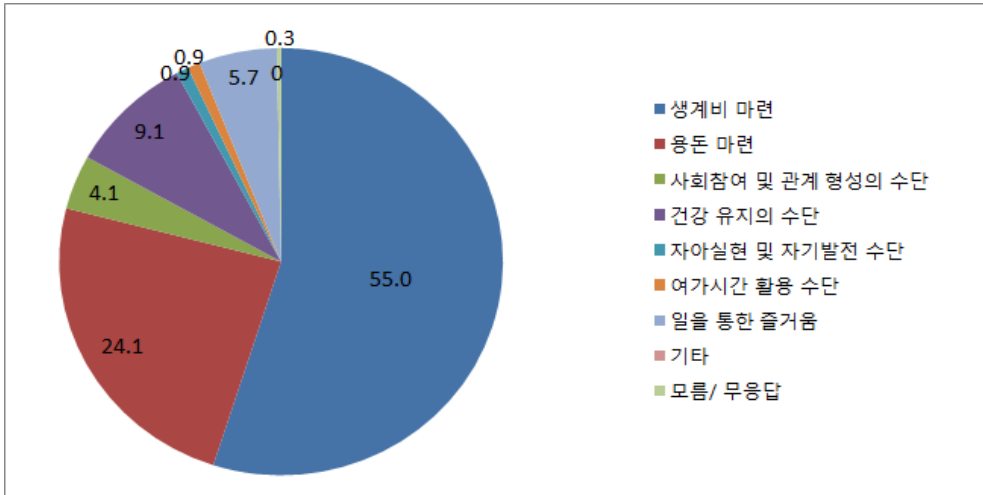
자료: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데이터의 노노케어 참여자 정보 직접 분석함.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동기로는 참여 동기 1순위에 관해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55.0%)이었고, 용돈 마련도 24.1%로 높았다. 그에 비해 건강 유지의 수단(9.1%), 일을 통한 즐거움(5.7%) 등을 1순위 참여 동기로 응답한 비율은 매우 적었다. 참여 동기 2순위에 관해서는 1순위와 달리 용돈 마련이 43.2%로 가장 많았고, 건강 유지(15.0%), 일을 통한 즐거움(12.0%), 생계비 마련(12.0%)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했을 때, 생계비와 용돈 마련 등의 경제적 이유가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주된 동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4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그림 3-8]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참여 동기

(단위: %)



<표 3-19> 2016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동기(N=584)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584	100.0	565	100.0
생계비 마련	321	55.0	68	12.0
용돈 마련	141	24.1	244	43.2
사회참여 및 관계 형성의 수단	24	4.1	43	7.6
건강 유지의 수단	53	9.1	85	15.0
자아실현 및 자기발전 수단	5	0.9	20	3.5
여가시간 활용 수단	5	0.9	36	6.4
일을 통한 즐거움	33	5.7	68	12.0
기타	0	0.0	1	0.2
모름/ 무응답	2	0.3	0	0.0

주: 문항별로 결측값이 있으면 사례수 다를 수 있음.
 자료: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데이터의 노노케어 참여자 정보 직접 분석함.

노노케어 참여자의 활동 시간과 근로 유형도 살펴보았다. 평균 주당 활동(근무) 시간은 8시간이었다. 거의 대부분(96.8%)이 주당 활동 일수가 정기적이었으며, 평균 2.8일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에서의 노노케어 참여 지속 기간은 평균 29개월이었다. 하지만 약 23%는 해당 연도에 노노케어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경우였고, 6%는 참여 중단 경험이 있었다.

〈표 3-20〉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활동시간 및 근로유형(N=584)

(단위: 명, %)

구분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주당 활동(근무) 시간(N=581)	8.0	8.0
주당 활동(근무) 일수 유형	584	100.0
정기적	565	96.8
주당 활동(근무) 일수(모름/무응답 1명 제외 N=564)	2.8	0.5
비정기적	14	2.4
모름/ 무응답	5	0.9
노노케어 참여 지속 기간(단위: 월)(N=558)	28.7	24.0
참여중단기간 여부	584	100.0
있음	32	5.5
작년부터 참여하여 중단 없이 계속함	417	71.4
작년에 참여하지 않음	135	23.1

주: 모름, 무응답은 제외

자료: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데이터의 노노케어 참여자 정보 직접 분석함.

노노케어 참여자의 사업 참여시 어려움을 1, 2, 3순위 3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노노케어 참여자의 절반 정도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N=584)의 23.3%는 1순위 어려움으로 교통문제(이동문제)를 꼽았고, 수혜자와의 관계(12.0%) 및 동료와의 관계(6.7%)를 1순위 어려움으로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2순위 어려움(N=231)에서는 동료와의 관계(20.4%)와 수혜자와의 관계(15.2%)라는 응답 비중이 더 높아졌고, 교통문제(이동문제)라는 응답도 18%나 되었다. 그 밖에 기술력·전문성(수행능력) 부족(12.1%), 소속 기관과의 관계(11.3%)도 10% 초반의 응답이 나왔고, 높은 노동강도 또는 일의 어려움(7.4%), 주변의 이목(6.9%), 업무 수행 시 참조할 수 있는 자세한 안내 자료(메뉴얼) 부족은 각각 6~7% 정도였다. 3순위(N=183)에서도 유사하게 동료

와의 관계, 교통문제(이동문제), 수혜자와의 관계, 소속 기관과의 관계를 어려움으로 꼽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 노노케어 참여자의 약 35%가 교통문제, 약 23%가 수혜자와의 관계, 22%는 동료와의 관계를 1~3순위 어려움으로 응답한 것이다.

〈표 3-21〉 2016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시 어려움(N=584)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584	100.0	231	100.0	183	100.0
교통문제(이동문제)	136	23.3	41	17.8	29	15.9
동료와의 관계	39	6.7	47	20.4	44	24.0
수혜자와의 관계	70	12.0	35	15.2	29	15.9
소속 기관과의 관계	13	2.2	26	11.3	20	10.9
기술력, 전문성(수행능력) 부족	12	2.1	28	12.1	14	7.7
주변의 이목	5	0.9	16	6.9	16	8.7
높은 노동강도/일의 어려움	7	1.2	17	7.4	14	7.7
일의 내용이 흥미 없음	2	0.3	5	2.2	3	1.6
업무 수행 시 참조할 수 있는 안내 자료(매뉴얼) 부족	5	0.9	13	5.6	14	7.7
없음	286	49.0	0	0.0	0	0.0
기타	4	0.7	3	1.3	0	0.0
모름/ 무응답	5	0.9	0	0.0	0	0.0

주: 문항별로 결측값이 있으면 사례수 다를 수 있음.

자료: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데이터의 노노케어 참여자 정보 직접 분석함.

노노케어 참여 후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었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고, 아직 내가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응답이 22.8%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 3-22〉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사업참여 후 가장 큰 변화(N=584)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584	100.0
급여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었다	268	45.9
건강상태가 좋아졌다	71	12.2
가족·친지 관계가 좋아졌다	45	7.7
친구·이웃·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32	5.5
아직 내가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33	22.8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35	6.0

자료: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데이터의 노노케어 참여자 정보 직접 분석함.

노노케어 참여자들의 활동 세부내용별 만족도(5점만점)는 활동 및 근로에 대해서는 평균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이 세부내용 5점 만점에 평균 3.9점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활동비 수준(평균 3.51점), 사업유형별 급여의 공평성(3.69 점), 활동 및 근로 장소 이동 편의성(접근성)(3.18점)은 다른 세부내용보다 낮았다.

〈표 3-23〉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활동 세부내용별 만족도(N=584)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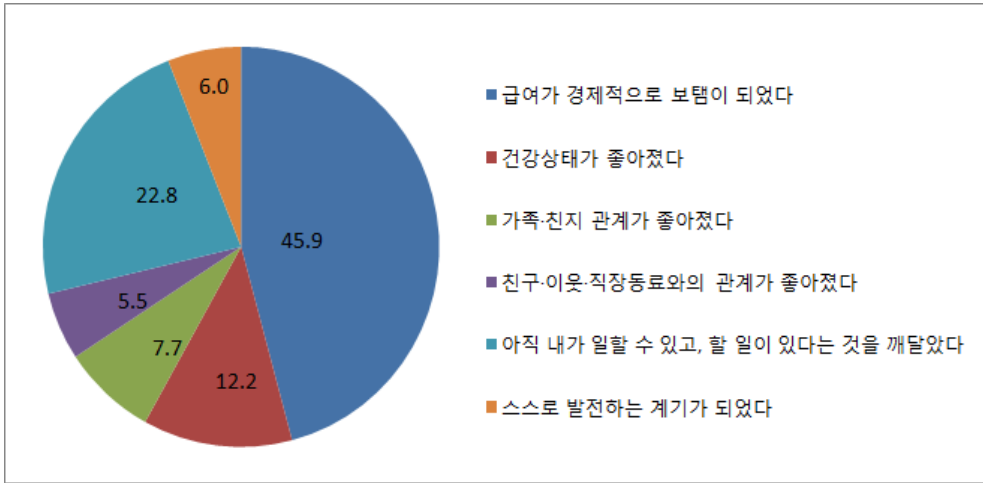
구분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활동비(급여)수준	3.51	0.90
사업유형별 급여의 공평성	3.69	0.81
활동 및 근로의 난이도	3.88	0.74
활동 및 근로의 안전성	3.93	0.77
활동 및 근로시간(일수 포함)	3.93	0.77
활동 및 근로 내용의 흥미도	3.89	0.77
활동 및 근로환경의 안전성	3.93	0.71
활동 및 근로환경의 편의성	3.98	0.73
활동 및 근로환경의 쾌적성	3.83	0.79
활동 및 근로 장소 이동 편의성(접근성)	3.81	0.80
동료와의 관계	4.00	0.71
교육내용의 흥미도	3.89	0.76
교육시간의 적절성	3.87	0.74
교육의 직무 도움 정도	3.91	0.72
참여 신청부터 참여하기까지 절차의 간편성	3.89	0.82
소속기관(수행기관) 실무자의 전문성	4.05	0.73
소속기관(수행기관) 실무자와의 관계	4.11	0.73
소속기관(수행기관)의 요구사항 반영 정도	4.00	0.76
활동 및 근로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의 적절성	4.00	0.71
활동 및 근로 대한 전반적 만족도	4.01	0.66

주: 1~5점 척도. 점수 높을수록 만족도 높음.

자료: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데이터의 노노케어 참여자 정보 직접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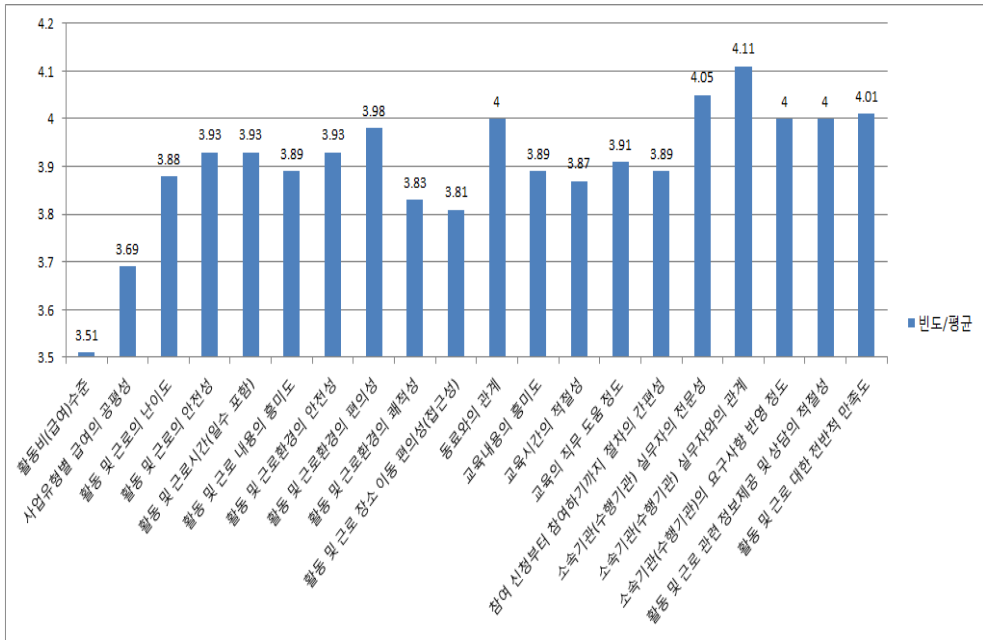
[그림 3-9]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사업참여 후 가장 큰 변화(N=584)

(단위: %)



[그림 3-10] 2016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활동 세부내용별 만족도(N=584)

(단위: 명)



노노케어 참여자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N=584)로 물가수준을 고려한 활동비 수준 상향 조정이 39.2%로 가장 많았고, 참여자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활동 배치(21.2%), 활동비 수준은 유지하되 참여 개월 수 확대(18.7%) 요구도 상당히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2순위(N=515) 개선 요구사항에서도 물가수준을 고려한 활동비 수준 상향 조정(28.2%), 활동비 수준은 유지하되 참여 개월 수 확대(19.8%), 참여자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활동 배치(15.0%), 취업 관련 정보 및 교육 서비스 개선(15%)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24〉 2016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개선 요구사항(N=584)

(단위: 명, %)

구분	1순위(N=584)		2순위(N=51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참여자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활동 배치	124	21.2	77	15.0
물가수준을 고려한 활동비 수준 상향 조정	229	39.2	145	28.2
활동비 수준은 유지하되 참여 개월 수 확대	109	18.7	102	19.8
취업 관련 정보 및 교육 서비스 개선	28	4.8	78	15.2
참여 종료 후 일반 취업연계	28	4.8	35	6.8
참여 종료 후 기타 자원봉사, 교육 및 사회참여 연계 서비스	6	1.0	35	6.8
적절한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14	2.4	43	8.4
기타	0	0.0	0	0.0
없음	16	2.7	0	0.0
모름/ 무응답	30	5.1	0	0.0

주: 문항별로 결측값이 있으면 사례수 다를 수 있음.

자료: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데이터의 노노케어 참여자 정보 직접 분석함.

제4절 전문가 관점에서의 노노돌봄 쟁점

1. 전문가 심층대면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조사’, ‘노노케어 심층대면조사’ 외에 전문가 관점에서 노노돌봄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무자, 사회과학계열 교수 및 연구자, 공무원, 법학 전문가와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2018년 5월 8일부터 10월 29일간 수행기관의 실무자 및 교수, 연구자, 공무원, 법학전문가 총 38명을 대상으로 약 20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는 초점집단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FGI)를 활용하였으며, 교수 및 연구자, 공무원, 법학 전문가 대상으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일대일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표 3-25〉 노노돌봄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구분	유형	빈도
실무자	(종합)사회복지관	3
	노인인력개발원	1
	노인(재가)복지센터/실버타운	3
	노인(종합)복지관	6
	대한노인회	3
	시니어클럽	5
	협회/재단/법인	3
	소계	24
사회과학계열 교수 및 연구자	대학교수	4
	연구원	1
	소계	5
공무원	지방	6
	중앙부처	1
	소계	7
법학 전문가	헌법·인권 법학자	1
	사회법 법학자	1
	소계	2
총계		38

〈표 3-26〉 노노돌봄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주요 논의 내용

구분	참여자	소속 특성	주요 논의 내용
A. 실무자	A1 ~ A3	(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지향성 - 일자리 대 사회활동 · 사업 운영의 어려움 - 신규 수혜자 발굴과 홍보 어려움 - 전달인력의 낮은 처우 - 부정수급 문제 발생 · 선발기준의 한계(소득인정액 위주) · 서비스 내용 - 기관별 서비스 내용 상이
	A4 ~ A6	노인복지센터 /실버타운	
	A7 ~ A13	노인 (종합)복지관	
	A14 ~ A16	대한노인회	
	A17 ~ A21	시니어클럽	
	A22 ~ A24	협회/재단/법인	
B. 교수 및 연구자	B1 ~ B5	대학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노돌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주화 선행 필요 · 공식적 노노돌봄정책과 유사정책의 연계 및 구분 ·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검토 · 노노케어 사업의 지역별 편차고려(대도시/농촌) · 비공식적 노노돌봄 제공자 욕구 고려
		연구위원	
C. 공무원	C1 ~ C7	지방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의 주요 민원 ·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 허용 · 노노케어 사업 규정 확인 · 향후 노노케어 사업 방향 · 개선방안 현실성 검토
		중앙공무원	
D. 법학 전문가	D1 ~ D2	헌법·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노돌봄 정당성 근거 ·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의 노인 인권 침해 법적 검토 · 사회보장권 적용 가능성 · 노노케어 참여자의 근로자성 판단
		사회법	

전문가 심층면접의 참여자는 실무자 24명과 사회과학계열 교수 및 연구자 5명, 공무원 7명, 법학 전문가 2명의 총 38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에 실무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노노케어 사업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정책인 동시에 노인과 노인 간의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실무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³⁾ 기관유형별로는 실무자는 노인(종합)복지관 6명, 시니어클럽 5명,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협회/재단/법인 3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명이었으며, 사회과학계열 교수 및 연구자는 대학교수 4명, 연구원 1명이었고, 공무원은 지방 및 중앙부처 각각 6명, 1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외에 노노돌봄의 헌법, 사회법, 인권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법학 전문가 2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절의 연구범위는 실무자 대상에 있어서는 노노케어 사업으로 한정하되, 그 외의 전문가 집단(B~D)에 대해서는 노노케어 사업뿐만 아니라 노노돌봄 전반까지 확대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실무자 대상으로 노노케어 사업에 한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한 것은 현재 노노케어 사업의 배경 및 지향성과 관련이 있다. 노노돌봄은 2000년대 초반, 노인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담론과 함께 노인을 부양대상 또는 객체가 아닌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 설정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6년부터 노인일자리 공익사업의 한 유형으로 ‘노노케어’가 실시되었으며, 2016년 기준 40만 명 이상의 노인(참여자 29만 명, 수혜자 13만 명)이 노노케어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일한 공적 노노돌봄 정책인 노노케어 사업과 관련한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노케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쟁점은 노인의 인권적인 문제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노노케어 사업의 주요 쟁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의 인권적 문제 요소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실무자 기관의 소재지는 농어촌 7명, 도시 17명이었으며, 실무자의 직급은 사회복지사, 중간관리자(팀장,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사무국장), 책임관리자(관장, 센터장) 등으로 구성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2. 전문가 심층대면조사 주요 논의 내용

〈표 3-27〉 노노돌봄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주요 논의 내용

구분	주요 논의 내용	노인 인권영역의 요소 ¹⁾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일자리 대 사회활동 · 노노돌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주화 선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보장 · 고용·노동 보호 · 사회참여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수혜자 발굴 어려움 · 선발기준/부정수급 · 돌봄 사각지대 발생 · 예산지원/전담인력의 낮은 처우 · 활동일지 및 지침의 잦은 변경 · 노노케어 사업의 지역별 편차 · 노노케어 사업 규정 확인 · 향후 노노케어 사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엄·안전 · 고용·노동보호 · 건강·돌봄 · 사회참여 · 소득보장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서비스 내용의 상이성 · 공식적 노노돌봄정책과 유사정책의 연계 및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엄·안전 · 고용·노동 보호 · 건강·돌봄 · 사회참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적 노노돌봄 제공자 욕구 · 노노돌봄 당사자 인권 침해 법적 검토 · 개선방안의 현실성 검토 · 사회권 적용 가능성 ·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노돌봄 정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엄·안전 · 건강·돌봄 · 사회참여

주: 1) 원영희 외(2017). 노인인권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노인인권 영역 분석틀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전문가 심층면접에서 쟁점으로 제기된 핵심 주제를 크게 구분하면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인식, 사업운영, 서비스 내용,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논의는 사업 운영, 서비스 내용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에 관해서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은 전혀 다른 사항들이 아니고 결국은 서로 관계되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안별로 소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노노케어 사업에서의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이면서 노인인 참여자와 수혜자의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가. 자원봉사자 대 근로자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인식 관련해서 노노케어의 성격을 ‘일자리’로 보고 노노케어 참여자를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또는 ‘자원봉사 또는 사회활동’으로 보고 노노케어 참여자를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만 인정을 할 것인지가 논쟁이 되었다. 현재는 노노케어를 일자리가 아닌 사회활동으로 간주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위만 부여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난 상태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노노케어 사업 관련해서 지난 몇 년간 활발했던 주제로 향후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쟁점 사항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나. 노노돌봄의 대한 개념과 범주화

최근에는 노노돌봄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가족 내 비공식적 노노돌봄은 의식주를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상호관계인 반면, 노노케어 사업은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로 돌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5년에 노노간병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2014년까지는 가사 및 활동보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재보다 돌봄 서비스의 범위가 넓고 활동 강도가 높았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공익형으로 사업이 재구조화 된 이후 노노케어란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축소되면서, 가사활동과 경로당에서의 활용은 지양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노케어의 범위 규정에 대해 전문가들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수행기관 실무자(A2, A7, A6)들에 따르면, 노노케어 사업 내용 지침 상 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수혜자는 안부확인 및 말벗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노케어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돌봄이 필요한 수혜자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노노케어 수혜자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자와 합의만 된다면 지침 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은 일정부분 묵인해도 된

다는 입장의 실무자 의견도 있었다(A20, A22). 이에 대해 설거지, 청소 등 가사활동까지 포함하면 수혜자 입장에서의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그만큼 참여자에게는 부담이 되어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의 관리자도 있었다(A10, A24). 그러나 노노케어 사업의 수혜자 대상자격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복합적인 질병을 보유했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B3, B4). 이들의 의견은 노인의 건강과 돌봄권 측면을 고려하면 단순히 정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노케어의 범위는 수혜자의 건강·돌봄권 및 사회보장권과 참여자의 고용·노동 보호 측면의 인권과 욕구가 상충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B1, B2, D1, D2). 노노케어에서는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인이기 때문에 자칫 어느 한 측의 입장만을 과도하게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바였다. 그러므로 양측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노노케어 서비스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C2, A23).

다. 노노케어 수혜자와 참여자의 자격 조건

노노케어 수혜자와 참여자의 자격 기준도 중요한 쟁점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규정 상 수혜자는 독거노인·부부노인·조손가구, 경증 치매노인 등 취약노인 중 연령, 경제상태, 건강 등 연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있는 노인은 제외한다는 자격 조건을 갖는다. 수행기관 실무자들은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동주민센터에서는 노노케어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적어 수혜자 모집·발굴이 힘들다고 호소했다(A3, A6, A12, A18 등).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 돌봄종합(기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노노케어 중복 수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수행기관에 할당된 사업량이나 참여자 수에 비해 수혜자 수가 적어서 독거노인이면 경제·건강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아도 수혜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한편, 노노케어 참여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소득인정액(60점), 참여경력(5점), 세대구성(15점), 활동역량(보행능력 10

점, 의사소통 10점)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자는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선발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비중이 높고 활동역량 비중은 낮아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참여자가 선발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 실무자 입장에서는 수혜자 모집 및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를 허용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A2, A7, A19 등).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경우 다른 돌봄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 허용에 관해서는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교수와 법학 전문가 중 소수는 다른 돌봄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가 국가 예산의 낭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수혜자가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보장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다(B4, D2).

참여자 선발 조건에 관해서 수행기관 실무자들은 건강상태가 양호한 참여자가 선발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주로 가지고 있었다(A2, A7, A19 등).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소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을 선호하고 소득보장권 차원에서도 부합할 수 있다는 반박 의견도 있었지만(B2, A24), 참여자 선발 시 소득인정액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였다(C4, C5, C6). 다만, 연령, 건강상태, 성격 등 소득인정액을 대체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자칫 차별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B4, D1).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국내 노노돌봄 현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에 일부라도 제한이 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약 25%를 차지하였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약 28%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청소·빨래·시장보기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24%, 외출동행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43%였다. 식사를 준비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38%,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70%나 되었다. 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 돌봄 서비스 확충과 함께 노노케어(일자리) 사업 확대가 요구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상생활 지원 욕구는 24시간 상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노노케어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노노케어 사업의 참여자와 수혜자를 지리적으로 근접한 마을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서비스를 욕구기준에 근거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노케어 사업(중복기준 제외)의 확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노노케어 참여자의 참여동기 1순위로는 경제적 이유가, 노노케어 참여자의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물가수준을 고려한 활동비 지급, 참여자의 적성을 고려한 활동배치, 취업 관련 정보와 교육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노인일자리/노노케어 사업의 목적은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노후소득보장 더 나아가 수혜자의 안전과 존엄 지원이라는 점에서 참여노인이 노노케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교육과 활동매칭, 활동비 지급을 하고 수혜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제 4 장

국내외 노노케어 사업 사례

제1절 해외 사례

제2절 국내 사례

제3절 소결

4

국내외 노노케어 사업 사례 <<

노노돌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국가별, 연구자별로 다양하다. 따라서 노노돌봄에 대한 해석(평가와 층위) 역시 국가별로 다양하다.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로 가족 내 돌봄이 급증함에 따라 자연스레 노노돌봄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수발 살인, 자살 등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며 노노돌봄을 부정적 돌봄의 한 형태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노노돌봄을 이웃 간 돌봄의 한 형태로 해석하고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역시 가족형 노노케어에 대한 부정적 사례가 기사화되고 있고, 부족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노케어(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는 미국, 유럽국가와 달리, 가족 내 돌봄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노노돌봄을 긍정적, 부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경우 일찍이 가족 내 돌봄보다 사회적 돌봄이 보편화되어 있어 가족 내 돌봄에서 발생하는 수발 살인 등이 사회문제 제시 되지 않았고 필연적으로 노노돌봄을 이웃 간 돌봄,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긍정적으로 해석, 장려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해 본장에서 는 국내외 노노케어 사업은 그 범위와 층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일본, 미국, 유럽국가 모두 노노케어를 불충분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보충(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지원)하고 노인 유희인력 활용하여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장려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제1절 해외 사례

1. 일본의 노노케어 사업

가. 노노돌봄 개념과 특징

일본에서의 노노돌봄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이 돌보는 것을 뜻한다. 노노케어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노노케어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60세 이상 노인(60세에서 64세는 예비노인)이 돌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와 가족형태의 변화(핵가족, 일인 가구 증가)로 자연스럽게 부양인구또한 고령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노케어가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에서 노노돌봄이 증가한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노노돌봄 증가 원인⁵⁾

- (핵가족화) 핵가족화로 부부세대나 혼자 생활하는 노인 가구, 미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인 부부끼리 서로를 돌보는 노노돌봄 증가
- (평균수명 증가)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돌보는 사례가 늘어남. 70대의 자녀가 90대의 부모를 돌보는 노노돌봄 사례 증가
-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 세대가 늘어나는 반면 돌봄을 담당하는 자녀세대 수는 줄고 있음. 한 자녀가 여러 명의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노노돌봄 증가
- (농어촌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불일치)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 수는 적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림. 어쩔 수 없이 배우자 혹은 자녀 노인이 돌봄 수혜자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 발생
- (금전적 부담) 요양 시설을 이용하려면 고액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이 자택에서 노인을 돌보는 노노돌봄 증가

4) 건강수명은 돌봄 없이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클수록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늘어나므로 노노케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5) <https://www.senior-anshin.com/news/kaigo/20160428/>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가족형 노노돌봄은 2000년대부터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노돌봄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돌봄 제공자의 건강 악화는 물론 동반자살, 학대, 수발 살인 등의 사회적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내각부 자살 통계에 따르면⁶⁾,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간 돌봄·간병 피로를 이유로 자살한 자가 2,515명이고 그중에서 60세 이상 노인은 1,506명이었다. 또 돌봄·간병 피로를 이유로 자살한 자의 약 60%가 노노돌봄을 제공하였다. 문제는 노노돌봄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노인이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기 쉽고 체력 소모가 많아져 돌봄이 장기화될수록 돌봄 제공자나 돌봄 수혜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돌봄 제공자가 돌봄 수혜자를 돌보다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또 돌봄을 제공하다 고립되어 함께 자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돌봄이 장기화될수록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돌봄 수혜자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 모두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이처럼 일본에서 노노돌봄은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의 인권문제,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의 한 형태로 지원이 필요한 돌봄 형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노돌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데, 독거노인, 부부노인세대 등 일인가구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 민생위원⁷⁾ 등을 활용한 노노케어, 이웃 간 돌봄(안부확인, 쇼핑 등 일상생활지원)을 장려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웃 간 돌봄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인의 문제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여 노인이 가능한 오래도록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뿐만 아니라 부족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보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웃 간 돌봄, 즉 노노케어를 재해석하고 있다.

6) <https://www.irs.jp/article/?p=191>에서 재인용

7) 민생위원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각 구역에 배치된 민간위원(한국의 통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민의 생활과제를 파악하고 주민이 지역에서 자립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상담, 조언하는 역할을 함.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결시킴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과 지원을 요청함

〈표 4-2〉 노노돌봄 부정적 사례

<p>[사례1]</p> <p>사이타마에서 치매에 걸린 모친(80대)을 돌보고 있던 딸이 모친과 병에 걸린 부친을 차에 승차시킨 후 그대로 강에 돌진, 동반자살을 도모하여 양친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로 체포되었다⁸⁾.</p> <p>[사례2]</p> <p>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80대 남편이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아 쇠약해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사례1과 출처가 동일함).</p> <p>[사례3]</p> <p>2016년 11월 18일, 치바현에서 53세의 아들이 89세의 모친을 살해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아들은 "돌봄(간병)에 지쳤다.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모친 돌봄에 전념할 생각으로 2016년 9월에 일(우체국)을 그만두었지만 그의 돌봄 피로도는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장기요양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었음). 인근 50대 여성은 10월 말 아들을 보았을 때 밥을 못 먹어서 기운이 없고 갑자기 늙어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였다⁹⁾.</p> <p>[사례4]</p> <p>카나가와현¹⁰⁾에 따르면 노노케어의 약 10%가 인인(認認)케어였다. 치매노인이 치매노인을 돌보는 인인케어는 돌봄 수혜자와 돌봄자 모두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 신변 안전문제와 각종 위험(금전관리, 화재 등 긴급 시 대응의 어려움)에 노출되기 쉽다.</p>

나. 노노돌봄 규모

2016년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厚生労働省 国民生活基礎調査)에 따르면 자택에서 노인을 돌보는 65세 이상 노인 돌봄자는 전체 돌봄 제공자의 54.7%에 달하는 등 자택에서 노인을 돌보는 세대의 절반 이상이 노노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다. 돌봄 수혜자와 동거하며 노노돌봄을 제공하는 60세 이상 남성 돌봄자는 50.1%, 여성 돌봄자는 69.9%에 달한다.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 75세 이상인 초노노케어의 비율은 30.2%로 2001년 조사 실시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돌봄 시대에서 75세 이상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초노노케어 시대로의 변화가 머지않았다. 이와 함께 최근 치매노인이 치매노인을 돌보는 인(認)인(認)케어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인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돌봄 형태에 돌봄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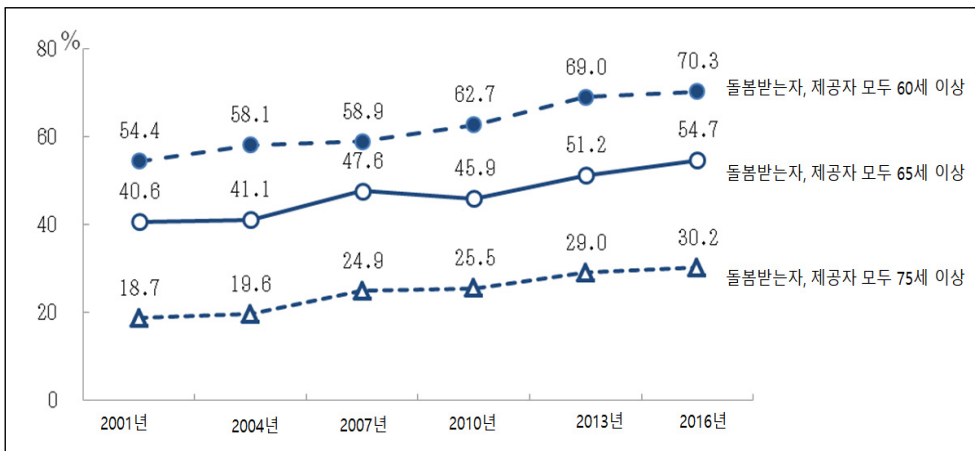
8) <https://www.newweekjapan.jp/stories/world/2017/12/21-14.php>에서 2018.10.22.인출

9) <http://www.jprime.jp/articles/-/8633>에서 2018.10.22.인출

10) <https://dot.asahi.com/wa/2018072700009.html?page=2>의 내용을 요약함

자와 주돌봄자 모두가 치매노인인 것을 말한다. 인인케어의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80세에서 84세 치매발생률이 21.8%라고 추정하면 80세 이상 노노돌봄 세대 중 9.5%가 인인케어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¹¹⁾. 80세 이상 노노돌봄을 실시하는 11세대 중 1세대가 인인케어 세대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필연적으로 노노돌봄, 인인케어가 증가할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안정적인 가족형 노노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림 4-1] 노노돌봄 규모



주: 1) 이 그래프에서 노노케어는 가족형 노노케어(돌봄 제공자가 돌봄 수혜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말함
 2) 돌봄 수혜자는 요양등급(요계호 1~5등급, 요지원 1~2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함
 자료: 厚生労働省.(2016). 平成28年国民生活基礎調査

다. 공식적 노노케어 사례

앞서 언급했듯이 노노돌봄은 노인이 노인을 돌봄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동반 쓰러짐, 수발살인, 동반자살 등) 외에도 부족한 돌봄 자원을 보충, 보완하기 위한 지역 사회 돌봄, 이웃 간 돌봄의 한 형태로서 해석되기도 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사례 3에서 알 수 있듯이 케어란 24시간 연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족이라 해도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 다시 말

11) <https://www.minnanokaigo.com/guide/care-trouble/elder-to-elder-nursing/>에서 2018.10.22. 인용

해 신체,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지역에서 24시간 생활하기 위해서는 요양등급에 따라 서비스 총량이 정해지는 공적 돌봄 서비스 외에 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수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형 돌봄(예를 들어 지역사회형 노노케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 교토시 실버인재센터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¹²⁾

교토시 실버인재센터에 등록된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이 독거노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집에 방문해 청소, 세탁, 요리 등을 실시하거나 병원이나 쇼핑 등에 동행하는 외출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노노케어와 달리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할 때 실버인재센터에 전화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서비스 내용¹³⁾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실버인재센터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지역사회형 노노케어의 한 형태로 이용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필요한 가사 지원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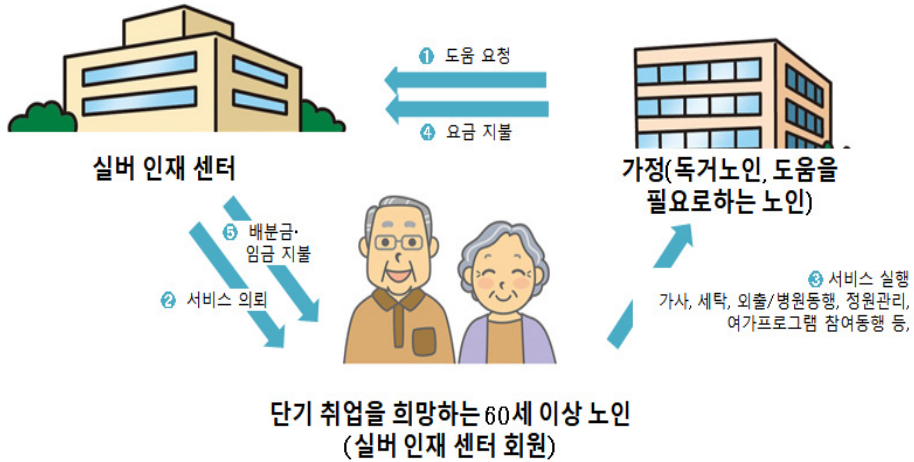
실버인재센터는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기관인 시니어클럽과 유사한 기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 기회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노케어를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한다. 이용자와의 이용 계약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일한 노인에게 배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한다. 2016년도 기준 전국 1,323개 실버인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등록된 노인 회원 수(지식, 경험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자)는 481,247명에 달한다¹⁴⁾.

1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노노케어의 한 형태로 교토시 실버인재센터 외에 일본 전국에 설치된 실버인재센터 혹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임

13) 요리는 1회(2~4인분) 2,730엔, 청소·세탁은 1시간 910엔, 정원 가꾸기는 1시간 1,000엔임

14) http://www.zsjc.or.jp/toukei/toukei_pdf?id=11에서 2018.10.22. 인출

[그림 4-2] 노노케어(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이용절차



자료: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2018년 한중일 인구포럼 발표자료를 참고로 작성

2) 교토시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의 고립사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복지위원이 독거노인의 자택에 방문 혹은 전화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노인복지위원은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독거노인의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는 등 말벗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 지역 행사(건강체조 교실 등)에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독거노인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복지사무소(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 노인복지위원은 1974년 교토시 독자사업으로 실시되었고 약 1,200명의 노인복지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교토시장에 의해 위촉(임기 3년)되며 봉사활동 형태로 진행된다. 매년 1회, 교토시 전 지역에서 선발된 노인복지위원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서비스와 관련한 연수를 실시한다.

3) 커뮤니티 카페 운영¹⁵⁾

노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이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한다. 커뮤니티 카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한 형태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지역주민이 고령화됨에 따라 주로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노노케어 형태로 운영됨). 카페운영 직원(봉사활동, 노인 5명)이 차와 다과를 준비하고 점심에는 도시락을 주문하여 참여자(지역주민, 노인)와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 참여자, 직원이 함께 모여 조리실에서 점심을 만들어 먹는다. 건강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미니강좌를 개설하여 함께 공부하거나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복지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다. 커뮤니티 카페는 일본 전 지역에 이웃 간 돌봄의 한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중심으로 활동이 보급되고 있다.

2. 미국의 노노케어 사업

한국의 대다수 일자리는 법적 정년제도가 있어서 만 65세 이전에 퇴직해야 하고,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자격은 만 65세 이상일 때 갖게 되는 연령 제한 규정이 있다. 반면, 미국은 1967년에 제정된 연령차별고용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이 있어서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정년에 의한 강제퇴직을 못하도록 보호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내용을 개발하고 대상자를 모집·관리하며 활동비까지 지급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노후소득을 벌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다(이석원 외, 2017). 한국에서의 노인 돌봄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재가서비스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 서비스 크게 둘로 구분이 되고 일반 가정과 병원·시설 중간 형태의 주택이나 공동 마을에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 서비스는 매우 드물다. 반면, 미국은 은퇴자나 노인이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노인주거단지에서 살면서 의료·가사·돌봄 지원을 받는 주거복

15) 市民福祉団体全国協議会 발간자료(あなたとわたしのホット安心カフェマップ)에서 인용

지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은 근로기준법,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의 운영,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활동 등 법·제도·사회문화적 맥락에 차이가 크다. 본 절에서 소개하는 미국의 노노케어 사업 우수사례를 이해할 때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가. 고령자동료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SCP)

한국의 노노케어 사업과 유사한 미국의 고령자동료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SCP)부터 소개하겠다. 미국에는 55세 이상의 중고령자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받는 고령자환경고용프로그램(Senior Environment Employment Program: SEEP) 중 하나인 SCP가 있다.

미국의 SCP는 한국의 노인인력개발원과 유사하게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CNCS)이라는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federal grant-making government agency)에서 수행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CNCS는 1993년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에 근거해서 설립됐고, 현재는 전 연령대와 다양한 배경을 지닌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NCS는 AmeriCorps, Senior Corps, Social Innovation Fund라는 세 개의 핵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SCP는 이 중에서 Senior Corps의 하위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까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노노케어 사업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SCP는 동년배거나 더 고령인 노인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친구처럼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1974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SCP 참여자는 고비용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노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CP의 사업 내용은 지역사회 내 건강한 중고령자가 주변에 있는 동년배나 더 고령인 노인의 친구가 되어서 도움을 주고 소정의 급여, 교통비, 식사,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노케어와 유사하다. 한국의 노노케어는 주요 서비스 내용이 말벗과 안부확인이지만, SCP는 집 안 청소, 장보기, 식사 준비, 외출동행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다. SCP 참여자는 시급으로

활동비를 받고, 활동비 외에 사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 혜택, 교통비 지원, 건강검진(매년), 인지기능검사, 활동 중 식사비의 보조적인 지원이 있다. 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적게는 15시간에서 많게는 40시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월 3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한국 노노케어 사업보다 활동 강도가 세다. 단, SCP 참여자 연령 기준이 55세 이상으로 한국 노노케어 참여자 최소 연령 기준보다 10세가 젊다. 미국의 SCP 참여자는 평균 2~4명의 수혜자 가정을 방문한다. 참여자는 사전에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소속된 수행기관에서 정기적인 교육도 받는다(<https://www.nationalservice.gov/programs/senior-corps/senior-corps-programs/senior-companions>). 본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SCP는 40년 이상 된 연방정부 차원의 서비스답게 목적, 서비스 내용, 전달 체계, 수행기관 담당자의 업무, 참여자와 수혜자 모집, 보수교육, 활동지침, 평가 방법 등이 200쪽 이상 분량의 매뉴얼로 만들어져서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된 기간이 채 몇 년이 되지 않아서 한창 체계를 잡아가는 한국의 노노케어 사업이 향후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 플로리다 주 Fort Myers와 Sun City Center시의 노노케어 프로그램

플로리다 주 Fort Myers와 Sun City Center시에서는 60대 후반~70대 초반의 건강한 저소득층 노인이 수천 명 규모의 대규모 노인주거단지에 거주하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세탁, 방 청소 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인수, 2011). 한국의 노노케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 제도의 특징은 건강 문제가 있는 초고령 노인에게는 말벗과 식사 동행 등이 무료 자원봉사로 제공되고, 건강한 노인 입주자들에게는 적지만 유료 서비스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노노케어 참여자의 연령과 건강수준에 대한 제한 비중이 적고 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격을 얻지만, 미국에서의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건강수준에 의한 자격 제한 기준이 더 높다. 또한, 도보나 자전거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에게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고 낙상의 위험까지 있을 수 있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게 한국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노인주거단지에 거주하는 수혜자 노인은 중산층 이상이고 돌봄 서비스 제

공자인 노인은 저소득층이어서 이들이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는데(이인수, 2011), 한국에서는 노노케어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많아서 미국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 뉴욕의 에이지웰(AgeWell)과 샌프란시스코의 엔보이(Envoy)

미국에서는 주(state)마다 복지제도가 공공 프로그램이 부재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주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노노케어 사업이 자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비영리 공공 노노케어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영리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미국의 사례로 뉴욕의 에이지웰(AgeWell)과 샌프란시스코의 엔보이(Envoy)가 있다. 에이지웰은 한국에서의 수행기관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노케어 참여자와 수혜자를 연계해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고, 참여자를 관리 및 교육하며, 회비 차원의 수수료를 이윤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http://www.agewellnewyork.com/for-members/member-materials/>). 수혜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Medicare) 자격별로 월 0~86달러까지 차등 적용된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모두 수급자면 월 이용요금이 0달러, 메디케어 수급자이면서 요양원에 거주하면 월 0~39달러(메디케이드 수급자격에 따라 달라짐), 메디케어만 수급자이면 월 19~86달러씩이다. 서비스 내용도 이용요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복약, 운동, 치과, 시력점검, 청력점검, 예방접종, 사례관리 등 보건·의료·돌봄 복합서비스를 제공한다(<http://www.agewellnewyork.com/for-members/member-materials/>).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엔보이는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노인과 시간제로 일하는 돌보미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는 일대일로 매칭된다. 회비는 월 19달러이며 수혜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돌봄 제공자는 시간 당 18~20달러를 받는다. 서비스 내용은 장보기, 간단한 집안일,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의료 돌봄을 제공한다. 활동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총소득도 많지 않지만 돌봄 제공자들은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활동을 한다는 의식을 갖고 참여한다(<https://www.care.com/b/l/envoy/san-francisco-ca>).

이처럼 미국에서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고령자동료프로그램도 있지만, 영리 목적의 민간 회사가 노노돌봄 참여자와 수혜자를 연계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도 다양하게 활성화 되어 있다.

3. 유럽 국가의 노노케어

유럽의 고령자 대상 패널조사인 SHARE(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에서의 돌봄은 주로 비공식 보호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식적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는 정부(공공단체), 비영리단체 및 영리단체가 중심적인데, 국가마다 각 제공 주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이한 실정이다. 영국은 재가서비스기관 및 요양시설 모두 민간 영리단체의 비중이 높고 덴마크는 재가서비스기관 및 요양시설 모두 공공단체가 중심적이지만, 재가서비스부문의 가사지원은 민간영리단체에도 개방한다. 독일은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가 균형적으로 비중을 차지한다. 각 국가에서의 노노돌봄 서비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우선, 영국의 노인 돌봄 서비스로는 홈헬프서비스가 있다. 홈헬프서비스(Home Help Service)란 홈 케어 서비스로서, 그 유형으로 크게 가사원조 서비스와 신체수발 서비스로 분류된다. 가사원조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식사 준비지원, 청소와 세탁, 수취 업무 대행, 장 보러 가는 일의 대행 등이 있으며 신체수발 서비스는 식사도움, 옷 갈아 입을 때 도움, 목욕 도움, 보행 시 도움 등으로 세분화된다. 홈 케어 서비스의 주된 이용자는 스스로 몸을 돌보기 힘든 고령 후기 노인, 국가로부터 공적 부조를 받는 노인,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노인이다.

독일의 경우, 오랜 가족주의 전통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가족에 의한 비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돌봄 역할을 수행했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가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고령화에 대응하여 전기 노인이 후기 노인을 서로 처한 현실에 걸맞게 도움을 줌으로써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다양한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의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많은 노인들이 무보수 명예직(Ehrenamt) 제도¹⁶⁾와 노

16) 무보수 명예직 제도(Ehrenamt): 자원봉사와 비슷한 맥락으로 행했던 일에 대해서는 정신적 만족과 대략의 교통비 정도만 지원받음. 전문직 직종에 많음

인 사무국(Altenbuero)¹⁷⁾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지역공동체에 보탬을 줌과 동시에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풍토를 실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노인 돌봄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설 돌봄을 최대한 지양하고 살던 환경에서 정상적이며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집에서 최대한 돌봄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한다. 다른 사람의 지원이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을 지원하는 수발 서비스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에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식사 준비, 잡자리 봐 주기, 청소, 목욕, 빨래, 장보기, 산책 보조, 병원 동행, 외상환자 수발 등에 관한 모든 생활 관련 서비스들이며 의료 서비스는 제외된다. 일상적인 가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제공, 발 관리, 음식물 배달, 경보장치, 주택개조,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보호서비스가 포함된다.

한편, 스웨덴의 노인 사회참여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연금의 보장 수준이 높고 소득재분배적인 제도를 보이나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스웨덴의 노인 사회참여 모형은 ‘자발적 민간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정부 지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가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비율은 낮으나 연금 수급자 단체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통해 노년기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17) 노인사무국(Altenbuero): 1992년부터 시작된 노인자체결성 조직으로 자기 책임하에 지역사회 일을 거두고 있음.

제2절 국내 사례

1. 서울 서대문구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장애인 인력을 활용한 노노케어 사업 진행해서 이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서대문구 노노케어 사업에서는 중고령의 4~6등급 지체 장애인과 거동·대화가 가능한 뇌 병변 장애인 20명이 노노케어 참여자로서 수혜자 독거노인 100명을 돌보는 활동을 하고 있다(참여자 대 수혜자 비율=1 대 5). 이렇게 채용된 장애인 노노케어 참여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1일 3시간, 월 19일을 근무하면서 월 66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 구 차원에서 해당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와 수혜자들을 모두 모아 평소 각자는 몸이 불편해서 다녀오기 힘든 나들이와 여행을 다녀오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은 2017년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한국일보, 2017.12.19.).

서울 서대문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노케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노노케어 참여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앞서 소개한 미국의 사례에서도 언급했듯이 연령에 의한 고용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노케어 사업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과 사회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나 역으로 비노인의 고용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 노노케어 사업은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참여자의 연령대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노노케어 참여자에게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노노케어 참여자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자원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이 아닌 활동비를 받고 있고, 근로 또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활동을 한다고 표현하며, 그로 인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도 힘든 실정이다. 암묵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법 적용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별적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될 수도 없고, 수행기관 차원에서 보험에 가

입해서 참여자들이 다쳤을 때 그 보험으로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서대문구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은 개인별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처우를 받고 있다.

셋째, 서대문구 노노케어 사업의 월 근무시간과 임금은 일반적인 노노케어 활동시간과 활동비보다 훨씬 높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노노케어 사업에서는 활동시간을 최대 월 30시간으로 제한하고, 활동비는 2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막상 1일 3시간 주 3회를 활동할 경우 한 달 4주 동안 최대시간보다 6시간 많은 36시간을 활동하고 추가적인 활동비는 못 받고있는 상황이다. 모든 노노케어 참여자의 선호는 아니지만 건강이 양호하고 연령이 비교적 젊은 노노케어 참여자는 더 많은 시간 활동하고 활동비도 더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노케어 최대 활동시간과 활동비를 세분화할 경우 참고사례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토대로 사업이 제안되고, 수행기관이 강점을 가진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탑다운(Top-Down)이 아닌 바텀업(Bottom-Up)으로 사업이 제안되고 운영되어서 전국의 통일적인 규정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충청북도 ‘9988행복지킴이’

서대문구의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이 자치구 재정 여력이 있는 대도시의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우수사례였다면, 이번에는 중소도시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 도가 주도해서 발전시킨 ‘9988행복지킴이’를 우수사례로 살펴보겠다. 충청북도 ‘9988행복지킴이’에서도 수혜자는 자활간병서비스,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자익요양보험, 복지도우미, 방문요양서비스 등 유사사업 이용 시 제외되고, 독거노인·부부노인·조손가구 등 65세 이상 취약노인 중 경제 상태, 의료건강, 치매증상, 거동불편 등 연중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경우 대상자가 된다는 자격 요건이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노노케어 사업과 동일하다. 하지만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전국형으로 확대된 충청북도의 ‘9988행복지킴이’는 충청 전 지역을 시군구보다 훨씬 작은 단위이자 읍면동과도 다른 자연마을(촌락, 취락, 부락 등으로 불림)로 구분하고, 마을에 사는 건강한 노인이 이웃에 혼자 살거나 도움이 필요

한 다수의 노인(4~8명)을 매칭시켰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행정구역상으로 구분했을 때 충청북도에는 150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9988행복지킴이'의 자연마을은 총 5,737개로 나뉘어 읍면동보다 훨씬 근접한 공간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나 다른 지역에서는 수행기관에서 노노케어 참여자를 선발하고 수혜자와 매칭을 시켜주는 방식이었는데, 충청북도 '9988행복지킴이'는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이 추천하여 참여자를 선발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김학실, 2017). 다만,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이 책임감과 봉사정신, 신체 건강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더라도 고령의 노노케어 참여자가 10살 이하의 수혜자를 돌보는 것은 지양하도록 규정한다.

〈표 4-3〉 충청북도 자연마을 현황

(단위: 개소, 명)

지역	자연마을	노노케어 참여자
전체	5,737	6,890
청주	1,125	1,796
충주	744	1,003
제천	507	704
보은	468	534
옥천	375	410
영동	431	416
증평	108	154
진천	355	478
괴산	580	442
음성	649	600
단양	395	353

자료: 2016년 충청북도 내부자료. 김학실(2017) 표 내용 수정하여 재인용함.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서의 노노케어 사업에서 가장 난점으로 지적되던 것이 수행기관에서 한 시군구 내 거주하는 참여자와 수혜자를 임의로 매칭하기 때문에 참여자와 수혜자 간 지리적 근접성이 너무 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9988행복지킴이'는 행정구역 읍면리보다도 소규모인 마을별로 매칭을 해서 농어촌에서의 교통 불편과 시간 소모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유대감이 형성되기 쉽

고, 일상에서 항상 도움을 주며 수혜자의 신변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표 4-4〉 충청북도 '9988행복지킴이' 운영체계

구분	역할
도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사업총괄 및 조정 -사업 홍보 지원 -사업 지도·점검
시·군	-수행기관 선정, 관리·감독 -수행기관에 행·재정적 지원(독거노인DB제공) -수요처(대상마을) 선정-수행기관과 공동추진
사업 수행기관	-사업 실행계획 수립·시행 -행복'지킴이' 선발, 교육 등 사업제반업무 수행 -보수지급, 근무상황, 업무 확인 등 참여자 지도·관리

자료: 2016년 충청북도 내부자료, 김학실(2017) 표 내용 수정하여 재인용함.

'9988행복지킴이'는 도, 시·군, 사업 수행기관, 노노케어 참여자의 운영 체계가 일사불란하고, 수직적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되어서 정부의 타 사업이나 지역 내 자원 연계를 도모하기에도 용이하다. 한 예로, 보건소의 건강관리사업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 치매환자 복약관리 등을 '9988행복지킴이'와 접목해서 진행하기도 한다. 한 달에 한 번 노노케어 참여자가 교육을 받으러 수행기관을 방문했을 때 치매안심센터에서 파견 나와 치매예방교육이나 치매환자 복약 관리교육을 하면, 평소에 노노케어 참여자가 인지저하가 있거나 경증 치매인 수혜자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 경과를 확인하고 복약을 도와주고, 관리상황을 다음 달 교육 때 보고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 중이라 전국적인 사업 모형으로 확대·발전하기까지 아직 보완될 사항이 많이 있지만, 관 주도하에 이처럼 다른 기관과 사업을 접목하고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제3절 소결

노노돌봄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범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 소개된 국내의 노노돌봄 사업 사례의 범위도 역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 일본을 포함한 미국, 유럽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최근에는 부족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해 이웃 간 돌봄 등 다양한 형태로 노노케어 사업을 개발 및 장려하고 이를 노인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향후 한국에서는 가족 내 돌봄으로 인한 살인, 자살 등 가족형 노노돌봄 문제가 급증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고령화로 노인 수가 급증하는 반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공식적 돌봄 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노노돌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처럼 이웃 간 돌봄, 공적 노노케어 사업, 시장형 노노케어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노노케어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처럼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쇠약한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 문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노노케어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소득수준에 근거해 선발되어서 건강상태가 나빠도 본인이 신청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뿐 아니라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참고한 국내의 우수사례와 같이 노노케어 사업 참여노인이 더 나은 처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운영을 허용하며,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제 5 장

일반노인 노노돌봄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5

일반노인 노노돌봄 인식조사 <<

제1절 조사 개요

노노돌봄에 대해 우리나라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8년 9월 10일 ~ 9월 18일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노노돌봄에 대한 노인인식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남녀이다. 표집틀은 유무선 전화 RDD를 표집틀로 하고, 지역별,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비례할당 추출하는 표집방법을 사용했다. 표본크기는 유선전화 255명, 무선전화 745명의 총 1,000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1\%p$ 이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이다. 2018년 8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표본 설계, 조사 결과의 분포, 가중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 이러한 조사는 (주)한국리서치를 통해 실시했다.

<표 5-1> 일반 노인 대상 노노돌봄 인식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남녀
표집틀	- 유무선 전화 RDD
표집방법	- 지역별/성별/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총 1,000명(유선전화 255명, 무선전화 745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 (2018년 8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조사일시	- 2018년 9월 10일 ~ 9월 1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표 5-2〉 일반 노인 대상 노노돌봄 인식조사 내용

구분	내용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	노인 돌봄의 책임자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생각
	노노돌봄에 대한 생각
	노노돌봄의 장점
	노인 돌봄하는 노인이 겪는 어려움
	노노돌봄 중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점
	노노돌봄 중 학대 경험 유무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
	다른 노인을 돌볼 때 필요한 도움
	돌봄 받을 때 필요한 국가, 사회가 제공하는 도움
	노노케어 사업 인지 여부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일반적 특성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 돌봄 의향
	혼인상태
	동거상태
	소득계층
	건강상태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수혜 여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노돌봄 인식조사에서의 조사 내용은 노인 돌봄의 책임자,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 노인인 자녀나 며느리가 부모를 모시며 돌보는 것에 대한 생각, 노노돌봄 장려에 대한 동의 정도, 노노돌봄의 장점, 노노돌봄 제공자의 어려움, 노노돌봄에 대한 사회적 우려, 노노돌봄에서의 학대, 노노돌봄에서의 인권 보호, 노노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국가와 사회에 대한 돌봄 제공 기대, 노인 일자리사업 노노케어 인지,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가족 외 노인 돌봄 의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은 노인의 성, 연령, 거주 지역, 혼인상태, 동거가족원, 소득계층, 건강 상태, 돌봄 제공 여부, 돌봄 수혜 여부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함께 조사하였다. 노노돌봄에 대한 노

인인식조사 결과에서는 노노돌봄 세부 조사 내용에 대한 일반 노인 전체의 태도를 먼저 분석하고, 이어서 이러한 태도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제2절 조사 결과

노노돌봄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전체 노인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태도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나눠서 분석한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중부터 보겠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5%로 남성 45%보다 10%p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의 평균 수명보다 길어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여성의 인구수가 남성의 인구수보다 많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53%로 절반을 조금 넘었고, 70대는 31%였으며, 80대 이상은 16%로 적었다. 거주 지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의 권역별로 나뉘었을 때는, 인천/경기가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서울 19%로 수도권 지역에 약 45%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이 17%였고, 광주/전라,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은 각각 11~12% 정도의 비중으로 비슷했으며, 마지막으로 강원/제주 비중은 5%로 가장 적었다. 거주 지역을 동 지역과 읍면리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는 조사대상자가 60대 이상 노인인데도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79%로 대다수였고, 읍면리에 거주하는 경우는 약 1/5에 불과했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76%를 차지했고, 사별도 19%가 있었지만, 미혼/이혼/기타는 6%로 매우 적었다. 동거상태는 배우자와만 거주하는 경우가 55%로 절반을 조금 넘었고, 22%는 응답자 1인가구로 살고 있었으며, 배우자, 자녀의 2세대가 함께 사는 비중은 13%였고, 자녀와만 사는 경우는 7%로 적었다.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층과 중층이라는 응답이 각각 49%로 거의 절반씩이었고, 상층이라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돌봄과 관련해서 건강상태는 돌봄이 가능할 정도로 좋음,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나

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의 4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조사 결과, 돌봄이 가능할 정도로 좋음이 37%로 가장 많았고,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은 각각 27~28%로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으며,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쁘다는 응답은 9%로 적었다. 돌봄 제공 여부는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 가족이 아닌 노인을 돌봄, 돌봐주는 노인 없음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86%인 대부분이 돌봐주는 노인이 없는 상황이었고, 가족을 전담하여 돌봐주는 경우는 7%, 가족이 아닌 노인을 돌봐주는 경우는 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돌봄 수혜 여부를 전혀 없음,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 가족/외부 사람이 함께 돌봄, 외부 사람이 전적으로 돌봄으로 구분했을 때, 대다수인 83%는 돌봄을 받는 것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돌봄을 받는 노인 중에서는 가족이 전적으로 돌봐준다는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12%로 가장 많았고, 외부 사람이 전적으로 돌봐주거나 가족과 외부 사람이 함께 돌봐주는 경우는 각각 3%, 2%로 아주 소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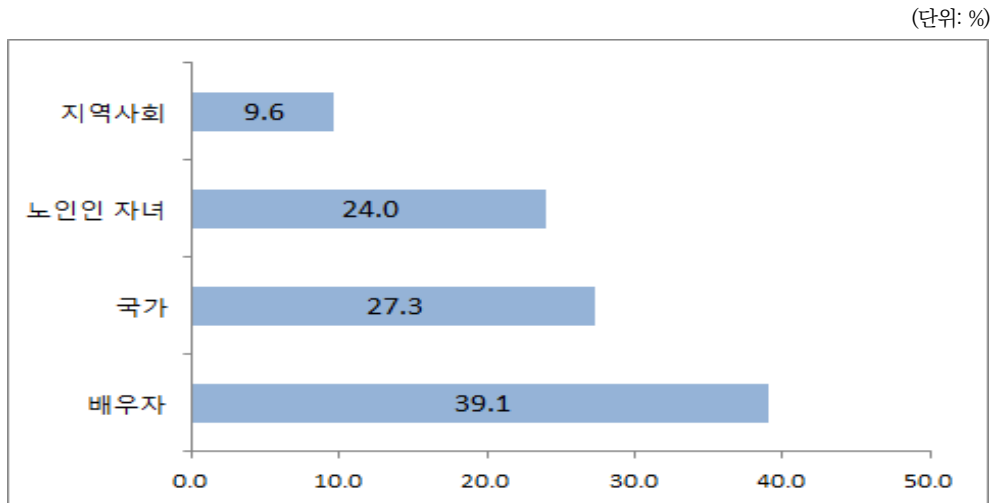
〈표 5-3〉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1,000	100.0
성별		
남자	448	44.8
여자	552	55.2
연령		
60대	533	53.3
70대	312	31.2
80대 이상	155	15.5
거주지역		
서울	187	18.7
인천/경기	257	25.7
대전/충청/세종	109	10.9
광주/전라	116	11.6
대구/경북	115	11.5
부산/울산/경남	166	16.6
강원/제주	50	5.0
거주지역 분류		
동 지역	792	79.2
읍면리 지역	208	20.8
혼인상태		
기혼	756	75.6
사별	187	18.7
미혼/이혼/기타	57	5.7
동거상태		
혼자	223	22.3
배우자와만	552	55.2
자녀와만	69	6.9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12.7
기타	29	2.9
소득계층		
하층	485	48.5
중층	486	48.6
상층	29	2.9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37.1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27.5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26.9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8.5
주변 노인 돌봄 여부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	73	7.3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	23	2.3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	49	4.9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85.6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830	83.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	123	12.3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	18	1.8
외부 사람 돌봄	29	2.9

2. 노노돌봄의 책임자

노노돌봄에 대한 내용별로 일반 노인 대상 전화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 가장 먼저, 노인 돌봄의 책임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을 돌보는데 다음 중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배우자, 국가, 노인인 자녀, 지역사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전체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고, 국가라는 답변이 27%로 두 번째였다. 한국 전통가족에서 노인 돌봄의 주된 책임자였던 자녀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는 노인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세 번째로 비중이 큰 24%였고, 지역사회가 10%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5-1] 노인 돌봄의 책임자



이러한 결과를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구분해서도 살펴보겠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노인 돌봄의 책임자가 배우자라는 응답이 42%로 여자보다 6%p 높아서 배우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는 지역사회라는 응답이 12.1%로 남자보다 약 6%p 높아서 사회적 돌봄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대에서는 배우자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국가 25%, 노인인 자녀 22%, 지역사회 11% 순이었다.

〈표 5-4〉 응답자 특성에 따른 노인 돌봄의 책임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배우자	국가	노인인자녀	지역사회	계
	(1,000)	39.1	27.3	24.0	9.6	100.0
성별						
남자	(448)	42.4	27.8	23.2	6.6	100.0
여자	(552)	36.4	26.8	24.7	12.1	100.0
연령						
60대	(533)	41.8	25.3	22.1	10.7	100.0
70대	(312)	39.4	28.5	24.0	8.0	100.0
80대 이상	(155)	29.1	31.4	30.4	9.1	100.0
거주지역						
서울	(187)	37.4	28.9	20.9	12.8	100.0
인천/경기	(257)	38.1	28.8	23.3	9.7	100.0
대전/충청/세종	(109)	42.2	28.4	22.0	7.3	100.0
광주/전라	(116)	37.4	27.4	25.9	9.3	100.0
대구/경북	(115)	41.4	28.2	21.5	8.9	100.0
부산/울산/경남	(166)	41.7	24.4	26.1	7.8	100.0
강원/제주	(50)	34.0	18.0	38.0	10.0	100.0
거주지역 분류						
동 지역	(792)	39.9	28.1	23.1	8.8	100.0
읍면리 지역	(208)	36.1	24.0	27.3	12.6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44.0	26.6	20.1	9.3	100.0
사별	(187)	22.3	27.0	39.1	11.6	100.0
미혼/이혼/기타	(57)	29.8	36.8	26.3	7.0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26.4	32.6	31.3	9.7	100.0
배우자와만	(552)	44.2	27.1	19.5	9.1	100.0
자녀와만	(69)	24.0	26.5	35.0	14.5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47.0	19.0	22.9	11.1	100.0
기타	(29)	41.0	27.3	31.7	0.0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30.8	32.3	27.8	9.0	100.0
중층	(486)	46.0	23.0	21.2	9.8	100.0
상층	(29)	62.2	13.7	6.9	17.2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42.2	25.1	22.7	10.1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37.0	30.9	23.5	8.5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39.9	26.4	23.7	10.0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30.0	27.9	32.3	9.7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41.0	21.9	28.8	8.3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39.3	35.1	17.4	8.2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52.2	17.4	21.7	8.7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38.3	24.7	28.8	8.2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38.8	27.0	24.4	9.8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830)	38.9	27.2	24.7	9.2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23)	47.2	27.0	16.4	9.4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18)	38.0	28.5	28.1	5.4	100.0
외부 사람 돌봄(3)	(29)	10.4	31.3	33.0	25.3	100.0
돌봄 수혜(1+2+3)	(170)	40.0	20.5	27.9	11.7	100.0

응답 항목별 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순위는 70대에서도 60대와 같았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우자라는 응답 비중은 줄어들고 국가와 노인인 자녀라는 응답 비중이 높아져서 80대 이상에서는 노인 돌봄의 책임자가 국가, 노인인 자녀, 배우자라는 응답이 29~31% 정도로 엇비슷했다.

거주지역 권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배우자가 노인 돌봄의 책임자라는 응답이 41~42%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반면, 강원/제주는 배우자가 노인 돌봄의 책임자라는 응답이 34%로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 부산/울산/경남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노인 돌봄의 책임이 국가라는 응답 비중은 적었고, 노인인 자녀라는 응답 비중은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강원/제주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강원/제주에서는 노인 돌봄의 책임이 국가라는 응답 비중이 18%에 불과했고, 노인인 자녀라는 응답 비중은 38%나 되었다. 거주 지역을 동과 읍면리로 구분했을 때, 동 지역에서는 배우자(40%), 국가(28%), 노인인 자녀(23%), 지역사회(9%) 순으로 비중이 컸지만, 읍면리 지역에서는 이와 달리 배우자 (36%), 노인인 자녀 (27%), 국가(24%), 지역사회(13%) 순으로 응답 비중이 컸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읍면리 지역은 동 지역과 비교했을 때 노인인 자녀나 지역사회라는 응답 비중이 4% 정도 높았고, 배우자나 국가라는 응답 비중은 약 4%씩 낮았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기혼자는 배우자가 노인 돌봄의 책임자라는 대답이 44%로 높았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없는 미혼/이혼/기타는 30%, 사별은 22%만 노인 돌봄의 가장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답변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별자는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책임이 노인인 자녀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39%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혼인상태가 미혼/이혼/기타인 경우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답한 비중이 37%로 가장 높아 사별자와도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동거상태별로 봐도, 본인이 누구와 동거하는지에 따라서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책임자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33%), 두 번째는 노인인 자녀 31%, 배우자 26% 순이었다. 반면, 배우자와만 거주하거나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라는 응답이 44~47%로 절반에 가까웠고, 국가라는 응답은 그보다 적었다. 한편, 자녀와만 거주하는 노인은 노인인 자녀를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책임

자라고 응답한 비중이 3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국가 27%, 배우자 24%로 비중이 컸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배우자, 지역사회라는 응답 비중이 증가하고, 국가, 노인인 자녀라는 응답 비중은 감소했다. 소득계층이 하층이면 국가가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책임자라는 응답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라는 응답이 그보다 조금 적은 31%, 노인인 자녀는 28%였다. 반면, 중층에서는 노인이 46%로 비중이 나머지 선택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건강상태가 돌봄을 받을 정도로 나쁜 경우가 아니면 배우자, 국가, 노인인 자녀, 지역사회 순으로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건강상태가 돌봄을 받을 정도로 바쁜 노인은 자녀 32%, 배우자 30%, 국가 28%로 선택지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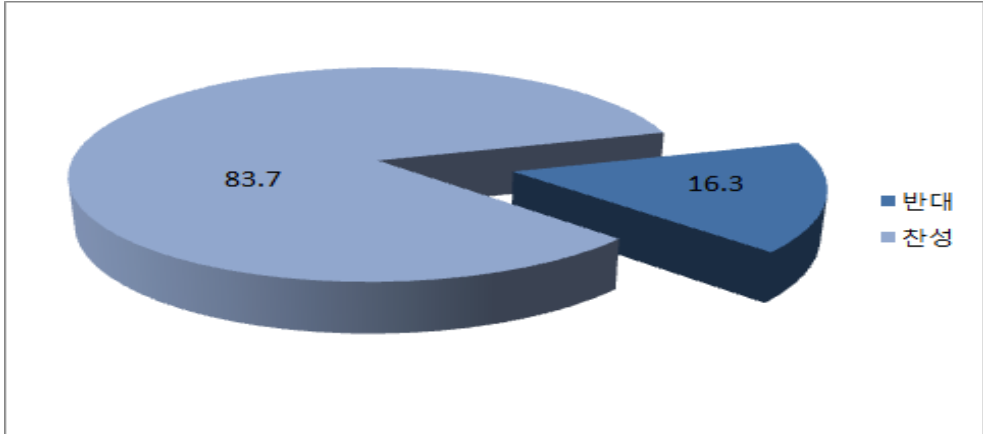
주변 노인 돌봄 여부에 따라서 보면, 돌봐주는 노인이 없는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과 비교했을 때 국가가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책임자라는 응답 비중이 5%p 높았다. 돌봄 수혜 여부에 따라서 보면, 돌봄을 받는 것이 전혀 없는 노인은 돌봄 수혜자인 노인과 비교했을 때 국가가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책임자라는 응답 비중이 6%p 높았다. 돌봄 수혜자인 노인이 돌봄을 받는 것이 전혀 없는 노인보다 배우자, 노인인 자녀, 지역사회가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나 그 차이는 적었다.

3.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

노노돌봄에 관한 두 번째 조사 내용으로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인 배우자가 상대방을 돌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응답은 ‘전적으로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으로 찬반 정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약간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을 더한 찬성이 84%로 대부분이었고, 전적으로 반대와 약간 반대를 더한 반대는 16%에 불과했다.

[그림 5-2]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

(단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찬성이 8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자도 찬성이 80%로 많았으나 남자보다는 8%p 정도 적었다. 남녀 간의 차이는 특히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에서 차이가 더 크다.

연령별로 보면, 60~70대에서는 노인인 배우자가 상대방을 돌보는 것을 84~85%가 찬성하는 것에 비해, 찬성하는 비중이 신체건강 상태가 저하되는 80대에는 80% 정도로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찬성하는 비중이 80대에서 60~70대보다 적지만,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중은 51%로 60대 43%, 70대 46%보다 오히려 많았다.

거주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찬성하는 비중이 81% 이상으로 높았고, 특히 강원/제주에서 90%로 가장 높았다. 거주 지역을 동 지역과 읍면리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는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을 혼인상태별로 나눠서 보면, 미혼/이혼/기타에서 찬성하는 비중이 8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기혼 84%, 사별 80% 순이었다.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모두 80% 이상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을 찬성하지만, 무배우자 집단 내에서 사별인지, 미혼/이혼/기타인지에 따라서 찬성 정도에 8%p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편 동거상태로 구분했을 때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은 배우자 돌봄을 찬성하는 비중이 90%에 이르렀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그 비중이 81%로 약 9%p의 격차가 있었다.

〈표 5-5〉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

구분	사례수(명)	반대	찬성	계
	(1,000)	16.3	83.7	100.0
성별				
남자	(448)	12.1	87.9	100.0
여자	(552)	19.6	80.4	100.0
연령				
60대	(533)	15.9	84.1	100.0
70대	(312)	14.7	85.3	100.0
80대 이상	(155)	20.5	79.5	100.0
거주 지역				
서울	(187)	15.5	84.5	100.0
인천/경기	(257)	17.1	82.9	100.0
대전/충청/세종	(109)	17.4	82.6	100.0
광주/전라	(116)	19.3	80.7	100.0
대구/경북	(115)	18.2	81.8	100.0
부산/울산/경남	(166)	13.6	86.4	100.0
강원/제주	(50)	10.0	90.0	100.0
거주 지역 분류				
동 지역	(792)	16.6	83.4	100.0
읍면리 지역	(208)	15.1	84.9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15.7	84.3	100.0
사별	(187)	19.8	80.2	100.0
미혼/이혼/기타	(57)	12.3	87.7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19.2	80.8	100.0
배우자와만	(552)	16.4	83.6	100.0
자녀와만	(69)	17.8	82.2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10.3	89.7	100.0
기타	(29)	14.6	85.4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17.7	82.3	100.0
중층	(486)	15.2	84.8	100.0
상층	(29)	10.3	89.7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15.4	84.6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17.6	82.4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15.0	85.0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20.1	79.9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16.6	83.4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20.6	79.4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17.4	82.6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10.3	89.7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16.2	83.8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830)	16.1	83.9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23)	18.5	81.5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18)	14.0	86.0	100.0
외부 사람 돌봄(3)	(29)	12.2	87.8	100.0
돌봄 수혜(1+2+3)	(160)	16.9	83.1	100.0

소득계층별로는 중층과 하층의 찬성 정도 차이가 2%p 정도로 작았다. 주관적 소득 계층이 상층이면 찬성 비율이 90%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상층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수가 29명으로 적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건강상태가 돌봄을 받을 정도로 나쁠 때 배우자 돌봄에 대한 찬성 비중이 80%로, 돌봄이 가능할 정도로 좋을 경우 85%, 건강이 나쁘지만 돌봄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경우 85%,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82%보다 오히려 조금 낮았다. 돌봄 제공자 여부, 돌봄 수혜자 여부에 따라서는 노인인 배우자가 상대방을 돌보는 것에 대한 찬반 비중에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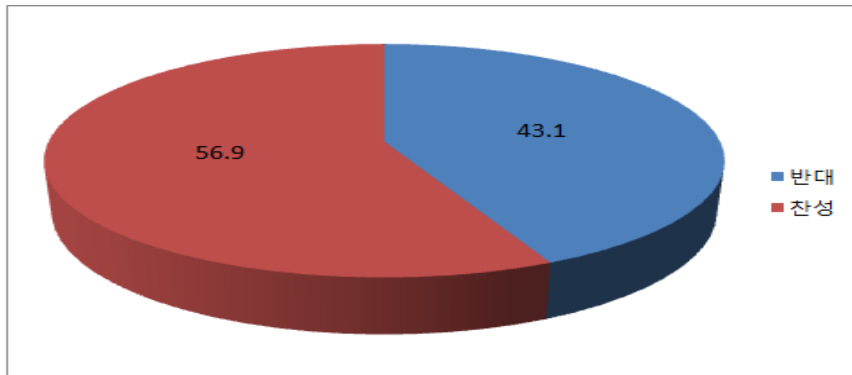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을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하긴 했지만, 찬성하는 비중이 80%대로 대부분이었고,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차이는 10%p 미만으로 크지 않았다.

4.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생각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인 자녀나 며느리가 부모를 모시며 돌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고, 응답은 ‘전적으로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림 5-3]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생각

(단위: %)



전체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결과를 보면, 찬성 57%, 반대 43%로 앞서 살펴본 배우자 돌봄에 비해 찬성하는 비중이 적었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세분화해서도 알아보겠다. 성별부터 보면 찬성 비중이 남자 64%, 여자 52%로, 남자가 여자보다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찬성하는 경우가 12%p나 더 높았다. 찬반의 적극성을 봐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중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9%p 높았고, 전적으로 반대하는 비중은 여자가 남자보다 9%p 높았다. 즉,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태도에서 남녀 차이가 큰데, 남자가 찬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찬반 의견은 권역별 거주 지역에서도 차이가 20%p 이상으로 컸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인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찬성 비중이 74%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이 60% 이상으로 그다음이었다. 반면, 수도권인 서울, 인천/경기에서는 52% 정도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을 동 지역, 읍면리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읍면리 지역에서는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찬성 비중이 63%로 56%인 동 지역에 비해 7%p 높았다.

혼인상태로 보면, 기혼자의 경우 찬성 비중이 55%였고, 사별, 미혼/이혼/기타는 62~67%로 높았다. 동거하는 가족원별로 나눠서 보면, 자녀와만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찬성 비중이 76%로 동거상태 다른 유형보다 훨씬 높은 찬성 정도를 보였다. 반면, 배우자와만 거주하는 노인은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만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을 찬성했다.

소득계층별로는 하층과 중층 간 차이가 거의 없다. 건강상태는 돌봄을 받을 정도로 나쁜 경우 건강상태가 좋거나 나쁘지만 돌봄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응답한 노인에 비해 약 5~9%p 찬성 비중이 높았다.

주변 노인을 돌보고 있는 경우 돌봐주는 노인이 없는 경우보다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찬성 비중이 7%p 높았다. 그러나 돌봄 수혜 여부에 따라서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찬반태도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생각은 성별로는 남자,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거주 지역별로는 농어촌, 무배우자, 자녀와만 동거하는 가구, 돌봄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찬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114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표 5-6> 노인인 자녀, 며느리의 부모 돌봄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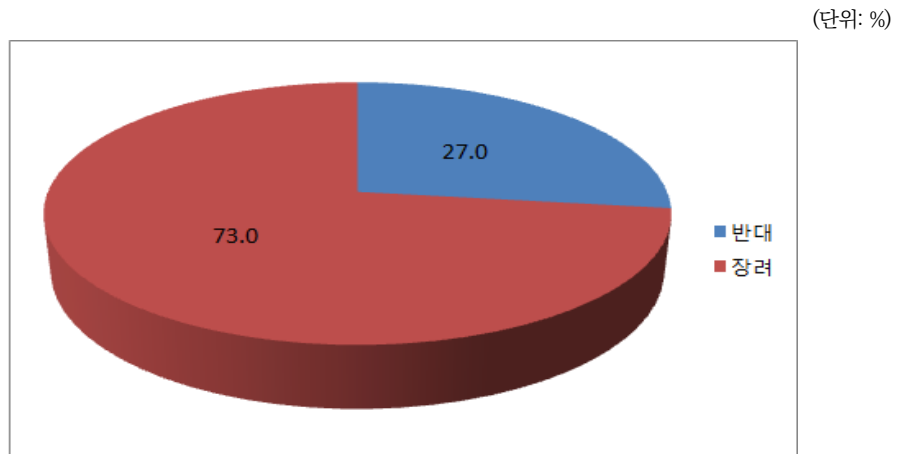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반대	찬성	계
	(1,000)	43.1	56.9	100.0
성별				
남자	(448)	36.5	63.5	100.0
여자	(552)	48.4	51.6	100.0
연령				
60대	(533)	45.0	55.0	100.0
70대	(312)	44.6	55.4	100.0
80대 이상	(155)	33.2	66.8	100.0
거주지역				
서울	(187)	47.6	52.4	100.0
인천/경기	(257)	48.2	51.8	100.0
대전/충청/세종	(109)	41.3	58.7	100.0
광주/전라	(116)	39.9	60.1	100.0
대구/경북	(115)	44.9	55.1	100.0
부산/울산/경남	(166)	37.0	63.0	100.0
강원/제주	(50)	26.0	74.0	100.0
거주지역 분류				
동 지역	(792)	44.5	55.5	100.0
읍면리 지역	(208)	37.5	62.5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44.9	55.1	100.0
사별	(187)	38.5	61.5	100.0
미혼/이혼/기타	(57)	33.3	66.7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40.7	59.3	100.0
배우자와만	(552)	47.0	53.0	100.0
자녀와만	(69)	23.6	76.4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39.5	60.5	100.0
기타	(29)	48.8	51.2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42.8	57.2	100.0
중층	(486)	43.0	57.0	100.0
상층	(29)	48.1	51.9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43.2	56.8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45.7	54.3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42.1	57.9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36.9	63.1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37.4	62.6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41.2	58.8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39.1	60.9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30.9	69.1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44.0	56.0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830)	42.8	57.2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23)	47.5	52.5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18)	37.0	63.0	100.0
외부 사람 돌봄(3)	(29)	34.0	66.0	100.0
돌봄 수혜(1+2+3)	(170)	44.1	55.9	100.0

5. 노노돌봄 장려에 대한 생각

노노돌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앞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고, ‘적극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장려’, ‘적극 장려’의 4개 범주 중 하나를 응답하도록 했다. 전체 노인의 응답 결과를 보면, ‘약간 장려’와 ‘적극 장려’를 더해서 장려해야 한다는 비중은 73%로, ‘적극 반대’와 ‘약간 반대’를 더한 반대 비중 2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림 5-4] 노노돌봄에 장려에 대한 생각



노노돌봄에 대한 생각에 대한 차이를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다. 장려해야 한다는 비중이 성별로는 남자 77%, 여자 70%로 약 7%p의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와 80대 이상에서는 노노돌봄을 장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6%로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60대 71%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노돌봄 장려에 대한 생각 거주지역 권역별 차이를 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장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82.5%로, 서울 68%, 인천/경기 70%의 수도권보다 13%p 이상 높았다. 그에 비해 동 지역과 읍면리 지역 간 장려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 차이는 4%p 정도로 크지 않았다.

〈표 5-7〉 노노돌봄 장려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1,000)	반대 27.0	장려 73.0	계 100.0
성별				
남자	(448)	23.0	77.0	100.0
여자	(552)	30.2	69.8	100.0
연령				
60대	(533)	29.1	70.9	100.0
70대	(312)	24.7	75.3	100.0
80대 이상	(155)	24.4	75.6	100.0
거주지역				
서울	(187)	31.6	68.4	100.0
인천/경기	(257)	30.4	69.6	100.0
대전/충청/세종	(109)	25.7	74.3	100.0
광주/전라	(116)	25.3	74.7	100.0
대구/경북	(115)	27.4	72.6	100.0
부산/울산/경남	(166)	17.5	82.5	100.0
강원/제주	(50)	30.0	70.0	100.0
거주지역 분류				
동 지역	(792)	27.8	72.2	100.0
읍면리 지역	(208)	23.9	76.1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27.8	72.2	100.0
사별	(187)	25.6	74.4	100.0
미혼/이혼/기타	(57)	21.1	78.9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25.8	74.2	100.0
배우자와만	(552)	26.9	73.1	100.0
자녀와만	(69)	27.9	72.1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30.0	70.0	100.0
기타	(29)	21.5	78.5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26.3	73.7	100.0
중층	(486)	26.7	73.3	100.0
상층	(29)	43.0	57.0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19.9	80.1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33.3	66.7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29.3	70.7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30.3	69.7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23.3	76.7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28.2	71.8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26.1	73.9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14.4	85.6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27.6	72.4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830)	27.3	72.7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23)	23.7	76.3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18)	33.9	66.1	100.0
외부 사람 돌봄(3)	(29)	27.8	72.2	100.0
돌봄 수혜(1+2+3)	(170)	25.4	74.6	100.0

혼인상태별로 보면, 유배우자는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72%로 사별 74%, 미혼/이혼/기타 79%보다 적었다. 동거상태로는 사례수가 29명에 불과한 기타(79%)를 제외하면, 나머지 가구구조에 따라서는 노노돌봄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 비중 차이가 약 4%p로 적었다. 소득계층별로도 사례수가 29명밖에 안 되는 상층이 장려해야 한다는 비중이 57% 낮았지만, 하층과 중층은 장려해야 한다는 비중이 73%대로 거의 같았다.

반면, 건강 상태별로는 노노돌봄을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의 차이가 13%p 이상으로 컸다. 돌봄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으면 노노돌봄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 비중이 8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건강상태가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닐 경우 71%, 돌봄을 받을 정도로 나쁠 경우 7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을 경우 67% 순의 비중이었다.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은 건강상태가 돌봄이 가능할 정도로 좋거나 돌봄을 받을 정도로 나쁠 경우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비중이 각각 42%, 36%로 중간 정도의 건강상태인 노인보다 적극적인 찬성 태도를 가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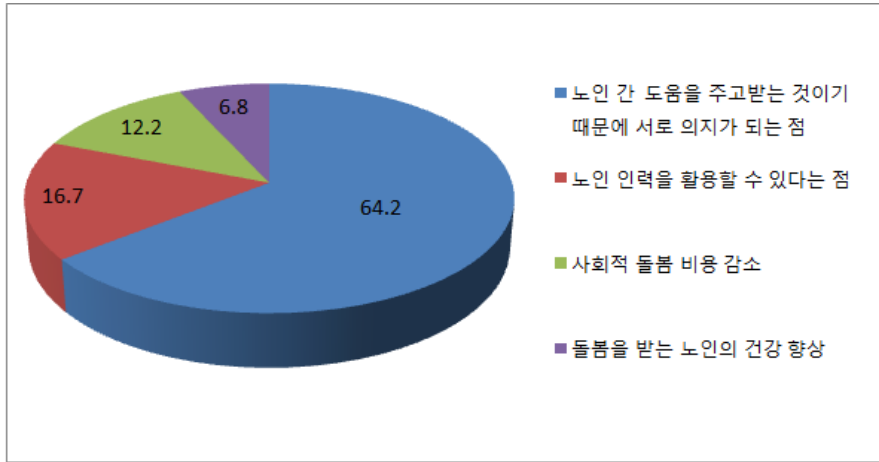
주위 노인을 돌봐주는 경우는 돌봐주는 노인이 없을 경우보다 노노돌봄을 장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비중이 5% 정도 높았다. 그러나 돌봄 수혜자 여부에 따라서는 노노돌봄을 장려해야 한다는 인식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6. 노노돌봄의 장점

노노돌봄의 장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이 노인을 돌볼 때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았고, 응답은 ‘노인 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는 점’,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사회적 돌봄 비용 감소’, ‘돌봄을 받는 노인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노노돌봄의 장점에 대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은 ‘노인 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가 되는 점’이 64%로 가장 많았고,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17%, ‘사회적 돌봄 비용 감소’ 12%, ‘돌봄을 받는 노인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는 점’ 7% 항목은 비중이 적었다.

[그림 5-5] 노노돌봄의 장점

(단위: %)



성별로 보면, ‘노인 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는 점’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여자 67%, 남자 61%로 약 6%p 차이가 있었지만, 나머지 항목별 차이는 작았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80대 이상에서 60~70대와 다른 경향성이 발견된다. 80대 이상에서는 ‘노인 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는 점’이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응답 비중이 72%로 60대, 70대보다 9~10%p보다 높았다. 이와 반대로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응답 비중은 60대, 70대에서 각각 19%, 17%로 80대 이상 10%보다 높아서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으로써 노노돌봄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거주 지역별로 세분화한 결과도 살펴보겠다. ‘노인 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는 점’이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응답은 모든 권역에서 60%대로 차이가 적었다. 반면,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22%), 인천/경기(19%) 지역에서 높았지만, 강원/제주(10%), 광주/전라(14%) 지역에서는 10% 초반으로 낮았다. 동 지역과 읍면리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노인 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는 점’을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비중이 읍면리 지역에서 동 지역보다 약 3% 높고,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비중은 읍면

리 지역에서 동 지역보다 2% 정도 낮았지만 차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노인 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는 점’을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응답한 결과를 혼인상태별로 보면, 사별(70%), 기혼(63%), 미혼/이혼/기타(56%) 순으로 비중이 컸고, 비중 차이도 14%p까지 났다. 반대로,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응답한 결과는 미혼/이혼/기타(19%), 기혼(18%), 사별(13%) 순으로 비중이 컸다. 응답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돌봄을 받는 노인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는 점’을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 결과도 미혼/이혼/기타 11%, 기혼 7%, 사별 5%로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혼인상태에 따라서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이다.

노노돌봄의 장점에 대한 동거상태별 차이도 나타났다. 혼자 사거나 자녀와만 거주하는 노인은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과 비교했을 때, ‘노인 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는 점’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혼자 사는 노인은 ‘돌봄을 받는 노인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응답 비중이 다른 가구형태도 높았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적었다. 한편,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다른 가구형태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돌봄 비용 감소’를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6%p 정도 높았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층은 하층에 비해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비중이 5%p 높았다. 반면에 중층이 하층에 비해 ‘사회적 돌봄 비용 감소’를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p 낮았다.

건강상태별로도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돌봄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은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쁘지만 돌봄을 받을 정도는 아닌 노인에 비해 ‘노인 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는 점’을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0%p 이상 높았다. 그런데 건강상태가 돌봄을 받을 정도로 나쁜 노인은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은 비중이 그보다 건강상태가 나은 노인에 비해서 11%p 이상 낮았다.

120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표 5-8〉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노인 간 서로 의지	노인 인력을 활용	사회적 돌봄 비용 감소	돌봄 수혜 노인의 건강 향상	계
	(1,000)	64.2	16.7	12.2	6.8	100.0
성별						
남자	(448)	61.3	18.5	13.4	6.8	100.0
여자	(552)	66.6	15.3	11.3	6.9	100.0
연령						
60대	(533)	63.2	18.8	12.0	6.0	100.0
70대	(312)	62.2	16.7	12.8	8.3	100.0
80대 이상	(155)	71.8	9.8	11.7	6.7	100.0
거주 지역						
서울	(187)	63.1	16.6	12.8	7.5	100.0
인천/경기	(257)	63.8	19.1	11.7	5.4	100.0
대전/충청/세종	(109)	61.5	22.0	10.1	6.4	100.0
광주/전라	(116)	67.7	13.8	11.2	7.3	100.0
대구/경북	(115)	62.1	15.9	13.1	8.9	100.0
부산/울산/경남	(166)	67.1	14.5	12.7	5.8	100.0
강원/제주	(50)	64.0	10.0	16.0	10.0	100.0
거주 지역 분류						
동 지역	(792)	63.7	17.2	12.1	7.0	100.0
읍면리 지역	(208)	66.4	14.9	12.5	6.2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63.3	17.6	12.2	6.9	100.0
사별	(187)	70.4	12.5	11.8	5.3	100.0
미혼/이혼/기타	(57)	56.1	19.3	14.0	10.5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67.1	11.8	13.2	7.9	100.0
배우자와만	(552)	63.6	17.9	11.1	7.4	100.0
자녀와만	(69)	68.8	18.8	11.0	1.4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59.3	18.2	16.6	5.9	100.0
기타	(29)	64.9	20.5	10.2	4.4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64.8	14.1	14.0	7.1	100.0
중층	(486)	64.2	19.3	9.9	6.6	100.0
상층	(29)	55.3	17.2	20.6	6.9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65.0	17.5	12.5	5.0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64.9	18.9	10.0	6.2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60.4	16.8	13.5	9.3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70.8	5.9	14.2	9.1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63.3	6.9	19.4	10.4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61.5	16.5	13.7	8.2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65.2	26.1	4.3	4.3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65.0	20.6	8.2	6.2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64.4	16.3	12.5	6.8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830)	64.8	16.6	12.1	6.6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23)	60.9	17.9	13.0	8.2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18)	71.5	17.6	0.0	10.9	100.0
외부 사람 돌봄(3)	(29)	58.3	13.9	20.8	6.9	100.0
돌봄 수혜(1+2+3)	(170)	64.2	6.8	16.7	12.2	100.0

노인 돌봄 제공자 여부에 따라서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면, 주변 노인을 돌보고 있는 노인은 노인 돌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사회적 돌봄 비용 감소’, ‘돌봄을 받는 노인의 건강 향상’이라고 답한 비중이 각각 7%p, 4%p 정도 높았다. 이와 반대로 노인 돌봄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은 주변 노인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경우보다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약 10%p 높았다. ‘노인 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는 점’이라는 응답 비중은 노인 돌봄 제공 여부자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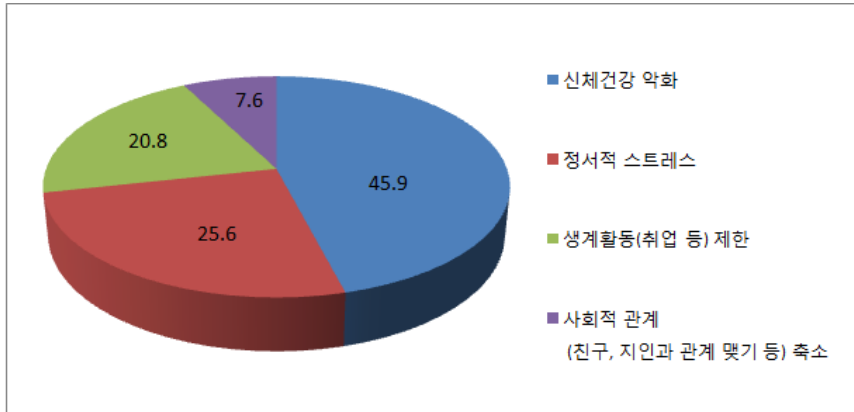
돌봄 수혜자 여부에 따라서도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다. 돌봄 수혜자인 노인은 돌봄을 받는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사회적 돌봄 비용 감소’, ‘돌봄을 받는 노인의 건강 향상’이 노노케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5%p 높았다. 이와 달리,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돌봄을 받는 것이 전혀 없는 노인이 돌봄 수혜자인 노인보다 10%p 정도 높았다.

7.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이 겪는 어려움

방금 살펴본 조사내용과 반대로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을 돌보는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응답은 ‘신체건강 악화’, ‘정서적 스트레스’,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 ‘사회적 관계(친구, 지인과 관계 맺기 등) 축소’의 4개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림 5-6] 노인 돌봄 제공 노인이 겪는 어려움

(단위: %)



전체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부터 보면, ‘신체건강 악화’가 노인 돌봄을 하는 노인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스트레스’,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을 노인 돌봄을 하는 노인이 겪는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중도 각각 21%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사회적 관계(친구, 지인과 관계 맺기 등) 축소’라는 응답은 8%로 매우 적었다.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신체건강 악화’, ‘정서적 스트레스’ 항목을 꼽은 비중이 9%p, 5%p 높았다. 반대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 ‘사회적 관계(친구, 지인과 관계 맺기 등) 축소’ 항목을 꼽은 비중이 9%p, 5%p 정도씩 높았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누면, 80대 이상에서는 60~70대에 비해 ‘신체건강 악화’를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컸고,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을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적었다. 한편, 60대는 70대에 비해 ‘사회적 관계(친구, 지인과 관계 맺기 등) 축소’를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p 높아서, 연령대별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단히 정리되지는 않지만, 권역별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노인 돌봄을 하는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인식 정도가 조금씩 달랐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신체건강 악화’와 ‘정서적 스트레스’를 노인 돌봄을 하는 노인이 겪는 가

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노인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응답한 비중이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을 응답한 비중보다 12~19%p까지 높았고, 인천/경기, 강원/제주에서는 오히려 '정서적 스트레스'를 응답한 비중이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을 응답한 비중보다 낮았다. 거주 지역을 동 지역과 읍면리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사별, 미혼/이혼/기타는 기혼자보다 '신체건강 악화'를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p 높았다. 하지만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동거상태로 보면, 혼자 살거나 자녀와만 사는 노인은 '신체건강 악화'를 응답한 비중이 배우자와만 거주하거나,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기타인 노인보다 5~9%p 높았다. 그러나 동거상태별 차이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소득계층으로 구분했을 때,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층이라고 답변한 노인은 하층보다 '신체건강 악화'를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중이 5%p 높았고,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을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중은 6%p 낮았다. '정서적 스트레스'나 '사회적 관계(친구, 지인과 관계 맺기 등) 축소' 항목에서의 차이는 미미했다.

건강상태가 돌봄을 받을 정도로 나쁜 노인은 역시 '신체건강 악화'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우려한 비중이 건강상태가 그보다 나은 노인에 비해 11~17%p 이상 높았다. 건강상태가 돌봄이 가능할 정도로 좋거나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은 노인은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과 '사회적 관계(친구, 지인과 관계 맺기 등) 축소'를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보다 높았다.

노인 돌봄 제공자 여부에 따라서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다른지를 살펴보겠다. 노인 돌봄 제공자인 노인은 돌봐주는 노인이 없는 경우에 비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p 높았다. 반면, 돌봐주는 노인이 없는 경우 노인 돌봄 제공자인 노인과 비교했을 때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 '사회적 관계(친구, 지인과 관계 맺기 등) 축소'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4%p 높았으나 그 차이는 적었다.

124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표 5-9〉 노노돌봄 제공 노인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신체건강 악화	정서적 스트레스	생계활동 제한	사회적 관계 축소	계
	(1,000)	45.9	25.6	20.8	7.6	100.0
성별						
남자	(448)	41.1	22.6	26.1	10.3	100.0
여자	(552)	49.8	28.1	16.6	5.5	100.0
연령						
60대	(533)	43.5	25.7	21.8	9.0	100.0
70대	(312)	47.4	25.0	22.4	5.1	100.0
80대 이상	(155)	50.9	26.7	14.4	8.0	100.0
거주 지역						
서울	(187)	47.6	22.5	21.9	8.0	100.0
인천/경기	(257)	40.5	24.9	26.1	8.6	100.0
대전/충청/세종	(109)	50.5	29.4	17.4	2.8	100.0
광주/전라	(116)	44.5	31.3	14.2	9.9	100.0
대구/경북	(115)	43.0	33.9	14.6	8.6	100.0
부산/울산/경남	(166)	52.3	21.1	20.5	6.0	100.0
강원/제주	(50)	46.0	16.0	28.0	10.0	100.0
거주 지역 분류						
동 지역	(792)	46.1	25.6	21.0	7.3	100.0
읍면리 지역	(208)	45.1	25.7	20.3	8.9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44.4	26.1	21.5	8.1	100.0
사별	(187)	50.6	25.4	17.1	6.9	100.0
미혼/이혼/기타	(57)	50.9	21.1	24.6	3.5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50.0	24.3	19.2	6.4	100.0
배우자와만	(552)	44.5	24.9	22.5	8.1	100.0
자녀와만	(69)	51.3	25.5	15.9	7.2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42.7	26.1	21.3	9.9	100.0
기타	(29)	42.0	47.8	10.2	0.0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43.2	25.0	24.4	7.4	100.0
중층	(486)	48.1	25.9	17.9	8.1	100.0
상층	(29)	53.3	33.0	10.3	3.4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41.7	25.9	22.1	10.4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45.6	24.9	23.1	6.4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47.8	28.4	18.7	5.1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59.1	18.2	14.8	8.0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47.0	30.5	18.0	4.6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41.5	31.6	23.3	3.5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52.2	26.1	17.4	4.3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52.7	30.9	10.3	6.2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45.7	24.8	21.3	8.2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830)	46.1	26.2	20.2	7.5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23)	41.5	24.1	26.2	8.2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18)	48.0	21.7	19.4	10.9	100.0
외부 사람 돌봄(3)	(29)	58.3	17.4	17.4	6.9	100.0
돌봄 수혜(1+2+3)	(170)	45.1	22.7	24.0	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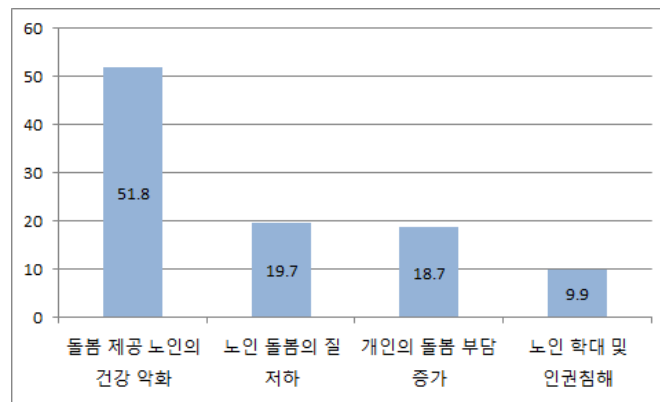
돌봄 수혜 여부로도 구분했을 때, 돌봄 수혜자는 돌봄을 받는 게 전혀 없는 노인에 비해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을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p 높았다. 반대로 돌봄 수혜자는 돌봄을 받는 게 전혀 없는 노인보다 '정서적 스트레스'를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3%p 낮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돌봄 수혜여부별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8. 노노돌봄 중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점

앞서 살펴본 내용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노돌봄 우려라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노돌봄 우려도 추가로 조사했다. 질문은 '노인이 노인을 돌볼 때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고, 응답은 '돌봄 제공 노인의 건강 악화', '노인 돌봄의 질 저하', '개인의 돌봄 부담 증가', '노인 학대 및 인권침해'의 네 개 선택지로 구성했다.

[그림 5-7] 노노돌봄 중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점

(단위: %)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 결과는 '돌봄 제공 노인의 건강 악화'가 절반을 조금 넘었고, '노인 돌봄의 질 저하'와 '개인의 돌봄 부담 증가'는 각각 20% 정도로 비등했으며, '노인 학대 및 인권침해'도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60대는 ‘돌봄 제공 노인의 건강 악화’, ‘개인의 돌봄 부담 증가’, ‘노인 돌봄의 질 저하’, ‘노인 학대 및 인권침해’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반면, 70대와 80대 이상에서는 ‘노인 돌봄의 질 저하’를 꼽은 비중이 ‘개인의 돌봄 부담 증가’보다 높았고, 이 차이는 80대 이상에서 더 컸다. 70대는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 ‘노인 학대 및 인권침해’가 노인이 노인을 돌볼 때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는 응답 비중이 4~5%p 높았다.

권역별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응답 패턴이 달랐다.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세종은 ‘돌봄 제공 노인의 건강 악화’를 노노돌봄 중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1%에 이르렀지만, 강원/제주, 광주/전라, 서울, 인천/경기는 ‘돌봄 제공 노인의 건강 악화’ 응답 비중이 50% 이하였다. 광주/전라, 강원/제주는 ‘노인 돌봄의 질 저하’라고 응답한 비중이 ‘개인의 돌봄 부담 증가’라고 응답한 비중보다 높았지만, 서울,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노인 돌봄의 질 저하’라고 응답한 비중이 ‘개인의 돌봄 부담 증가’라고 응답한 비중보다 반대로 낮았다. ‘노인 학대 및 인권침해’를 노노돌봄 중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강원/제주에서는 20%를 차지했지만, 광주/전라에서는 7%로 낮아서 비중 차이가 제법 컸다. 거주 지역을 동 지역과 읍면동 지역으로 나누면, 동 지역에서는 읍면리 지역보다 ‘개인의 돌봄 부담 증가’를 선택한 비중이 ‘노인 돌봄의 질 저하’를 선택한 비중보다 5% 정도 높은 부분이 눈에 띈다.

혼인상태로 보면, 미혼/이혼/기타인 경우 기혼이나 사별에 비해 ‘노인 학대 및 인권침해’라고 답한 비중이 6%p 정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동거상태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이 ‘노인 돌봄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비중이 나머지 가구형태보다 높았고, 자녀와만 사는 노인은 ‘개인의 돌봄 부담 증가’가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답한 비중이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았다. 소득계층별로는 중층이 하층에 비해 ‘돌봄 제공 노인의 건강 악화’를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응답한 비중이 컸고, ‘노인 돌봄의 질 저하’, ‘노인 학대 및 인권침해’ 항목 응답 비중은 작았다. 건강상태별로 나눴을 때, 돌봄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은 ‘개인의 돌봄 부담 증가’를 ‘노인 돌봄의 질 저하’보다 우려하는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 돌봄의 질 저하’를 ‘개인의 돌봄 부담 증가’보다 우려하는 비중이 반대로 높아졌다.

〈표 5-10〉 노노돌봄 중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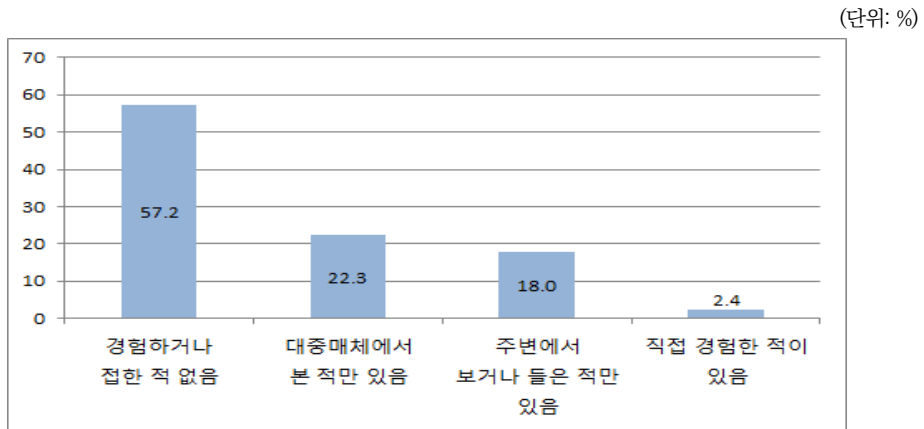
전체	사례수 (명)	돌봄제공노인 건강 악화	돌봄의 질 저하	개인의 돌봄 부담 증가	노인 학대 및 인권침해	계
	(1,000)	51.8	19.7	18.7	9.9	100.0
성별						
남자	(448)	48.0	20.1	20.0	12.0	100.0
여자	(552)	54.9	19.4	17.6	8.2	100.0
연령						
60대	(533)	53.1	18.6	20.1	8.3	100.0
70대	(312)	50.6	19.6	16.7	13.1	100.0
80대 이상	(155)	49.7	23.8	17.7	8.8	100.0
거주 지역						
서울	(187)	49.7	19.3	23.0	8.0	100.0
인천/경기	(257)	47.9	20.6	18.7	12.8	100.0
대전/충청/세종	(109)	60.6	15.6	13.8	10.1	100.0
광주/전라	(116)	45.3	28.2	20.1	6.5	100.0
대구/경북	(115)	53.6	20.6	18.8	7.1	100.0
부산/울산/경남	(166)	61.4	14.2	16.0	8.4	100.0
강원/제주	(50)	40.0	22.0	18.0	20.0	100.0
거주 지역 분류						
동 지역	(792)	51.6	18.7	19.7	10.0	100.0
읍면리 지역	(208)	52.6	23.4	14.8	9.2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52.8	18.6	19.0	9.5	100.0
사별	(187)	49.0	23.1	18.5	9.4	100.0
미혼/이혼/기타	(57)	47.4	22.8	14.0	15.8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48.8	24.3	15.0	11.9	100.0
배우자와만	(552)	52.3	18.9	19.7	9.1	100.0
자녀와만	(69)	52.4	13.4	25.5	8.7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52.2	17.4	18.6	11.9	100.0
기타	(29)	61.5	24.9	10.2	3.4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49.2	22.2	17.1	11.5	100.0
중층	(486)	54.9	16.1	20.3	8.6	100.0
상층	(29)	43.0	37.8	15.8	3.4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49.9	17.3	22.8	10.0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52.3	22.4	16.2	9.1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55.9	18.8	15.1	10.3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45.5	24.1	19.8	10.6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55.1	19.3	16.9	8.7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45.3	23.2	22.4	9.0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56.5	17.4	17.4	8.7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69.1	14.4	8.2	8.2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51.2	19.7	19.0	10.1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830)	51.7	19.8	18.9	9.6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23)	54.4	13.5	19.4	12.7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18)	46.7	39.4	10.9	3.1	100.0
외부 사람 돌봄(3)	(29)	58.3	17.4	17.4	6.9	100.0
돌봄 수혜(1+2+3)	(170)	51.8	19.7	18.7	9.9	100.0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노돌봄 우려를 노인 돌봄 제공자 여부에 따라서 구분해보면, 돌봄 제공자인 노인이 돌봐주는 노인이 없는 경우보다 ‘돌봄 제공 노인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응답 비중이 4%p 높지만, 전체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는 매우 작았다. 이와 더불어 돌봄 수혜자 여부에 따른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9. 노노돌봄 중 학대 경험 유무

노노돌봄에서의 학대 경험을 조사한 결과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면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을 했고, ‘경험하거나 접한 적 없음’, ‘대중매체에서 본 적만 있음’,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음’,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음’의 4개 항목 중 하나를 응답하도록 선택지를 구성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노노돌봄에서의 학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노인이 2.4%가 있었고,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노인도 18% 있었다.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접한 노인의 비중이 총 20%나 되는 것이다. 대중매체에서 본 적만 있는 노인은 22%였고, 경험하거나 접한 적이 없는 노인은 57%였다.

[그림 5-8] 노노돌봄 중 학대 경험 유무



노노돌봄 중 학대 경험 조사 결과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자는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다는 응답이 여자보다 5%p 높았다. 여자는 '경험하거나 적한 적이 없음'과 '대중매체에서 본 적만 있음'이라는 응답 비중이 남자보다 2%p 정도 높았지만 그 차이는 적었다.

노노돌봄 중 학대 경험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80대 이상에서 4%로 60~70대 보다 2%p 더 높았다. 그에 비해 대중매체에서 보거나 주변에서 접한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권역별 거주 지역을 보면, 노노돌봄 중 학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강원/제주에서 8.0%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 강원/제주에서 각각 28%, 26%로 다른 권역에 비해 10%p 이상 높았다. 경험하거나 접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권역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이었다. 동 지역과 읍면리 지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기혼, 사별, 미혼/이혼/기타 간에 차이가 매우 적었지만,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중은 미혼/이혼/기타에서 기혼이나 사별보다 6%p 이상 높았다. 기혼 노인은 대중매체에서 본 적만 있다는 응답 비중이 나머지 혼인상태의 노인보다 높았고, 사별 노인은 경험하거나 접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나머지 혼인상태의 노인보다 높았다. 동거상태로 구분했을 때는 혼자 사는 노인 노노돌봄 중 학대를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21%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20%로 두 번째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상태를 네 범주로 구분했을 때, 돌봄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은 노노돌봄 중 학대를 직접 경험한 비중이 약 5%로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에 비해 3%p 정도 높았다. 노노돌봄 중 학대를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한 노인 비중은 돌봄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거나 돌봄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20~21%로 높고, 건강상태가 그 중간 정도 수준일 때는 16% 정도로 낮았다.

130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표 5-11〉 노노돌봄 중 학대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경험/접한 적 없음	대중매체에서 본 적만 있음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적 있음	직접 경험있음	계
	(1,000)	57.2	22.3	18.0	2.4	100.0
성별						
남자	(448)	56.0	20.9	20.8	2.2	100.0
여자	(552)	58.2	23.4	15.8	2.6	100.0
연령						
60대	(533)	54.6	24.4	18.9	2.1	100.0
70대	(312)	59.9	19.9	17.9	2.2	100.0
80대 이상	(155)	61.0	19.8	15.1	4.1	100.0
거주 지역						
서울	(187)	57.8	25.7	14.4	2.1	100.0
인천/경기	(257)	54.1	24.1	18.3	3.5	100.0
대전/충청/세종	(109)	48.6	21.1	28.4	1.8	100.0
광주/전라	(116)	59.8	22.7	15.8	1.7	100.0
대구/경북	(115)	67.6	18.1	13.2	1.1	100.0
부산/울산/경남	(166)	65.3	16.0	17.5	1.2	100.0
강원/제주	(50)	34.0	32.0	26.0	8.0	100.0
거주 지역 분류						
동 지역	(792)	57.2	22.3	17.9	2.6	100.0
읍면리 지역	(208)	57.5	22.2	18.4	1.9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56.6	23.7	17.5	2.3	100.0
사별	(187)	62.5	16.4	18.4	2.7	100.0
미혼/이혼/기타	(57)	49.1	22.8	24.6	3.5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57.8	17.2	21.2	3.7	100.0
배우자와만	(552)	58.0	22.9	16.7	2.4	100.0
자녀와만	(69)	57.8	26.3	14.5	1.4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51.4	28.1	19.8	0.8	100.0
기타	(29)	62.4	13.7	20.5	3.4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59.2	21.0	17.1	2.7	100.0
중층	(486)	55.5	24.5	18.2	1.9	100.0
상층	(29)	55.3	6.9	30.9	6.9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54.5	22.5	20.7	2.2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61.3	21.2	15.6	1.8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장다는 아님	(269)	56.9	24.1	16.4	2.6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57.2	18.7	19.5	4.7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49.5	29.7	16.6	4.2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47.9	34.2	13.7	4.1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34.8	39.1	21.7	4.3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58.8	18.5	18.5	4.1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58.6	21.0	18.3	2.1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123)	47.8	24.8	25.7	1.6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8)	58.9	21.7	19.4	0.0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29)	54.8	20.8	17.4	6.9	100.0
외부 사람 돌봄(3)	(170)	50.2	23.8	23.6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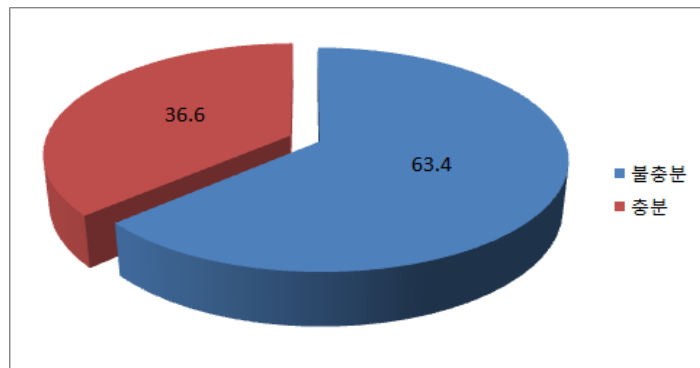
노인 돌봄 제공자 여부로 나눠서 보면, 노노돌봄 제공자는 비제공자에 비해 노노돌봄 중 학대를 ‘대중매체에서 본 적만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0%p 높고, ‘경험하거나 접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9%p 낮았다. 하지만 돌봄 수혜자 여부로 봤을 때는 이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돌봄 수혜자인 노인은 돌봄을 받는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노노돌봄 중 학대를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음’이라고 답한 비중이 약 7%p 높았다. 그러나 돌봄 수혜자인 노인은 돌봄을 받는 것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 노노돌봄 중 학대를 ‘경험하거나 접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9%p 낮았다.

10.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

노노돌봄에서 노인인권이 보호되는 정도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이 건강이 안 좋은 노인을 돌볼 때 노인 인권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불충분’, ‘조금 불충분’, ‘조금 충분’, ‘매우 충분’의 네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했다. 이에 관해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 결과는 불충분(매우 불충분과 조금 불충분 합계)하다는 의견이 63%로 충분(매우 충분과 조금 충분 합계)하다는 의견 37%보다 훨씬 많았다. 충분하다는 응답도 매우 충분과 조금 충분으로 나눌 경우 매우 충분은 6%로 조금 충분 30%에 훨씬 못 미친다.

[그림 5-9]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

(단위: %)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에 관한 조사결과를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세분화해서도 살펴보겠다. 여자가 남자보다 노인인권 보호 정도가 충분하다는 응답 비중이 3%p 높았으나 차이는 적었다.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에 대해 연령별로는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노인인권 보호 정도가 충분하다는 인식 비중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감소했다. 80대 이상에서는 충분하다는 인식 47%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60대에서는 33%에 불과했다. 이는 앞으로의 노인 세대에서 노인 인권 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결과이다.

거주 지역별 조사 결과도 살펴보겠다.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40% 중반 이상으로 높은 권역은 대구/경북(49%), 광주/전라(46%), 강원/제주(44%)였다. 그에 비해서 서울(33%), 인천/경기(29%), 대전/충청/세종(35%)은 30% 중반 이하로 충분하다는 응답 비중이 낮았다. 한편,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읍면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서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12%p나 낮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자와 미혼/이혼/기타 간에 충분하다는 인식 비중이 31%p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상태별로 보면, 배우자나 자녀와 거주하는 노인은 충분하다는 의견 비중이 35% 정도로 거의 비슷했고, 혼자 사는 노인은 충분하다는 의견 비중이 43%로 더 높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으로 봤을 때는 하층이 중층보다 노노돌봄에서의 노인인권 보호 정도가 충분하다는 인식이 약 3%p 높았지만, 그 차이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건강상태를 4개 범주로 나눠서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 결과를 살펴보았다. 건강상태가 돌봄을 받을 정도로 나쁜 노인은 건강상태가 그보다 나은 노인에 비해서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오히려 5~6%p 높았다.

노노돌봄 제공자 여부로 구분하면, 노노돌봄 제공자는 비제공자에 비해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가 충분하다는 응답 비중이 7%p 높았다. 그러나 돌봄 수혜자 여부로 나눴을 때, 돌봄 수혜자인 노인은 돌봄을 받는 것이 전혀 없는 노인과 비교했을 때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가 충분하다는 응답이 4%p 낮았다. 이는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간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12〉 노노돌봄 중 노인인권 보호 정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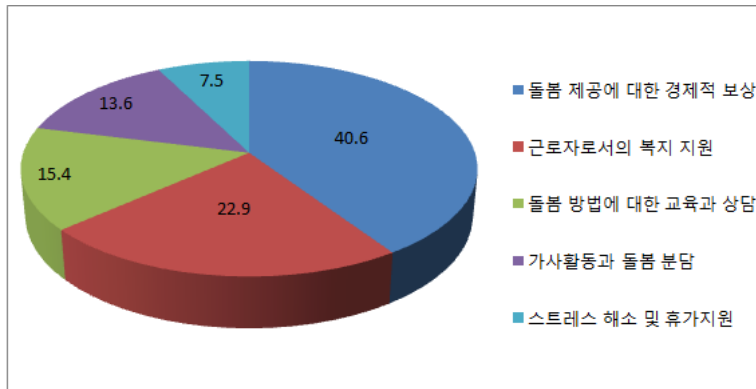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1,000)	불충분	충분	계
		63.4	36.6	100.0
성별				
남자	(448)	65.1	34.9	100.0
여자	(552)	62.0	38.0	100.0
연령				
60대	(533)	67.4	32.6	100.0
70대	(312)	61.9	38.1	100.0
80대 이상	(155)	52.7	47.3	100.0
거주 지역				
서울	(187)	67.4	32.6	100.0
인천/경기	(257)	70.8	29.2	100.0
대전/충청/세종	(109)	65.1	34.9	100.0
광주/전라	(116)	54.3	45.7	100.0
대구/경북	(115)	51.4	48.6	100.0
부산/울산/경남	(166)	63.0	37.0	100.0
강원/제주	(50)	56.0	44.0	100.0
거주 지역 분류				
동 지역	(792)	65.9	34.1	100.0
읍면리 지역	(208)	53.6	46.4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64.9	35.1	100.0
사별	(187)	51.4	48.6	100.0
미혼/이혼/기타	(57)	82.5	17.5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57.2	42.8	100.0
배우자와만	(552)	64.7	35.3	100.0
자녀와만	(69)	65.0	35.0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64.8	35.2	100.0
기타	(29)	76.1	23.9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61.6	38.4	100.0
중층	(486)	65.1	34.9	100.0
상층	(29)	63.6	36.4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62.9	37.1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64.6	35.4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64.4	35.6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58.0	42.0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57.4	42.6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58.0	42.0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69.6	30.4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50.6	49.4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64.4	35.6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123)	68.2	31.8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8)	62.8	37.2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29)	59.1	40.9	100.0
외부 사람 돌봄(3)	(170)	66.1	33.9	100.0

11. 다른 노인을 돌볼 때 필요한 사회적 지원

다른 노인을 돌보는 경우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다른 노인을 돌보게 된다면,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서 응답은 ‘돌봄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근로자로서의 복지지원’, ‘돌봄 방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사활동과 돌봄 분담’, ‘스트레스 해소 및 휴가지원’의 다섯 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전체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비중이 높은 도움은 ‘돌봄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41%)’이었고, 그다음으로 ‘근로자로서의 복지지원(23%)’, ‘돌봄 방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15%)’, ‘가사활동과 돌봄 분담(14%)’, ‘스트레스 해소 및 휴가지원(8%)’ 순이었다.

[그림 5-10] 다른 노인을 돌볼 때 필요한 도움

(단위: %)



다른 노인을 돌볼 때 필요한 도움에 관한 응답 비중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돌봄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3%p 높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사활동과 돌봄 분담’이 약 3%p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했다.

성별과 달리 연령대별로는 다른 노인을 돌볼 때 필요로 하는 도움 비중에 차이가 나타났다. ‘돌봄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80대(45%), 60대(41%), 70대(38%) 순으로 높았다. ‘근로자로서의 복지지원’은 60대와 70대가 24~25%로 비슷했고, 80대 이상은 그보다 10%p 낮았다. ‘돌봄 방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사활동과 돌봄 분담’은 60대와 70대가 15~16%로 비슷했고, 80대 이상은 그보다 10%p 낮았다.

동과 돌봄 분담' 선택지 응답 비중은 연령대별 차이가 적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휴가지원'은 연령대별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거주 지역별 응답 비중을 비교하면,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노인은 '돌봄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필요로 하는 비중이 광주/전라에 비해 10%p 정도 높았다. '근로자로서의 복지지원'은 강원/제주에 거주하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은 가장 낮았다. '돌봄 방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은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 거주하는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중이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7%p 정도 높았다. '가사활동과 돌봄 분담'은 대구/경북, 광주/전라에 거주하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강원/제주는 도움 요구가 적었다. '스트레스 해소 및 휴가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이 13%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은 약 4%로 가장 낮았다. 거주 지역을 동 지역과 읍면리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돌봄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응답 비중이 읍면리 지역에서 약 4%p 높았지만, 나머지 선택지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이혼/기타는 기혼이나 사별보다 '근로자로서의 복지지원' 도움 필요를 11%p 높게 응답했다. 반대로, '가사활동과 돌봄 분담'에서는 기혼이 미혼/이혼/기타보다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이 10%p 높았다. 동거상태로 구분했을 때, 혼자 살거나(46%) 배우자와만 사는 노인(43%)은 '돌봄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응답 비중이 자녀와만 거주하거나(33%)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27%)하는 노인에 비해 훨씬 높았다. 자녀와만 거주하는 노인은 '근로자로서의 복지지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응답 비중이 나머지 동거상태 유형에 비해 훨씬 높은 반면, '돌봄 방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 도움 필요 응답 비중은 가장 낮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이면 중층에 비해 '돌봄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6%p 높았다. 하지만, 나머지 선택지에서는 하층과 중층 간 응답 비중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상태별 응답 비중 차이도 마찬가지로 적었다.

136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표 5-13〉 다른 노인을 돌볼 때 필요한 도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경제적 보상	근로자로서 복지 지원	돌봄방법에 대한 교육/상담	가사활동과 돌봄 분담	스트레스 해소 /휴가지원	계
	(1,000)	40.6	22.9	15.4	13.6	7.5	100.0
성별							
남자	(448)	42.2	23.2	14.5	11.5	8.6	100.0
여자	(552)	39.3	22.6	16.2	15.2	6.7	100.0
연령							
60대	(533)	40.7	24.2	15.8	13.5	5.8	100.0
70대	(312)	38.1	24.7	14.1	14.4	8.7	100.0
80대 이상	(155)	45.0	14.7	16.9	12.1	11.2	100.0
거주 지역							
서울	(187)	39.0	20.3	13.9	13.9	12.8	100.0
인천/경기	(257)	44.7	25.3	12.5	11.3	6.2	100.0
대전/충청/세종	(109)	42.2	22.0	12.8	16.5	6.4	100.0
광주/전라	(116)	33.5	24.1	16.7	17.2	8.5	100.0
대구/경북	(115)	38.4	18.1	16.8	18.4	8.3	100.0
부산/울산/경남	(166)	42.0	22.9	20.2	11.2	3.6	100.0
강원/제주	(50)	38.0	30.0	20.0	6.0	6.0	100.0
거주 지역 분류							
동 지역	(792)	39.7	22.8	15.8	13.4	8.2	100.0
읍면리 지역	(208)	43.8	23.1	13.9	14.2	5.0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40.7	22.2	15.0	14.7	7.3	100.0
사별	(187)	40.0	22.3	17.6	11.4	8.6	100.0
미혼/이혼/기타	(57)	40.4	33.3	14.0	5.3	7.0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45.5	20.2	16.8	10.9	6.6	100.0
배우자와만	(552)	42.8	21.1	14.4	14.1	7.7	100.0
자녀와만	(69)	32.7	37.0	9.1	15.3	5.8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26.5	28.5	19.8	17.4	7.9	100.0
기타	(29)	41.0	20.5	20.5	3.4	14.6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43.8	23.6	13.7	12.3	6.6	100.0
중층	(486)	38.2	22.9	16.6	14.2	8.1	100.0
상층	(29)	27.5	10.3	24.1	24.4	13.7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40.8	22.1	18.6	12.0	6.5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37.8	22.4	14.3	15.2	10.3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42.7	25.9	11.9	14.1	5.3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42.1	18.3	16.0	13.3	10.3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40.3	19.4	16.1	16.6	7.6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43.4	15.1	19.6	15.1	6.9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43.5	8.7	17.4	26.1	4.3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34.2	30.9	10.3	14.4	10.3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40.6	23.5	15.3	13.1	7.5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123)	35.3	29.4	17.4	9.8	8.2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8)	33.9	21.7	25.0	19.4	0.0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29)	42.7	17.4	24.3	10.4	5.2	100.0
외부 사람 돌봄(3)	(170)	36.4	26.5	19.4	10.9	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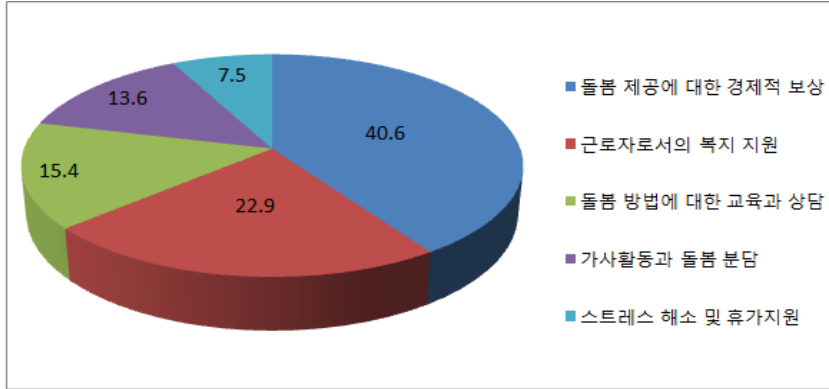
노노돌봄 제공자에게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노노돌봄 제공자는 비 제공자에 비해 ‘가사활동과 돌봄 분담’을 답한 비중이 4%p 높고, ‘근로자로서의 복지 지원’을 선택한 비중은 4%p 낮았다. 한편, 노노돌봄 제공자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돌봄 수혜자인 노인은 돌봄을 받는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근로자로서의 복지지원’, ‘돌봄 방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 항목 응답 비중이 4~5%p 높았고, 반대로 ‘돌봄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가사활동과 돌봄 분담’ 항목 응답 비중은 4~5%p씩 낮았다. 이는 양 당사자 간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2. 돌봄 받을 때 필요한 국가, 사회가 제공하는 도움

앞에서 다른 노인을 돌볼 때 필요한 도움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돌봄을 받을 때 국가, 사회가 제공해주기 바라는 도움 욕구를 살펴보려고 한다. 조사대상자에게는 ‘귀하의 건강이 나빠져서 배우자 또는 다른 노인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면, 국가와 사회의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응답은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경제적 보상’, ‘공식적 돌봄 서비스 추가제공’, ‘노인에 대한 학대발생 시 신고와 처벌 강화’,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시간·신체적 지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전체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응답 결과를 보면,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경제적 보상’이 절반을 조금 넘었고, ‘공식적 돌봄 서비스 추가 제공’이 23%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에 대한 학대발생 시 신고와 처벌 강화’는 14%의 응답을 기록했고,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시간·신체적 지원은 10%가 응답해서 비중이 가장 적었다.

[그림 5-11] 돌봄 받을 때 필요한 국가, 사회가 제공하는 도움

(단위: %)



이를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구분하여 응답 비중 차이를 비교했다. 성별부터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12% 높았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공식적 돌봄 서비스 추가 제공’, ‘노인에 대한 학대발생 시 신고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7%p, 6%p씩 높았다.

연령별로도 국가, 사회가 제공해주기 바라는 돌봄 욕구가 달랐다. 70대, 80대 이상은 60대에 비해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경제적 보상’ 응답 비중이 6%p 이상 높았다. 60대는 70대, 80대 이상에 비해 ‘공식적 돌봄 서비스 추가 제공’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각각 7%p, 10%p 높았다. ‘노인에 대한 학대발생 시 신고와 처벌 강화’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대(15%), 60대(14%), 80대 이상(11%) 순으로 높았다.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시간·신체적 지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대 이상(15%), 60대(10%), 70대(8%) 순으로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도 응답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경제적 보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는 55~57% 수준이었고, 그보다 낮은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에서는 48% 수준이었다. ‘공식적 돌봄 서비스 추가 제공’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고아주/전라,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에서 26~28% 수준으로 높았고, 인천/경기, 강원/제주, 서울에서는 19~21% 수준으로 낮았다. ‘노인에 대한 학대발생 시 신고와 처벌 강화’는 서울,

강원/제주에서 16~17%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8%로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시간·신체적 지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대전/충청/세종에서 13%로 가장 높았고, 서울에서는 6%로 가장 낮았다. 동 지역과 읍면리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항목별 응답 비중 차이는 크지 않았다.

혼인상태로 구분했을 때, 사별은 기혼, 미혼/이혼/기타보다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경제적 보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6%p 정도 높았다. 나머지 항목에서의 혼인상태별 응답 비중 차이는 3%p 미만으로 적었다. 동거상태별로 봤을 때는 자녀와만 거주하는 노인이 배우자와만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경제적 보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약 7%p 높았다. 반면,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만 거주하는 노인은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보다 ‘공식적 돌봄 서비스 추가 제공’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6%p 높았다. 반대로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은 혼자 사는 노인보다 ‘노인에 대한 학대발생 시 신고와 처벌 강화’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9%p 더 많았다.

소득계층별로 나뉘었을 경우, 하층은 중층보다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경제적 보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10%p 높았다. 하지만 나머지 항목인 ‘공식적 돌봄 서비스 추가 제공’, ‘노인에 대한 학대발생 시 신고와 처벌 강화’,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시간·신체적 지원’ 도움 필요에서는 중층이 하층보다 응답 비중이 약 1~4%p 씩 높았다.

돌봄을 받을 때 국가, 사회가 제공해주기 바라는 도움 욕구를 노노돌봄 제공자 여부로 나눠서 보면, 노노돌봄 제공자는 비제공자에 비해 ‘공식적 돌봄 서비스 추가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6%p 높았다. 반면, ‘노인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경제적 보상’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노노돌봄 비제공자가 4%p 높았다. 돌봄 수혜자 여부로 구분한 경우, 돌봄 수혜자 노인은 돌봄 받는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노인에 대한 학대발생 시 신고와 처벌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4%p 높고, ‘공식적 돌봄 서비스 추가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은 6%p 낮았다.

〈표 5-14〉 돌봄 시 국가, 사회의 제공 필요 서비스 유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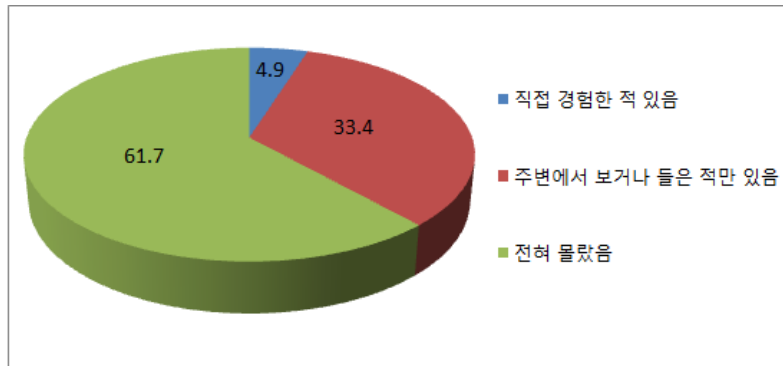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경제적 보상	공식적 돌봄 서비스 추가 제공	학대발생 시 신고/처벌 강화	시간·신체적 지원	계
	(1,000)	53.6	22.9	13.5	9.9	100.0
성별						
남자	(448)	60.4	18.9	10.3	10.4	100.0
여자	(552)	48.2	26.2	16.2	9.5	100.0
연령						
60대	(533)	50.5	26.5	13.5	9.6	100.0
70대	(312)	57.1	19.9	15.1	8.0	100.0
80대 이상	(155)	57.6	17.1	10.6	14.7	100.0
거주 지역						
서울	(187)	55.6	21.4	17.1	5.9	100.0
인천/경기	(257)	56.8	18.7	14.0	10.5	100.0
대전/충청/세종	(109)	47.7	25.7	13.8	12.8	100.0
광주/전라	(116)	47.6	28.0	14.2	10.2	100.0
대구/경북	(115)	50.7	26.4	12.1	10.8	100.0
부산/울산/경남	(166)	55.9	24.5	8.4	11.2	100.0
강원/제주	(50)	56.0	20.0	16.0	8.0	100.0
거주 지역 분류						
동 지역	(792)	54.1	22.8	13.3	9.7	100.0
읍면리 지역	(208)	51.7	23.3	14.5	10.5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52.4	23.2	14.1	10.3	100.0
사별	(187)	58.7	22.1	11.3	7.9	100.0
미혼/이혼/기타	(57)	52.6	22.8	14.0	10.5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55.8	23.8	10.2	10.2	100.0
배우자와만	(552)	51.9	24.0	13.9	10.2	100.0
자녀와만	(69)	58.6	20.3	11.6	9.6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54.5	17.8	19.0	8.7	100.0
기타	(29)	54.6	24.9	13.7	6.8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59.1	20.6	11.6	8.7	100.0
중층	(486)	49.3	24.5	15.9	10.3	100.0
상층	(29)	34.4	36.1	6.9	22.7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51.9	24.2	13.4	10.5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50.4	24.9	13.3	11.4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59.4	18.5	14.6	7.4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53.3	24.9	11.7	10.1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50.4	28.2	11.8	9.7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41.4	36.6	16.5	5.5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47.8	17.4	13.0	21.7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65.0	20.6	4.1	10.3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54.2	22.1	13.8	9.9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123)	55.4	15.6	18.9	10.2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8)	55.6	25.0	10.9	8.5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29)	54.8	24.3	13.9	6.9	100.0
외부 사람 돌봄(3)	(170)	55.3	18.1	17.2	9.5	100.0

13. 노노케어 사업 인지 여부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인 노노케어에 대해서 일반 노인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는 취약노인의 가정에 지역의 다른 노인이 방문해서 안부확인, 말벗, 생활 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노인에게는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노노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정부의 노노케어 사업을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응답은 ‘직접 경험한 적 있음’,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음’, ‘전혀 몰랐음’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 결과부터 보면, 전혀 몰랐다는 응답이 62%로 다수였다.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는 비중은 33%였고,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노인도 5%가 있었다.

[그림 5-12] 노노케어 사업 인지 여부

(단위: %)



노노케어 사업 인지 여부를 조사대상자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도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남자는 여자와 비교했을 때 ‘전혀 몰랐음’ 응답 비중이 15%p 높았고,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음’과 ‘직접 경험한 적 있음’ 응답 비중은 각각 10%p, 4%p씩 낮았다.

연령대별로 노노케어 사업 인지 여부 응답 비중을 보겠다. ‘직접 경험한 적 있음’은 60대 2%, 70대 7%, 80대 이상 8%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응답 비중도 높아졌다.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음’은 70대 36%, 60대 33%, 80대 이상 2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60대나 80대 이상은 노노케어 사업을 전혀 몰랐다는 비중이 63~64%

정도였는데, 70대는 57%로 그보다 조금 낮아서 노노케어에 주로 참여하는 연령대가 70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강원/제주는 ‘직접 경험한 적 있음’ 비중이 1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대전/충청/세종 8.3%, 대구/경북 6.3% 순이었다. 반면, 서울,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는 ‘직접 경험한 적 있음’ 비중이 5% 미만으로 낮았다.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음’ 응답도 이와 유사하게, 대전/충청/세종, 강원/제주에서 비중이 높았고,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에서는 비중이 적었다. 동 지역과 읍면리 지역으로 나뉘었을 때는 읍면리 지역에서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음’,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음’ 비중이 높았다.

혼인상태로 구분하면, 사별한 노인은 ‘직접 경험한 적 있음’ 응답이 9%로 높았고, 미혼/이혼/기타는 5%, 기혼은 4%로 그보다 낮았다.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음’ 응답은 혼인상태별로 차이가 없었다. ‘전혀 몰랐음’ 응답은 기혼(63%), 미혼/이혼/기타(61%), 사별(5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동거상태별로 봤을 때 ‘직접 경험한 적 있음’은 혼자 사는 경우 응답 비중이 8%로 가장 높았지만,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2%만 해당된다.

소득계층별 노노케어 사업 인지 정도는 차이가 별로 없었다.

건강상태가 돌봄이 가능할 정도로 좋거나 돌봄을 받을 정도로 나쁘면 노노케어 사업을 ‘직접 경험한 적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6%, 7%로, 건강상태가 중간 수준인 노인 3~4%보다 살짝 높았다.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음’ 응답 비중은 돌봄이 가능할 정도로 좋음 36%,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35%,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32%,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9% 순으로 높았다.

정부의 노노케어 사업 인지도를 노노돌봄 제공자 여부에 따라 살펴보니, 노노돌봄 제공자는 비제공자에 비해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음’이라는 응답 비중이 9%p 높았다. 또한, 가족이나 외부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받는 노인도 돌봄을 제공받는 것이 전혀 없는 노인에 비해 정부의 노노케어 사업을 ‘직접 경험한 적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5-15〉 노노케어 사업 인지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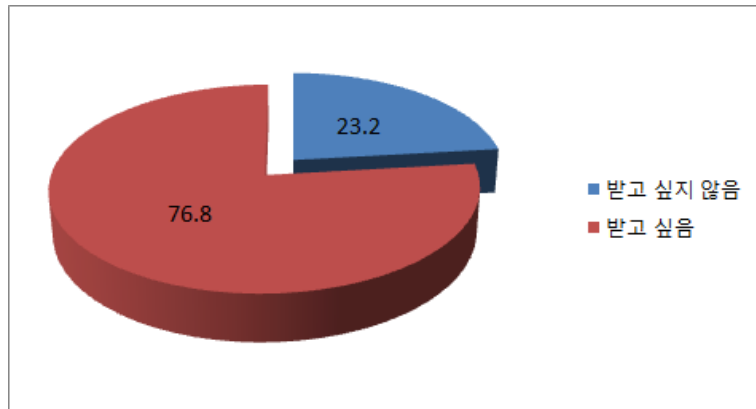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직접 경험한 적 있음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음	전혀 몰랐음	계
	(1,000)				
성별		4.9	33.4	61.7	100.0
남자	(448)	2.7	27.5	69.9	100.0
여자	(552)	6.7	38.2	55.1	100.0
연령					
60대	(533)	2.4	33.2	64.4	100.0
70대	(312)	7.4	35.9	56.7	100.0
80대 이상	(155)	8.3	29.0	62.7	100.0
거주 지역					
서울	(187)	2.7	31.6	65.8	100.0
인천/경기	(257)	4.3	28.0	67.7	100.0
대전/충청/세종	(109)	8.3	44.0	47.7	100.0
광주/전라	(116)	3.4	36.5	60.1	100.0
대구/경북	(115)	6.3	31.0	62.7	100.0
부산/울산/경남	(166)	4.0	33.7	62.3	100.0
강원/제주	(50)	12.0	42.0	46.0	100.0
거주 지역 분류					
동 지역	(792)	4.6	32.2	63.2	100.0
읍면리 지역	(208)	5.9	38.1	56.0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4.0	33.0	63.0	100.0
사별	(187)	8.5	34.9	56.6	100.0
미혼/이혼/기타	(57)	5.3	33.3	61.4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8.0	31.5	60.5	100.0
배우자와만	(552)	4.2	33.7	62.2	100.0
자녀와만	(69)	5.8	35.6	58.6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1.6	31.6	66.8	100.0
기타	(29)	6.8	45.4	47.8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4.6	32.8	62.6	100.0
중층	(486)	5.3	34.0	60.8	100.0
상층	(29)	3.4	34.4	62.2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6.1	35.6	58.3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3.3	28.9	67.8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4.1	35.2	60.7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7.4	32.2	60.4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12.9	34.4	52.7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6.9	29.8	63.4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0.0	39.1	60.9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28.0	39.1	32.9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3.5	33.2	63.2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123)	4.1	33.9	62.0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8)	5.4	24.8	69.8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29)	25.3	27.8	46.9	100.0
외부 사람 돌봄(3)	(170)	7.8	31.9	60.3	100.0

14.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귀하의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정부의 노노케어 사업을 받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을 했고, 응답은 ‘전혀 받고 싶지 않음’, ‘별로 받고 싶지 않음’, ‘조금 받고 싶음’, ‘매우 받고 싶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 결과를 먼저 보면, 77% 정도는 받고 싶다(조금 받고 싶음 + 매우 받고 싶음)는 의사가 있어, 받고 싶지 않다는 노인보다 3배 정도가 많았다.

[그림 5-13]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단위: %)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를 이어서 보면, 성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에서 받고 싶다는 응답 비중이 78~79% 수준으로 높은 것에 비해 80대 이상에서는 받고 싶다는 응답이 70%로 8~9%p 낮았다. 권역별 거주 지역은 강원/제주에서 받고 싶다는 응답 비중이 90%로 나머지 권역보다 10%p 이상 높았다. 동 지역과 읍면리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상태로 보면, 미혼/이혼/기타인 노인이 기혼, 사별인 노인에 비해 노노케어를 받고 싶다는 의사가 8%p 정도 더 높았다.

〈표 5-16〉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받고 싶지 않음	받고 싶음	계
	(1,000)	23.2	76.8	100.0
성별				
남자	(448)	24.3	75.7	100.0
여자	(552)	22.4	77.6	100.0
연령				
60대	(533)	22.1	77.9	100.0
70대	(312)	21.5	78.5	100.0
80대 이상	(155)	30.4	69.6	100.0
거주 지역				
서울	(187)	24.6	75.4	100.0
인천/경기	(257)	24.1	75.9	100.0
대전/충청/세종	(109)	21.1	78.9	100.0
광주/전라	(116)	22.6	77.4	100.0
대구/경북	(115)	24.5	75.5	100.0
부산/울산/경남	(166)	25.2	74.8	100.0
강원/제주	(50)	10.0	90.0	100.0
거주 지역 분류				
동 지역	(792)	23.5	76.5	100.0
읍면리 지역	(208)	22.3	77.7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23.7	76.3	100.0
사별	(187)	23.5	76.5	100.0
미혼/이혼/기타	(57)	15.8	84.2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22.5	77.5	100.0
배우자와만	(552)	21.9	78.1	100.0
자녀와만	(69)	26.4	73.6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29.2	70.8	100.0
기타	(29)	20.5	79.5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21.1	78.9	100.0
중층	(486)	24.9	75.1	100.0
상층	(29)	31.3	68.7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21.3	78.7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26.3	73.7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23.7	76.3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20.3	79.7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12.5	87.5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15.1	84.9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13.0	87.0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8.2	91.8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25.0	75.0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123)	23.3	76.7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8)	17.6	82.4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29)	24.3	75.7	100.0
외부 사람 돌봄(3)	(170)	22.9	77.1	100.0

동거상태로 구분했을 때는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만 사는 노인의 노노케어 수혜 의사가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보다 8%p 정도 높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이면 중층보다 노노케어를 받고 싶다는 응답한 비중이 4%p 정도 더 많았다. 건강상태가 돌봄을 받을 정도로 나쁜 노인이 노노케어를 받고 싶다는 응답 비중이 80%로 가장 높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돌봄이 가능할 정도로 좋은 노인도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노노케어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건강상태가 다른 사람을 돌볼 정도는 안 되지만 좋은 노인이 노노케어 수혜 의사가 살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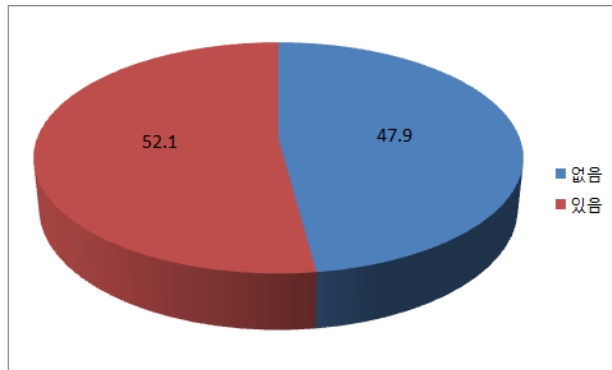
정부의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이 노노돌봄 제공자 여부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가족이든 가족이 아닌든 주변 노인을 돌보고 있는 노인이 돌봐주는 노인이 없는 경우보다도 정부의 노노케어 사업을 받고 싶다는 응답 비중이 13%p나 높았다. 하지만 막상 돌봄 수혜자 여부에 따라서는 정부의 노노케어 사업을 받고 싶다는 응답 비중에 차이가 없었다.

15.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 돌봄 의향

마지막으로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전화조사에서 ‘귀하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드린다면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그림 5-14]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 돌봄 의향

(단위: %)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있음’, ‘매우 있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2%가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응답 비중 차이도 살펴보겠다. 성별로 구분했을 때,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면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남자가 여자보다 7%p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면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중은 높았고, 그 격차는 25%p로 컸다. 권역별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도 17%p까지 차이가 났다.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에서 돌봄 의향이 높은 반면, 대전/충청/세종에서는 돌봄 의향이 낮았다. 거주 지역을 읍면리와 동으로 나눠서 봤을 때, 읍면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경제적 보상을 해주면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이 있는 비중이 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5%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이혼/기타인 경우 경제적 보상을 해줬을 때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이 7%p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수가 너무 적은 기타를 제외하면 동거상태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소득계층이 하층이면 중층보다 경제적 보상을 해줬을 때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6%p 컸다.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은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였다. 건강상태가 돌봄이 가능할 정도로 좋으면 경제적 보상을 해줬을 때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68%나 되었다. 돌봄은 안 되지만 좋거나, 나쁘지만 돌봄을 받을 정도는 아닌 노인은 경제적 보상을 해줬을 때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이 있다고 한 비중이 44~47% 정도였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돌봄을 받을 정도로 나쁜 노인은 경제적 보상을 해줘도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이 있는 경우가 23%에 불과했다.

경제적인 보상을 해줬을 때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이 있는지 응답 결과를 노노돌봄 제공자로 구분했을 때, 가족이 아닌 노인을 돌보고 있는 경우 82%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가족을 전담이나 분담으로 돌보고 있는 노인도 62%가 ‘있음’으로 응답했다. 반면, 돌봄 제공을 하지 않는 노인은 의사 ‘있음’과 ‘없음’이 거의 반반이었다. 한편, 돌봄을 받고있는 것이 전혀 없는 노인은 의사 ‘있음’이 54%였고, 가족이나 외부 사람에게 돌봄을 받고 노인도 의사 ‘있음’이 응답 비중도 41%가 되었다.

〈표 5-17〉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 돌봄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없음	있음	계
	(1,000)	47.9	52.1	100.0
성별				
남자	(448)	43.9	56.1	100.0
여자	(552)	51.2	48.8	100.0
연령				
60대	(533)	41.5	58.5	100.0
70대	(312)	50.0	50.0	100.0
80대 이상	(155)	66.1	33.9	100.0
거주 지역				
서울	(187)	47.6	52.4	100.0
인천/경기	(257)	51.8	48.2	100.0
대전/충청/세종	(109)	57.8	42.2	100.0
광주/전라	(116)	42.5	57.5	100.0
대구/경북	(115)	48.2	51.8	100.0
부산/울산/경남	(166)	40.8	59.2	100.0
강원/제주	(50)	44.0	56.0	100.0
거주 지역 분류				
동 지역	(792)	49.0	51.0	100.0
읍면리 지역	(208)	43.8	56.2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48.2	51.8	100.0
사별	(187)	48.8	51.2	100.0
미혼/이혼/기타	(57)	42.1	57.9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49.7	50.3	100.0
배우자와만	(552)	47.5	52.5	100.0
자녀와만	(69)	47.2	52.8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45.5	54.5	100.0
기타	(29)	55.6	44.4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44.1	55.9	100.0
중층	(486)	49.9	50.1	100.0
상층	(29)	79.4	20.6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31.9	68.1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55.7	44.3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53.0	47.0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76.6	23.4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145)	31.1	68.9	100.0
돌봄 제공(1+2+3)	(73)	35.6	64.4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23)	43.5	56.5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49)	18.5	81.5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856)	50.8	49.2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돌봄 수혜 여부	(830)	45.6	54.4	100.0
전혀 없음	(123)	56.9	43.1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8)	67.4	32.6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29)	65.3	34.7	100.0
외부 사람 돌봄(3)	(170)	59.4	40.6	100.0

제3절 소결

노노돌봄과 관련하여 60세 이상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관한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0세 이상 노인의 55%가 2인가구(응답자와 배우자 거주)였고, 22%는 1인 가구였다. 그런데 86%의 노인은 돌봐주는 노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돌봄을 받는 노인 중 가족이 전적으로 돌봐주는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12%로 가장 많았고, 외부 사람이 전적으로 돌봐주는 경우가 3%, 가족과 외부사람이 함께 돌봐주는 경우가 2%였다. 셋째, 60세 이상 노인들은 ‘노인 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가 되는 점’을 노노돌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고 그다음에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사회적 돌봄 비용 감소’, ‘돌봄을 받는 노인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는 점’이었다. 넷째, 노노돌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신체건강 악화’였고 이어서 ‘정서적 스트레스’, ‘생계활동 제한’이었다. 다섯째, 46%의 노인이 노노돌봄을 수행할 때 ‘돌봄 제공 노인의 건강 악화’를 염려하였다. 여섯째, 20.4%의 노인이 노노돌봄 중 학대를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노노돌봄을 수행할 때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77%의 노인이 1인가구이거나 2인가구이고, 86%의 노인이 돌봐주는 노인이 없어 위기상황 발생 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적 돌봄 서비스와 이웃 간 돌봄 등의 비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사업에서의 노노케어 확대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돌봄을 받는 노인은 주로 가족에게 의지하는 편이므로 고령화가 가속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가족형 노노돌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인배우자 혹은 노인자녀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경제적 지원 등의 대책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노돌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노노돌봄 중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20.4%나 된다는 점에서 가족형 노노돌봄이 학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노돌봄이 장기화될수록 ‘돌봄 제공 노인의 건강 악화’, ‘정서적 스트레스’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노인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지원(건강검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제 6 장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수혜자 심층대면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조사 결과

제3절 노노케어 사업 수혜자 조사 결과

제4절 소결

6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수혜자 << 심층대면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본 장에서는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돌봄 현황 및 견해, 수혜자의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견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2018년 현재 노노케어 사업의 참여자와 수혜자 각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 또는 1:1 심층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7년 노노케어 사업의 지역별, 기관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 117명, 수혜자 100명의 총 21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설문문항 구성

본 연구의 설문문항 구성의 기본원칙은 조사 기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한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문항을 배제하고 참여자와 수혜자가 응답 가능한 문항을 중심으로 전체문항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설문에 포함되는 가구특성, 경제상태 등의 사항과 노노케어 사업 참여 동기 등은 설문문항에서 가급적 제외하였다. 또한, 참여자와 수혜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노케어 사업에 대해 간단한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폐쇄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노노케어 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내 연구진 회의 및 학계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조사 내용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참여자와 수혜자 공통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외의 문항은 참여자와 수혜자 별도로 상이하게 구성하였다. 먼저, 참여자의 조사 내용은 노노케어 활동내용,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폐쇄형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외에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불합리한 경험, 중도 포기 등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험,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심

층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수혜자의 조사 내용은 노노케어 이용 경험,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에 대한 폐쇄형 문항과 노노케어 서비스 이용 시의 심층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한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6-1〉 조사내용

구분		참여자	수혜자
폐쇄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공통)	·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노노케어 활동내용(참여자) 이용경험(수혜자)	· 노노케어 사업 참여기간 · 참여유형 및 활동조원 · 교통수단 및 1회 편도 이동시간 · 월평균 노노케어 활동비 수입액 · 월평균 노노케어 활동시간 · 활동내용	· 노노케어 사업 이용기간 · 노노케어 외의 공공돌봄 서비스 이용여부 · 돌봄제공 가족의 유무 · 노노케어 이용 월평균 시간 · 노노케어 이용 방문인원 · 돌봄 서비스 필요수준과 수행수준
	노노케어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 월평균 적정 활동비 및 활동시간 · 활동비 차등 찬반의견 · 참여 및 이용 추천 의향 · 활동 만족도	· 월평균 적정 이용시간 · 이용 추천 의향 · 이용 만족도
개방형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심층 의견 (질적 연구)	· 이용 시 기분이 상했거나 불합리한 직접 또는 간접 경험, 불만 의견 · 부당처우 시 대처방안 · 중도포기 사유 · 활동비 차등지급 의견 · 활동조원 개선 의견 · 참여자-수혜자 간의 이성매칭 · 참여자 선정 감점 · 노노케어의 개선방안	· 이용 시 기분이 상했거나 불합리한 직접 또는 간접 경험, 불만 의견 · 부당대우 시 대처방안 · 가사활동 서비스 선호의견 · 학대,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직접 또는 간접 경험 · 집 밖에서의 노노케어 이용 의견 · 참여자-수혜자 간의 이성매칭 · 노노케어의 개선방안

3. 설문조사 및 조사응답자 현황

설문조사는 연구진이 직접 해당 지역의 사업 수행기관 또는 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집단면접 또는 1:1 면접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과 조사기관은 연구진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참여자와 수혜자별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전화로 연락하여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 참여 동의를 받아 일정을 잡은 후 해당 사업 수행기관 또는 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설문조사가 실시되

는 사업 수행기관에 공문을 보냈으며, 해당 수행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위한 장소 제공, 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어르신들에게 안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전 연락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었으며, 최종응답자는 217명으로 참여자 117명, 수혜자 10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참여자 응답자는 대도시 지역 56명, 중소도시 지역 36명, 농어촌 지역 25명이며, 기관유형별로는 종합사회복지관 18명, 재가노인센터/실버센터 20명, 노인복지관 42명, 시니어클럽 19명, 대한노인회 10명, 재단/법인 8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수혜자 응답자는 대도시 지역 47명, 중소도시 지역 15명, 농어촌 지역 38명이며, 기관유형별로는 종합사회복지관 22명, 재가노인센터/실버센터 15명, 노인복지관 32명, 시니어클럽 22명, 대한노인회 6명, 재단/법인 3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표 6-2〉 조사응답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참여자	수혜자	전체	
전체	117	100	217	
지역구분	대도시	56	47	103
	중소도시	36	15	51
	농어촌	25	38	63
기관유형	종합사회복지관	18	22	40
	재가노인센터/실버센터	20	15	35
	노인복지관	42	32	74
	시니어클럽	19	22	41
	대한노인회	10	6	16
	재단/법인	8	3	11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는 참여자 117명, 수혜자 100명으로 총 217명이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6-3>과 같다. 성별로는 여자(72.8%)가 남자(27.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5~79세(29.0%), 80~84세(28.1%), 70~74세(18.4%), 85세 이상(16.1%), 65~69세(8.4%) 순으로 70대 이상의 비중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의 경우 75~79세 40.2%, 70~74세 24.8%로 70대의 비중이 60% 이상인 반면, 수혜자의 경우 80~84세 31.0%, 85세 이상 31.0%로 80세 이상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해 수혜자가 참여자보다 고연령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는 사별(51.2%), 기혼(4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의 경우 기혼(59.0%)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수혜자는 사별(67.0%)이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초졸(64.1%), 중졸(16.6%), 고졸(1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는 초졸이 53.0%인 반면, 수혜자는 77.0%로 나타나 수혜자의 교육수준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이 나쁜 편(31.8%), 보통(26.7%), 건강한 편(19.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자와 수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참여자의 경우 건강한 편(44.4%), 보통(29.9%), 매우 건강(17.1%) 순으로 높게 나타나 건강한 편이라고 느끼는 대상자가 60% 이상이었다. 반면, 수혜자는 나쁜 편(32.0%), 매우 나쁜 편(24.0%), 보통(23.0%) 순으로 높게 나타나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느끼는 대상자가 50% 이상이었다.

〈표 6-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I

(단위: 명, %)

구분	전체(N=217)		참여자(N=117)		수혜자(N=10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9	27.2	35	29.9	24	24.0
여자	158	72.8	82	70.1	76	76.0
연령대						
65~69세	18	8.3	7	6.0	11	11.0
70~74세	40	18.4	29	24.8	11	11.0
75~79세	63	29.0	47	40.2	16	16.0
80~84세	61	28.1	30	25.6	31	31.0
85세 이상	35	16.1	4	3.4	31	31.0
혼인상태						
미혼	6	2.8	1	0.9	5	5.0
기혼	90	41.5	69	59.0	21	21.0
사별	111	51.2	44	37.6	67	67.0
기타	10	4.6	3	2.6	7	7.0
교육수준						
초졸(무학 포함)	139	64.1	62	53.0	77	77.0
중졸	36	16.6	26	22.2	10	10.0
고졸	34	15.7	23	19.7	11	11.0
대학 이상	8	3.7	6	5.1	2	2.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24	11.1	20	17.1	4	4.0
건강한 편이다	42	19.4	52	44.4	17	17.0
그저 그렇다	58	26.7	35	29.9	23	23.0
건강이 나쁜 편이다	69	31.8	10	8.5	32	32.0
건강이 매우 나쁘다	24	11.1	-	-	24	24.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6-4〉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78.3세이며, 참여자가 76.7세, 수혜자가 80.3세로 보다 고령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1점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분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 노인은 3.7점으로 건강한 편 이상인 반면, 수혜자는 2.5점으로 상대적으로 참여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쁜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수혜자는 참여자에 비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II

(단위: 세, 점)

구분	전체(N=217)		참여자(N=117)		수혜자(N=10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연령	78.3	6.2	76.7	4.5	80.3	7.3
주관적 건강상태 ¹⁾	3.1	1.2	3.7	0.9	2.5	1.1

주: 주관적 건강상태는 '1=건강이 매우 나쁘다'부터 '5=매우 건강하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도시 47.6%, 중소도시 24.7%, 농어촌 27.8%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거주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참여자는 수혜자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비율은 높고, 농어촌 거주비율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자와 수혜자의 조사인원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5〉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N=217)		참여자(N=117)		수혜자(N=10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도시	108	47.6	56	47.9	47	47.0
중소도시	56	24.7	36	30.8	15	15.0
농어촌	63	27.8	25	21.4	38	38.0

응답자의 기관유형별 분포를 보면, 노인종합복지관(27.8%), 시니어클럽(22.9%), 재가노인센터/실버센터(17.6%), 종합사회복지관(15.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표 6-6〉 응답자의 기관유형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N=217)		참여자(N=117)		수혜자(N=10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종합사회복지관	36	15.9	18	15.4	13	13.0
재가노인센터/실버센터	40	17.6	20	17.1	15	15.0
노인종합복지관	63	27.8	42	35.9	21	21.0
시니어클럽	52	22.9	19	16.2	33	33.0
대한노인회	25	11.0	10	8.5	15	15.0
재단/법인	11	4.8	8	6.8	3	3.0

제2절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조사 결과

1. 노노케어 참여자의 활동 현황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가. 참여자의 노노케어 활동 현황

참여자의 노노케어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여기간, 참여유형, 활동조원, 교통수단, 편도 이동시간, 제공서비스 유형 및 개수, 활동비, 실질 활동시간을 분석하였다. 참여기간은 3년 이상~5년 미만(45.1%), 1년 이상~3년 미만(23.9%), 1년 미만(1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유형은 12개월(64.1%)이 9개월(35.9%)보다 높게 나타났다.

활동 조원은 2인 1조가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참여자 10명 중 약 8명은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수단은 도보(53.8%), 자가운전(20.5%), 대중교통(1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편도 이동시간은 10분 이상~20분 미만(27.4%), 30분 이상~1시간 미만(24.8%), 20분 이상~30분 미만(22.2%) 순으로 높게 나타나 참여자의 70% 이상이 활동 시, 1시간 미만의 편도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서비스 유형으로는 말벗(88.9%), 안부확인(88.9%), 생활안전점검(54.7%)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34.2%), 외출동행(29.1%), 가사(23.9%)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행 노노케어 사업의 규정으로는 말벗,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사 및 외출동행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공서비스의 개수는 3개(28.2%), 4개(19.7%)로 나타나 참여자의 절반은 3개 이상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활동시간은 30~32시간(78.4%), 36~40시간(17.2%)으로 규정시간 30시간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규정시간보다 적은 12~15시간(3.4%)을 제공하거나, 40시간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도 0.9%로 나타났다. 활동비는 27만 원(88.9%), 29만 원(7.7%), 30만 원(2.6%), 20만 원(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노케어 사업의 규정상 월 30시간의 활동시간을 이행한 경우 27만 원의 활동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수행기관에 따라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를 제공하거나, 참여자가 반장(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활동비가 지급되어 규정 활동비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6-7〉 참여자의 활동내용 현황 I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참여기간(N=113)		
1년 미만	21	18.6
1년 이상~3년 미만	27	23.9
3년 이상~5년 미만	51	45.1
6년 이상~8년 미만	11	9.7
8년 이상	3	2.7
참여유형(N=117)		
9개월	42	35.9
12개월	75	64.1
활동조원(N=116)		
1인 1조	24	20.7
2인 1조	89	76.7
3인 1조	3	2.6
교통수단(N=117)		
도보	63	53.8
대중교통	22	18.8
자가운전	24	20.5
셔틀버스/수행기관 차량/지인차량	5	4.3
자전거/오토바이	3	2.6
편도 이동시간(N=117)		
10분 미만	18	15.4
10분 이상~20분 미만	32	27.4
20분 이상~30분 미만	26	22.2
30분 이상~1시간 미만	29	24.8
1시간 ~1시간 30분 미만	8	6.8
1시간 30분 이상	4	3.4
제공서비스 유형(N=117) ¹⁾		
말벗	104	88.9
안부확인	104	88.9
생활안전점검	64	54.7
가사	28	23.9
외출동행	34	29.1
기타 ²⁾	40	34.2
제공서비스 개수(N=117)		
1개	15	12.8
2개	22	18.8
3개	33	28.2
4개	23	19.7
5개	20	17.1
6개	4	3.4

〈표 6-7〉 참여자의 활동내용 현황 I(계속)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제공서비스 개수(N=117)		
1개	15	12.8
2개	22	18.8
3개	33	28.2
4개	23	19.7
5개	20	17.1
6개	4	3.4
실질 활동시간(N=116)		
12~15시간	4	3.4
30~32시간	91	78.4
36~40시간	20	17.2
100시간	1	0.9
활동비(N=117)		
20만 원	1	0.9
27만 원	104	88.9
29만 원	9	7.7
30만 원	3	2.6

주: 1) 각 서비스유형에 대한 제공 유무에 대한 문항으로 '유'의 비율을 집계한 수치임

2) 기타에는 반찬 및 도시락, 간식 배달, 목욕서비스, 기타 업무대행(은행업무, 폰수리 등), 운동, 산책 등을 포함

참여자의 활동현황을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6-8〉과 같다. 참여자의 사업 참여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8년으로 평균 3년 2개월로 나타났다. 평균 편도 이동 시간은 24.9분으로, 최소 3분에서 최대 180분이 소요되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활동비는 평균 27.2만 원, 실질 활동시간은 평균 31.2시간으로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 평균 개수는 3.2개로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표 6-8〉 참여자의 활동 현황 II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업 참여기간(년)	113	0.1	8.0	3.2	1.9
편도 이동시간(분)	117	3	180	24.9	24.4
활동비(만 원)	117	20	30	27.2	1.0
실질활동시간(시간)	116	12	100	31.2	7.8
제공서비스 평균 개수(개)	117	1	6	3.2	1.4

나. 노노케어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참여자의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정 활동비, 적정 활동시간, 서비스 내용에 따른 활동비 차등에 대한 찬반의견, 노노케어 참여 및 이용에 대한 추천의향, 노노케어 활동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적정 활동비는 30만 원 이상~35만 원 미만(50.4%), 27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33.0%), 35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7.0%)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도 5.2%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 전체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27만 원 이상의 활동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적정 활동시간으로는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81.9%),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7.8%), 10시간 미만(4.3%),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80% 가량의 참여자가 현행 규정시간인 30시간을 적정시간으로 수용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참여자는 30시간 미만을 적정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 청소 서비스 등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활동비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 찬반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찬성이 59.8%로 반대의 40.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노케어 참여에 대해서 추천하겠다는 견해가 90.4%, 이용에 대해서 추천하겠다는 의견도 9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만족도 문항에서는 매우 만족(66.7%), 조금 만족(28.2%)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대다수는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9〉 참여자의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견해 I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적정 활동비(N=115)		
27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	38	33.0
30만 원 이상~35만 원 미만	58	50.4
35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	8	7.0
40만 원 이상~45만 원 미만	4	3.5
45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1	0.9
50만 원 이상	6	5.2
적정 활동시간(N=117)		
10시간 미만	5	4.3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4	3.4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	7.8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95	81.9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2	1.7
50시간 이상	1	0.9
서비스 내용에 따른 활동비 차등(N=117)		
찬성	70	59.8
반대	47	40.2
노노케어 참여 추천의향(N=115)		
추천	104	90.4
비추천	11	9.6
노노케어 이용 추천의향(N=116)		
추천	106	91.4
비추천	10	8.6
노노케어 활동 만족도(N=116)		
매우만족	78	66.7
조금만족	33	28.2
조금 불만족	6	5.1
매우 불만족	-	-

참여자의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견해를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6-10〉과 같다. 참여자의 적정 활동비는 평균 31.0만 원으로 현행보다 4만 원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 활동시간은 29.2시간으로 현행의 30시간보다 0.8시간 낮게 나타났다. 또한, 노노케어 활동 만족도는 평균 3.6점으로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참여자의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견해 II

구분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적정 활동비(만 원)	115	27	50	31.0	5.5
적정 활동시간(시간)	116	3	100	29.2	9.8
노노케어 활동 만족도(점)	117	2	4	3.6	0.6

주: 노노케어 활동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4=매우 만족'의 4점 척도로 구성.

2. 노노케어 참여자의 심층대면조사 결과

고령의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 인지 및 청각,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이 저하되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표현에 서투르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정완, 김향희, 2009; 김화수, 김시현, 2017).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지, 몇 개의 설문 문항만으로는 노인의 인식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개방형 문항을 활용하여 심층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6-11 참조).

참여자들은 활동규정, 관계형성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는 노인의 인권적 차원에서 고용 및 노동보호, 존엄과 안전권, 사회참여 및 통합, 소득보장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표 6-11〉 노노케어 참여자 심층대면조사 결과 개요

대분류	중분류	내용	인권영역의 문제요소 ¹⁾
1. 활동규정 (사업운영)	1-1. 사업내용	· 기관별 서비스 내용이나 규정 상이	· 존엄/안전
	1-2. 자격 및 선발기준	· 소득수준(60점)으로 선발(건강요인 미반영) · 전년도 참여자 감점 · 서비스 중복 불가로 인한 수혜자 발굴 어려움 · 수혜자 직접 발굴 · 수혜자 개인정보서류 요구에 대한 부담 · 참여자 수혜자간의 위계적 관계형성	· 고용/존엄/안전·노 · 동보호
	1-3. 운영방법	· 활동시간: 초과활동(무급) · 참여기간의 이원화(9개월/12개월) · 서비스 내용에 따른 이용시간 상이 · 계절요인에 따른 어려움(혹서기/혹한기) · 예산 미배정으로 활동비 미지급(1월) · 활동비 외에 추가 비용 지원(수혜자 다과비, 교통비 등) · 기관별 활동 조원 수 상이	· 고용/노동보호 · 존엄/안전 · 소득
	1-4. 활동교육 및 관리	· 활동안내 부족 · 성(性)관련 교육 필요 · 출근도장 위한 수행기관 방문 · 저학력자 활동일지 작성 어려움 · 참여자 수혜자간 위계적 관계형성 · 부당대우 시 대응방안 마련 미흡	· 존엄/안전
2. 관계형성	2-1. 對 수혜자	· 이성매칭에 대한 부담 · 남성 참여자 배제 · 위계적 관계형성 및 부정적 시선	· 존엄/안전 · 사회참여/통합
	2-2. 對 참여자	· 조원, 팀장과의 관계 갈등 · 조원 활동 중단 시 어려움	· 고용/노동보호 · 존엄/안전
	2-3. 제3자(외부시선)	· 부정적 인식 또는 낙인	· -
3. 만족도	4-1. 만족요인	· 경제적 부담 및 자녀에게 부양부담 완화 · 인지 능력 향상 · 사회관계 만족도 향상	· -
	4-2. 불만족요인	· 이동의 어려움 · 정서적 스트레스	· 존엄/안전
4. 기타	5-1. 활동 지속성	· 건강이 유지되는 한 활동요망	· 소득

주: 원영희 외(2017). 노인인권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노인인권 영역 분석틀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1) 건강·돌봄(신체건강, 정신건강, 돌봄권), (2) 기본생활(의식주), (3) 소득(빈곤예방 및 해소, 소득), (4) 고용·노동보호(일자리 또는 고용기회, 근로환경, 가족돌봄노동), (5) 사회참여·통합(사회활동 참여, 세대교류 및 소통), (6) 존엄·안전(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생명권, 안전권)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가. 활동규정의 어려움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가 사업내용, 자격 및 선발 기준, 운영방법, 활동교육 및 관리 등 활동규정으로 인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내용 - 기관마다 상이한 서비스 내용

노노케어 사업의 규정상의 서비스 내용은 안부확인, 말벗, 생활안전 점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외에도 가사, 외출동행, 반찬 및 도시락 배달, 목욕 서비스, 기타 업무대행(은행업무, 폰 수리 등) 등도 30% 내외로 제공되고 있으며(표 6-7 참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어려움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반찬 및 도시락 배달은 수혜자가 부재중일 경우에 위생상의 이유로 재방문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처음에는 말벗서비스만 제공하다가도 참여자와 수혜자 간에 어느 정도 친분 형성이 되고 나면 친분에 의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받아 드시는 분이 양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이 고역이었어요. 도시락 걸어놓고 왔다가 노인들이 그거 드시고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A115, 77세, 참여자, 대도시)

한 치매 할아버지는 한두 시간씩 기다려도 문을 안 열어주고, 그걸(도시락) 또 다시 (복지관으로) 가지고 와야 하니까 (힘들어서)나는 울었어. (A18, 89세, 참여자, 대도시)

(계속) 병원에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93, 78세, 참여자, 중소도시)

이제는 치워주고 쓰레기 줍 갖다 버리라고 잔소리도 하고. (A115, 77세, 참여자, 대도시)

일부 수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말벗서비스 외에 청소나 빨래 등 가사서비스를 원하고 있었다.

손목 관절이 휘어서 행주 같은 걸 못 쥐어짜니까 힘이 들더라고. 한번은 그 소리 한 적이 있었어. 복지관 선생님들이 조사를 나와서, (도시락)배달 오는 엄마들이 청소를 해주냐, 걸레를 빨아 주냐 해서 한마디 던져봤어. (A17, 69세, 수혜자, 대도시)

이와 같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상이한 것은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으로, 제3기 노인 인권NAP의 핵심추진전략 중 하나인 ‘독거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2) 자격 및 선발기준 - 소득위주의 참여자 선발 및 수혜자 발굴의 어려움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선발기준(100점 만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득인정액(60점)으로, 건강 측면에 대한 고려는 활동역량(20점)영역에 포함되는 보행능력(10점)뿐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참여자가 수혜자보다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70대, 80대 하나까 부담이 가지. 80대 노인이 오면 미안해요. (A40, 72세, 수혜자, 중소도시)

가져오는 사람도 나이가 많아 가지고 뒤뚱뒤뚱 오는 데 겁나요. 한 번은 넘어져 가지고 입원했어요, 받아먹는 것도 염치가 없어요. 미안해 가지고. (A15, 76세, 수혜자, 대도시)

참여 노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것은 수혜자 발굴의 어려움이었다. 노노케어 사업 규정상 유사재가서비스¹⁹⁾를 받고있는 수혜자는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하

19) 자활간병서비스, 노인 돌봄종합(기본)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복지도우미(보훈처), 방문요양서비스 등

고, 수혜자 발굴의 주체는 수행기관이다. 그러나 수혜자 발굴이 어렵다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참여자가 수혜자를 직접 발굴할 뿐만 아니라 신청서와 관련 서류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 정책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수혜자여. (중략) 일단 첫째는 수혜자 구하기가 별 따기다.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세요. (A6, 78세, 참여자, 대도시)

수혜자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불만이 없는데 그게 어려워 가고. (중략) 복지관에서 교육을 할 때, 지금 하는 집 이외에 한 집을 더 창출해 보라. (중략) 내가 일하러 갈 집을 찾으라니까 어떤 집은 문도 안 열어주고. 어떤 이는 복지관에서 내가 일 하러 갈 집을 해줬으면 좋겠다. (A8, 75세, 참여자, 대도시)

이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선발했죠. 근데 힘들었죠. 주민등록등본 때문에 (안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 하나까 의심도 하시고 이거 어디다 쓰느냐 힘들었어요. 처음 시작 할 때가 힘들었어요. (A87, 68세, 참여자, 중소도시)

노노케어 사업의 취지는 참여자와 수혜자의 상생이다. 참여자는 소정의 사례비를 받으며 사회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수혜자는 이를 통해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일반노인 인식조사에서도 노노돌봄 장려를 찬성하는 이유로 노인 간에 서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64.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활동중단,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수혜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참여자들이 짧리고. 여기(복지관)서도 한계가, 제한이 있어요. (A44, 73세, 참여자, 대도시)

어떤 양반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쓰레기 줘는 길로 옮겼다고 하더라고. (A34, 74세, 참여자, 대도시)

(수혜자 등록 할 때)아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잖아요.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문제야. 자식들이 뭐 큰 일 나는 줄 알고. (A77, 78세, 참여자, 중소도시)

사기꾼 소리를 다 들어. 등본하고 통장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있으셔도 의심을 하나니까. (A81, 74세, 참여자, 중소도시)

이러한 참여자와 수혜자의 선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참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불평등한 위계적 관계의 형성이다. 사업량 배정으로 수행기관 또는 참여자 간의 수혜자의 발굴 경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수혜자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는 참여자에게 청소나 가사서비스, 물질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동네도 (수혜자가 참여자에게 활동비에서)돈 3만 원을 달라고... 근데 그 여자(참여자)가 노노케어에서 떨어 질까봐... 그래서 내가 주지마라 그렇게 주면 습관 된다고 언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참여자)한테 또 달라고 한다고. (중략) 한 70프로는 (수혜자한테)점심도 사주고. (A31, 66세, 참여자, 대도시)

내가 아는 사람은 할머니가 세 사람이나 바뀌었다야. 하도 별나게 굴어서. “너 내가 안 해주면은 돈도 못 타.” 그런 식으로... 너네는 우리 때문에 돈 버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맘이 편치는 않죠. 자기가 돈 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만 두는 걸 본 적이 있어요. (A31, 66세, 참여자, 대도시)

그래도 그냥 알랑거리고. (수혜자 구하기가 힘들어서) 할 수 없어. 비위를 맞춰야지. 그러려니 해야지. (A5, 82세, 참여자, 대도시)

3) 운영방법 - 활동시간 초과로 인한 무급 활동, 사비 지출 발생

노노케어의 운영기간은 연중(12개월)과 9개월로 구분되나, 수행기관에서는 기간별로 나누어 구분 모집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행기관에서 정한 유형의 기가만큼만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이에 대한 공식

적인 안내절차가 없어 9개월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일부 참여자들은 연중활동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12개월로 바뀌셨으면... 12개월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A79, 80세, 참여자, 중소도시)

또한, 연중형(12개월)이 있다 하더라도 1월에는 수행기관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참여자들이 무급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11개월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9개월, 12개월이 있는데, 우리는 12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복지관) 말로는 예산 때문에 1월 달에는 봉사를 하라고 그래요. 사실 1월 달 초반에는 거의 활동을 못하고 금액은 못 받고... (A22, 71세, 참여자, 대도시)

원래 우리가 (일하는 제)보통 한 달에 13일이고 많이 하면 14일인데, 10일치는 (돈을)받고 나머지 3~4일은 봉사하는 거예요. 명절 때문에 이번 달은 10번 하지만은 보통 13~14일하고 그래요. 1월에는 또 봉사하잖아요. (A21, 75세, 참여자, 대도시)

노노케어의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내(일 3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활동을 하거나, 정해진 활동일자가 아니더라도 수혜자의 병원동행, 장보기, 업무 대행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실질 활동시간은 36시간 이상 활동하는 참여자가 20% 정도로 나타났다(표 6-7참조). 그러나 초과 활동하더라도 활동비를 월 27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에는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수혜자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 수혜자가 아픈 사람이면 가까이 사니까 수시로 불러내서 병원가자, 약국가자, 어디가자. 낮에 가자, 밤에 가자. 가자고하면 가야지... (A74, 73세, 참여자, 대도시)

차로 이동을 해서 같이 병원을 가요.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 보고서 약국을 갔다가 집에 오죠? 그러면 또 목욕을 같이 다니려면 또 걷지. 시장에 또 물건을 사러 가지... (A80, 75세, 참여자, 중소도시)

이로 인해 수혜자를 위해 교통비, 병원비, 간식비 등을 사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활동비와는 별도로 소정의 교통비 또는 다과비 등의 추가 비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 27만 원 주는 거 참 큰돈인데, 빈손으로 못가니까 참 어려워요. 노인분들은 그런 거 바라세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또 급한 환자가 (생겨서) 119 불러서 뒤치다꺼리하면 자비로 다해야해요. 자식 올 때 까지는 쓰는 경비는 1~2만 원 이상. 경비는 무조건 들고, 그게 많기 보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중략) 그럼 집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뭐해 달라, 그러면 택시비가 몇 만 원 씩 나오더라고요. (A49, 76세, 참여자, 농어촌)

어르신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못가니까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야하고 그냥은 못가겠더라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점심이라도 가끔 같이 먹어야하고 대접해야하고...(중략) 딱 사람하고 은근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다못해 먹던 흰 떡이라도 가져다 드리고 김이라도 가져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A77, 75세, 참여자, 중소도시)

자손들이 다 나가있잖아요. 노인 양반이 급하니까 우리한테로 전화가 와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그 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자질구레하게. 그런 거 보면 솔직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이번에도 약을 사놓고 전달을 못하고 있는데 돈 달라고 어떻게 해요. (A50, 66세, 참여자, 농어촌)

4) 활동교육 및 관리 - 부당대우 대응 미흡 및 활동일지 작성 어려움

노노케어 사업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 활동방법, 안전수칙 등 활동보호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연간 12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서비스 내용 규정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활동교육의 질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행기관에 활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경우,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보편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지. 상대 수혜자도 맨날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 (A38, 76세, 참여자, 대도시)

(생긴다면) 복지관에 말해야지요. 그런데 얘기해도 뭐 도와주나? 그게 좀 어려워요. 수혜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 복지관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그것이 없어. (A45, 80세, 참여자, 대도시)

노노케어 사업은 활동 후에 본인 서명 및 수혜자의 확인을 받고 매일 말일까지 활동일지를 수행기관에 제출해야만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고령의 후기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참여자의 59.0%, 수혜자의 82.0%가 초졸 이하로 학력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혜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발기준에서 발생한 참여자와 수혜자의 불평등한 권력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팀원 참여자들이)일지 쓰는 걸 힘들어해요. (팀장이라)수도 없이 가르쳐도... 저랑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이 80세, 81세, 82세 그러세요. 가르쳐줘도 또 내일이면 잘못쓰셔. 이거 일지 쓴 거 걷어올 때 체크하려면 머리가 아파. 잘못하셔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에요. 참여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솔직히 말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학벌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시고.. (A39, 71세, 참여자, 대도시)

우린 한 사람 있어. 더러워서 못 하겠디야. 가서 노동일은 해도 그건 생김디야. 이거 적고 3시간씩. (활동일지 가리키며) 이거 내버려두고 더러워서 어디 가서 구걸 하는 게 낫대. 싸인 받고 일주일에 3번 들여다보고 언젠는 자기 어디 가야한다고 문 전박대를 한대. 언젠는 얼마씩 받는지 물어보더래. (A107, 73세, 참여자, 중소도시)

집에 안계시면 몇 번씩 기다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불편해. 서명을 받는 거. (A31, 66세, 참여자, 대도시)

이외에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활동시마다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출근도장을 찍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침에 출근도장 안 찍었음 좋겠어. 나는 갔다 와야 하나까 20-30분이 소요되는 거야. 여기 (복지관까지) 고개가 많으니까 쉬었다가 가야하고... 나쁜 여자(참여자)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A4, 82세, 참여자, 대도시)

나. 관계형성의 어려움 - 불평등한 위계적 관계 형성 및 외부의 시선

노노케어는 기본적으로 관계형성을 토대로 하는 대인 서비스이다. 이로 인해 크게 3가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1차적으로는 참여자-수혜자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노노케어는 안전상의 이유로 2인 1조 활동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참여자-참여자의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라는 제3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관계 활성화, 자존감 향상, 외로움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여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1) 수혜자와의 관계

참여자와 수혜자는 기존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경우 또는 마음이 잘맞는 경우에는 대부분 서로 의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이 먹어서 친구가 다 떨어지니까 활동이라도 하면서 한두 명이라도 만나는 게 기본이 참 좋아요. 참 외롭거든요. 혼자 있다는 게. 이거를 한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A40, 79세, 참여자, 대도시)

제가 혼자 된 지 얼마 안 되었어요(사별). 너무 좋아요. 그 분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치유가 돼요. 제가 위로를 받아요. (A42, 73세, 참여자, 대도시)

그러나 수혜자를 신규 발굴한 경우에는 불평등한 위계적 관계가 형성되어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거나 다른 유형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동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수혜자가)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여자가)일을 안 하고 돈을 받으면 하나님한테 죄를 받을 거 같더라. (노노케어 수혜자로 참여하기)하기 싫다는 거야...(중략) (수혜자로) 올해만 해주시라고. 그러다고 하는디 가려면 마음이 편치가 않죠. 아니 그냥 봉사 차에 가는 건데 고맙게 생각해야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자기들이 돈 주는 것처럼... (A31, 66세, 참여자, 대도시)

어떤 한 집은 오는 건 안 반갑고 반찬이나 해오라고 하더라고. (중략) 그 분이 술을 좋아하시니까 같이 가는 사람(참여자)이 막걸리 조그마한 거를 사왔어. 그래서 주는데 그냥 고맙다고 받으면 좋잖아. 근데 “웬 술이야?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돈으로 줘!” 너무 황당한 거야.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야. 그 날 말도 안하고, 일지도 안 쓰고 “우리 이제 이 집 끝냅시다. 그만 갑시다.” 얘기하고, (복지사 선생님한테)밥 굶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안 하겠다 그런 거야. (A47, 71세, 참여자, 대도시)

(수혜자가) 본인 때문에 돈 번다 카고. 도장만 받아 간다하고. (A111, 74세, 참여자, 농어촌)

또한, 참여자와 수혜자의 이성간 매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가구의 경우에는 성추행과 안전

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고,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으며, 수혜자가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여자들이 낫지.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게 있었어. 남자 집으로 안 갈라 그래. (술 먹고 와서)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만져서) 500만 원 달라고 그랬다잖아. 그리고 (남자들끼리) 이해하기도 좋을 거여. 남자(수혜자)들이 있는데 (굳이) 여자(수혜자)들한테 가는 건 안 좋고... (A4, 82세, 참여자, 대도시)

내가 지금 술을 많이 드시는 분(수혜자)한테 가는데, 여자 분들은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A22, 71세, 참여자, 대도시)

여성끼리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좀 어려운 사람이 생겨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하긴 잘했는데, 조금 부담되던데요? 상대방이 남자니까, 쉽게 말해서 좀 무서워. 꼭 붙잡을까봐... (A12, 80세, 참여자, 중소도시)

참여자 여자가 가면 그 부인이 남편 찾아오는 거 싫어해서 가정불화가 생겨가지고 그 수혜자를 바꿨어. (A43, 80세, 참여자, 대도시)

한편으로는 매칭 시 성별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소수자인 남성노인이 참여자로 활동하는데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노노케어가 아닌 다른 유형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배정되거나 옮길 수밖에 없는 일종의 펜스 룰(Pence Rule)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 같은 경우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어렵습니다. 싫어하니까. 그래서 나는 또 남자 쪽으로 가고, 나이가 많아도 남자는 남자라 싫대. (방문하지 말고) 뭐가 있으면 연락을 할 테니... 그런 경우도 있고, 한 동네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A51, 80세, 참여자, 농어촌)

남자보단 여자들이 장수를 하니까, 여자 혼자 사는 분 집 가서 하기가 좀 마음이 불편 할 때가 있어요. 문을 안 열어주면 문을 불쑥 열기가 참 어려워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A90, 81세, 참여자, 중소도시)

2) 참여자와의 관계

2인 1조로 활동하는 참여 노인 간의 관계는 친분이 있는 참여자 간에 사전합의를 통해 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서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수행기관에서 신규 조를 형성해준 경우에는 건강상태, 연령, 성별, 활동성향 등이 미스매칭 되어 조원을 변경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은 건강한테 한 사람은 (몸이)불편하고. 한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뭐 어떻게 해. 한 사람은 좀 (몸이)나오니까 빨리 오라고 했던지... 또 개인적인 얘기까지 부각시키는 거야. 나는 이 집에 얼른 갖다 주고 볼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갈 텐데, 이 사람이 늦게 오니까... 어쨌든 짝이랑 같이 행동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이랑 안다녀.” 사무실에 가서 짝꿍 바꿔 달라 이런 일이 있었어. (A14, 77세, 참여자, 대도시)

(2인 1조 참여자) 짝꿍이 있었는데, 한 노인네가 자꾸 빠져서 도망가. (수혜자가) 필요 없다고, 내년에 안 한다고 그래서 짝려 부렸지.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일을 잘 안 하고. (A4, 82세, 참여자, 대도시)

을 초, 참여자 2명이 같이 오는데 참여자 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가정 방문할 때 내가 다 불편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기관에서 1명만 방문하도록 조치 해줬어. (A31, 91세, 수혜자, 대도시)

3) 외부의 시선

일부 참여자들은 노노케어 활동에 대해 선입견을 갖거나, 무시를 당하는 등 외부의 시선에 의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의 시선들이 노인들에게 또 다른 낙인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그랬었어. 빨래해주고 다닐 때, 청소해주고 할 때, 임신여기면서 나이드 잡술만큼 잡셨는데 이런 일 하러 다닌다고 이런 소리도 막 들었어요. 저 혼자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좀 그렇더라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많이 들지. (A10, 72세, 참여자, 중소도시)

내가 수혜자한테 무슨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이거 하러 멍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저번에도 모임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라에 돈도 많다든 거야. 27만 원을 주면서 방문하게 하느냐고. 나는 하는 입장인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했는데. (A47, 71세, 참여자, 대도시)

다. 만족도

노노케어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앞서 확인했듯이, 95%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불만족하는 경우는 5%에 불과했다. (표 6-10 참조). 만족과 불만족 세부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만족 요인 - 경제적 부담 완화, 인지능력 향상, 사회관계 활성화, 정서적 만족감

참여자들은 노노케어 사업 활동을 통해 생계유지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또한, 수혜자, 함께 활동하는 참여자, 수행기관의 직원 등의 사회관계가 활성화 되어 외로움이 해소되고 마음에 위안을 얻는 등 정서적으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활동일정을 상기는 것이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곳 가서 일을 못 하니까. 이거라도 하면은 심심치도 않고, 또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고, 용돈도 써먹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수혜자가) 너무 막 반가워하면서 우리 식구라고. 문을 막 열 어놓고. (A3, 76세, 참여자, 대도시)

저는 활동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경제적 도움도 되고, 내가 활동하는 것도 좋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좋고. 연세 들으신 분들한테 배울 점도 많아요. (A39, 71세, 참여자, 대도시)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자식들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생활에 보탬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 같아요. (A43, 80세, 참여자, 대도시)

경제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늙으면 무의미하잖아요. 가는 요일들이 되면 시간 안 잊어먹을라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 같아요. 자꾸 신경을 써야 하니까. 신경 쓸 일이 없으면 사람이 안 좋아지는 거 같고. 시간 신경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머리를 자꾸 쓰게 돼. (A44, 73세, 참여자, 대도시)

2) 불만족 요인 - 이동의 어려움 및 정서적 스트레스

한편, 불만족 요인으로는 이동의 어려움과 수혜자 발굴, 그리고 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²⁰⁾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은 도보로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혹서기나 혹한기 등의 계절적 요인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뭐 걸어갔다 걸어오고 한창 여름에는 대간하더라고. (A13, 73세, 참여자, 중소도시)

걸어다니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월, 수, 금) 3일 다니는 것도 조금 힘들고. (A25, 78세, 참여자, 대도시)

면 때는 택시 타고 가면 되긴 하죠. 갈 때는 데려가고 올 때는 택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걸어오고. (A69, 71세, 참여자, 대도시)

20) 2016년 노인일자리 사업 실태조사에서 참여시 어려움 1순위를 조사한 결과, 노노케어 유형의 경우, 교통문제(이동문제) 23.3%, 수혜자와의 관계 1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²¹⁾에는 매칭 되어있는 수혜자들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있어서 참여자의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를 사비로 충당해야 하고 시간소요가 많이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내 차로 운전해서 다니는데 시골이라 여러 집을 돌아야 하니까 한번 다 돌고 나면 3시간은 더 걸려. (A105, 78세, 참여자, 중소도시)

27만 원이잖아. 3만 원은 기름 값으로 쓰잖아. (A99, 75세, 참여자, 중소도시)

라. 기타 의견 - 활동 지속 의지

참여자들은 활동만족도가 높은 만큼 활동 지속 의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로 선정이 되기만 한다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며, 노노돌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키면. 건강하면. 난 언제 까지든 시켜주면 좋아. (A1, 79세, 참여자, 대도시)

해야죠. 젊은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노노케어는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이해를 하니까... (A14, 77세, 참여자, 대도시)

21) A99, A105의 주거지는 중소도시로 분류하였으나, 군 단위가 중소도시로 통합된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농어촌의 특성을 지님.

제3절 노노케어 사업 수혜자 조사 결과

1. 노노케어 수혜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가. 노노케어서비스 이용 현황

수혜자의 노노케어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기간, 타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 및 서비스 종류, 돌봄제공 가족, 월평균 노노케어 이용시간, 방문인원을 분석하였다.

이용기간은 앞서 살펴본 참여자의 활동기간과 유사한 패턴으로, 3년 이상~5년 미만(34.0%), 1년 이상~3년 미만(28.0%), 1년 미만(1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노케어 서비스 외에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자는 16.3%에 불과했다. 이는 노노케어의 수혜자 선발기준이 유사재가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른 돌봄 서비스의 종류로는 반찬 및 도시락 배달서비스(42.9%) 이용이 가장 많았고, 독거노인 응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14.3%였다.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문항에서는 없음(62.6%), 자녀(22.2%), 배우자(8.1%) 순으로 높게 나타나 수혜자의 대부분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노노케어 서비스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월평균 노노케어 이용시간은 이러한 돌봄 공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적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서비스 제공시간은 10시간 미만(44.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23.0%),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18.0%),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11.0%)로 수혜자의 절반가량이 월 10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에게 방문하는 참여자의 인원은 2인 1조(53.6%), 1인(44.3%), 3인 1조(2.1%) 순으로 나타났다. 노노케어 사업의 참여자 활동원칙이 2인 1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인 참여자 활동비율이 높은 것은 서비스 유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지침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말벗 및 안부서비스 외에도 1인의 참여자가 반찬 및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수혜자의 노노케어 서비스 이용 현황 I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이용기간(N=100)		
1년 미만	16	16.0
1년 이상~3년 미만	28	28.0
3년 이상~5년 미만	34	34.0
5년 이상~8년 미만	12	12.0
8년 이상	10	10.0
타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N=98)		
이용	16	16.3
미이용	82	83.7
타 돌봄 서비스 종류(N=14)		
반찬/도시락 배달	6	42.9
독거노인응급서비스	2	14.3
기타	6	42.8
돌봄제공 가족(N=99)		
없음	62	62.6
자녀	22	22.2
며느리	1	1.0
배우자	8	8.1
기타 ¹⁾	6	6.1
월평균 노노케어 이용시간(N=100)		
10시간 미만	44	44.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23	23.0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11	11.0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8	18.0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	-
50시간 이상	4	4.0
방문인원(N=97)		
1인	43	44.3
2인	52	53.6
3인	2	2.1

주: 1) 기타 돌봄 제공자에게는 조카, 손자녀 등을 포함

2) 서비스 유형별 도움 수준은 도움수준 매우 낮음=1~ 도움수준 매우 높음=5의 5점 척도임

수혜자의 노노케어 서비스 이용현황을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기간은 약 3.1년(37.0개월)으로 참여자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이용시간은 16.6시간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표준편차가 24.3시간으로 최소 0시간에서 최대 196시간으로 수혜자별로 서비스 이용시간이 매우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에서 최소이용시간이 0시간으로 나타난 것은 일부 수혜자의 경우 도시락 및 반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이를 노노케어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문인원은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평균 1.6명이었다.

〈표 6-13〉 수혜자의 노노케어서비스 이용현황 II

구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서비스 이용기간(개월)	100	4	129	37.0	29.9
월평균 이용시간(시간)	100	0	196	16.6	24.3
방문인원(명)	97	1	3	1.6	0.5

수혜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별 도움이용수준과 필요수준을 살펴보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준은 안부확인(4.3점), 말벗(4.1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빨래(1.6점)와 목욕(1.2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 유형으로는 역시 말벗과 안부확인이 4.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욕은 1.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보다 더 향상되기를 원하는 유형은 청소(+0.5점), 빨래(+0.5점), 시장보기(+0.4점), 목욕(+0.4점), 식사준비(+0.3점) 등의 가사서비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4〉 서비스유형별 도움 이용수준과 필요수준

(단위: 점)

구분	이용수준(A)		필요수준(B)		(B-A)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비스유형별					
말벗	4.1	1.2	4.0	1.1	-0.2
안부확인	4.3	1.0	4.0	1.1	-0.3
생활안전점검	3.3	1.6	3.2	1.6	-0.1
청소	1.8	1.3	2.3	1.3	+0.5
빨래	1.6	1.1	2.1	1.2	+0.5
시장보기	2.0	1.5	2.5	1.5	+0.4
외출동행	2.5	1.6	2.6	1.5	+0.1
식사준비	1.9	1.4	2.2	1.4	+0.3
목욕	1.2	0.7	1.6	1.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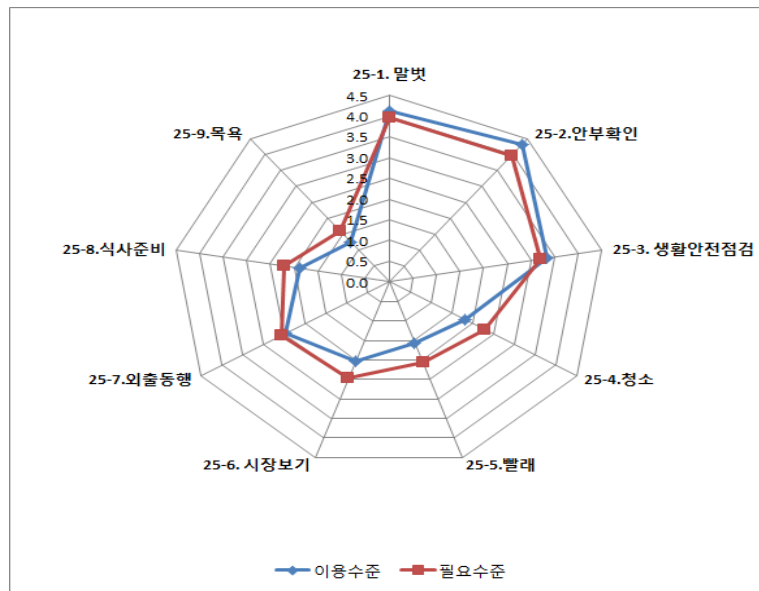
주: 1) 서비스 유형별 도움 수준은 매우 낮음(=1)~매우 높음(=5)으로 구성된 5점 척도임.

2) 무응답으로 인해 서비스유형별로 응답 사례수가 상이함.

이외에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보다 감소되어도 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형은 안부확인 (-0.3점), 말벗(-0.2점), 생활안전점검(-0.1점)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정서적 서비스는 다소 감소하기를 원하는 반면, 신체적·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 서비스유형별 도움 이용수준과 필요수준

(단위: 점)



나. 노노케어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견해를 살펴보면, 적정 이용시간은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39.0%), 50시간 이상(1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혜자의 60%가량이 월 평균 30시간 이상의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시간 증가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노케어 이용 추천의향을 살펴보면 이용을 추천하는 수혜자는 74.0%에 불과해, 91.4%의 추천 의사를 밝힌 참여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용만족도는 매우 만족(77.0%), 조금 만족(18.0%)으로 90% 이상의 수혜자가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5〉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견해 I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월평균 적정 이용 시간(N=100)		
10시간 미만	13	13.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4	14.0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14	14.0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39	39.0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1	1.0
50시간 이상	19	19.0
노노케어 이용 추천의향(N=100)		
추천	74	74.0
비추천	26	26.0
노노케어 이용 만족도(N=100)		
매우 만족	77	77.0
조금 만족	18	18.0
조금 불만족	4	4.0
매우 불만족	1	1.0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견해를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23.9시간의 서비스 이용을 희망했으며, 이용만족도는 3.7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16〉 수혜자의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견해 II

구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적정 활동시간(시간)	85	0	100	23.9	14.6
노노케어 이용 만족도(점)	100	1.0	4.0	3.7	0.6

주: 1) 노노케어 활동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4=매우 만족'의 4점 척도로 구성

2. 노노케어 수혜자의 심층대면조사 결과

수혜자는 참여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특히 일부 수혜자는 노화로 청각능력이 손상되거나, 초기 치매 등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인터뷰 진행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수혜자의 조사내용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노케어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서비스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심층대면조사도 참여자보다 간략하게 진행되었다.

〈표 6-17〉 노노케어 참여자 심층대면조사 결과 개요

구분	내용	인권영역의 문제요소 ¹⁾
1. 서비스 욕구	·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가사, 외출동행 등 ·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공휴일, 주말, 연휴 등 · 서비스 이용장소 확대 -경로당, 나들이, 병원 등	· 건강/돌봄 · 기본생활(의식주) · 사회참여/통합 · 존엄/안전
2. 수혜자에 대한 지원	· 물질적 지원 희망(다과비 등)	· 기본생활(의식주)
3. 참여자와의 관계 형성	· 참여자 만족 또는 불만족	· 사회참여/통합
4. 안내 및 교육	· 수혜자에 대한 공식적 안내 및 교육	· 존엄/안전

주: 원영희 외(2017). 노인인권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노인인권 영역 분석틀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1) 건강·돌봄(신체건강, 정신건강, 돌봄권), (2) 기본생활(의식주), (3) 소득(빈곤예방 및 해소, 소득), (4) 고용·노동보호(일자리 또는 고용기회, 근로환경, 가족돌봄노동), (5) 사회참여·통합(사회활동 참여, 세대교류 및 소통), (6) 존엄·안전(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생명권, 안전권)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가. 서비스 욕구

노노케어 수혜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규정상의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비스 내용, 자격 및 선발기준, 운영방법, 활동교육 및 관리 등 이용 규정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욕구

참여자와의 심층대면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혜자들은 말벗,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외에도 청소나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와 반찬 및 도시락 배달서비스, 의료지원 서비스(혈압측정) 등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락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수혜자는 참여자와의 교감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둘이 사니깐, (내가 하는 게) 편해요. (그래도) 청소도 좀 해줘요. 설거지도 좀 해 주고. 그런 거 해주면 고맙지. (많이 해주면) 불편하지. (A83, 78세, 수혜자, 대도시)

다시는 말을 안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 사람들도 도시락 갖다 주고 두 마디 인사가 끝나고. (A17, 69세, 수혜자, 대도시)

왔다갔다 혈압만 재주는 것도 고맙지. (A85, 65세, 수혜자, 중소도시)

또한,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 외에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서비스, 외출동행, 차량지원, 나들이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나타났다.

청소라도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남자니까 반찬도 걱정이 되고. 제가 주민 센터 에도 올 봄에 가서 상의를 해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옛날만큼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보자는데 여지까지 말이 없는 거 보면... (A19, 69세, 수혜자, 대도시)

와서 말동무나 해주면 뭐... 이대로그 편해요. 여기서 나들이 같은 거 자주하면 좋을 거 같아. (A93, 89세, 수혜자, 농어촌)

병원 가려면 버스타고 가야해. 또 택시타고 드가야 해. 태워다주면 좋지요. 근데 누가 태워다줘. (A83, 78세, 수혜자, 대도시)

2)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 공휴일, 주말, 연휴 서비스 이용 욕구

조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수혜자는 평균 연령 80세의 고령에 사별의 비율이 높고 독거 상태이지만 노노케어 서비스 외에 별도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말, 연휴, 명절 등에 독거 상태로 장시간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주중, 주간시간대 외에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기도 했다.

(공휴일, 주말, 연휴, 명절 같은 때)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A2, 85세, 수혜자, 대도시)

3) 서비스 이용 장소 - 서비스 이용 장소의 다양화

현행 노노케어 서비스는 참여자가 취약가정의 자택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서비스 이용장소에 다른 의견을 보였다. 즉, 비교적 건강상태가 좋은 일부 수혜자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모여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외출동행, 나들이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아직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경로당이) 편하지. (A56, 80세, 수혜자, 농어촌)

따로는 못하지. 시간도 없고 집에서는 할 게 없어요 (A66, 87세, 수혜자, 농어촌)

밖에서 받는 것도 서비스해주면 좋죠. (A81, 85세, 수혜자, 중소도시)

한편,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수혜자들은 몸이 불편하여 나가는 것이 꺼려지고 집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를 원했다.

집 안에서 하는 게 좋지. 난 내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 (A79, 81세, 수혜자, 중소도시)

먼 데 있어 가지고. 날씨가 추우면 나오질 않는다고. 그것도 불편하고 가서 그냥 하는 게 또 낫지. (A60, 90세, 수혜자, 농어촌)

나. 수혜자에 대한 별도의 물질적 지원 욕구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공통적으로 수혜자에 대한 별도의 물질적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노케어 사업은 참여자만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활동비만을 받고 있고 수혜자는 참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수혜자들은 말벗 및 안부확인 등의 정서적 지원 서비스 외에 간단한 다과, 간식 등의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로 했다. 또한, 이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의 욕구와도 일치한다.

(간식을 사오는 것에)그렇지. 그러면 고맙지. (간식 사오면)그게 최고지. (A83, 78세, 수혜자, 대도시)

글쎄요. (간식 같은 것)그런 건 알아서 챙겨주면 좋은 건데. (A80, 75세, 수혜자, 중소도시)

다. 참여자와의 관계 형성

참여자들이 수혜자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혜자들 또한,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시간, 참여자들의 태도 및 성향 등을 이유로 불만을 갖기도 했다. 즉, 서비스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거나, 불필요한 잔소리를 하는 것 등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 참여자를 기다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했다.

없어요. 작년에는 내가 (참여자분들이랑)마음이 안 맞질 않았지. 작년에는 두 달 정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서비스를 이용 안했었어요. 귀가하는 길에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참여자분들은 불만이었고... (A4, 93세, 수혜자, 대도시)

나한테 혼났어. 왜냐면 가서 못 만나고 온다고 말을 했나보지. (복지관에서) 어디 가게시냐고 얘기를 해. “나, 가고 싶은 데 가니까 밥 주기 싫으면 밥 보내지마!”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을 갔어. 주기 싫으면 말지. 병원에도 가고, 약방에도 가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집구석에만 있어? 오기 싫으면 말라 그래. 한 번은 (참여자)가왔던가봐. 발길로 문을 차더라. 내가 없으니까. (반찬은) 여기다 넣어놓고. (A14, 87세, 수혜자, 대도시)

어떤 사람은 (참여자)가 잔소리도 엄청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대. (A8, 75세, 수혜자, 대도시)

이외에 이성의 참여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수혜자가 많았으며, 이성의 참여자가 매칭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자가 오면 나쁘지. 아이고 아무래도 여자만하지 않지. 아휴 안 좋지 남자. 여자는 여자 집에 가야지. 마음이 편하질 않고 부드럽질 않지. (A10, 91세, 수혜자, 중소도시)

남성이 오게 하면 이용하지 않을 거야. (A34, 84세, 수혜자, 대도시)

라. 수혜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 필요

수혜자와의 심층대면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혜자들은 노노케어 사업의 서비스 시간, 내용, 장소 등의 규정 등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이 상이하여 단순한 반찬 및 도시락 서비스로 인지하고 있거나, 가사와 청소서비스는 규정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못시켜. 그 전에 처음에 이사와가지고 여자 어르신들이 와서 청소해준다고 했슈. 근데 못 앉아있겠어. 그 다음에 왔을 때 그냥 앉아 있으라했어. (A6, 86세, 수혜자, 중소도시)

도시락 이외에는 하나도 받는 것이 없어요. 복지관에서 뭐도 주고 뭐도 준다하면 귀가 있으니까 다 듣는 거야. 근데 나는 못사는데 왜 안주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A17, 69세, 수혜자, 대도시)

이는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 규정에서 참여자를 위한 공식 교육은 명시하고 있으나, 수혜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 보다 질 높은 노노케어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4절 소결

본 절에서는 노노케어 사업의 현황 및 어려움 등을 검토하기 위해 2018년 현재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심층대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참여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 3년 2개월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연중(12개월) 유형이 64%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었고, 도보로 1시간미만(편도)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서비스는 평균 3.2개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말벗,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외에 가사, 외출동행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는 4점 만점에 3.6점으로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참여와 이용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는 사업내용, 자격 및 선발기준, 운영방법, 활동교육 및 관리 등의 활동규정으로 인해 노노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유사한 공적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수혜자 자격기준으로 인해 수혜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참여자와 수혜자 간의 불평등한 위계관계가 형성될 경우,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역특성 및 계절요인에 따라 활동을 위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했다.

한편, 수혜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혜자는 참여자에 비해 고령이었으며,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노케어 서비스 외에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16%에 불과했으며,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없는 노인도 63%로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 공백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노인이 월평균 10시간 미만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서비스 유형별 도움 이용수준과 필요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말벗, 안부확인 등의 관계·정서적 서비스는 다소 감소하기를 원하는 반면, 청소나 빨래 등의 신체·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노노케어 서비스 이용을 추천하고 싶다는 수혜자의 비중은 74%로 참여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노노케어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이용장소 등에 대한 다양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 외출 동행 등의 서비스 확대와 주중, 주간시

간대 외에 주말과 연휴에도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의 경우 자택이 아니더라도 경로당 등으로 이용장소가 확대되거나 나들이, 여행 등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수혜자는 노노케어 사업에서 다과, 간식, 반찬, 도시락의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수혜자의 사업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참여자와의 관계형성 및 서비스 내용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적 제언

7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제1절 요약

1. 배경 및 목적 요약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노인 돌봄과 인권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돌봄 수혜자이자 돌봄 제공자로서 노인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식적·비공식적 노노돌봄에 관한 실태 자료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노노돌봄에서의 신체·심리·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간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노돌봄 당사자 양측의 인권이 향상되어야 한다. 노노돌봄 당사자들의 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려면 노노돌봄 현상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노노돌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도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련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노노돌봄 관련 법·제도·사업, 문헌, 기존 실태조사, 통계 자료를 검토했고, 노노돌봄 관련 일반노인 인식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심층대면조사를 실시했다. 노노돌봄 현상을 이처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일반 노인과 노노케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노돌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2. 노노돌봄 실태와 정부의 노력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고 돌봄을 받는 노노돌봄은 일상에서 흔하게 경험하거나 접할 수 있는 현상이다. 노인부부 가구 비중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도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노인인 배우자와 서로를 보살피며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정경희 외, 2017). 가부장제 전통 사회에서는 젊은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노인인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것이 문화적 규범이었으나, 자녀 세대에게 부양받기를 기대하는 노부모가 이제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 실

시한 일반 노인 대상 노노돌봄 인식조사 결과를 봐도, 노인 돌봄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응답이 배우자(39%)였고, 노인인 자녀(24%)는 국가(27%)에 이은 3순위였다. 노인인 배우자가 상대방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의견도 84%가 찬성을 했지만, 노인인 자녀, 며느리가 부모를 돌보는 것에 대한 의견은 그보다 적은 57%만 찬성했다. 이처럼 노인부부 가구 수가 늘어나고 노인 스스로의 인식도 변화되면서 가족 내 배우자에 의한 돌봄도 증가할 것이라 전망된다.

배우자 노노돌봄보다 비중이 적고 우선순위 낮다고 하더라도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초고령 노부모를 연소노인인 자녀 세대가 부양하는 부모-자녀 간 노노돌봄도 늘어날 수 있다. 1970년 62세에 불과했던 평균 기대수명이 2020년만 되어도 85세가 되고, 2050년에는 90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현재도 청소, 빨래, 시장보기, 식사준비는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는 노인들이 가장 많지만, 외출동행이나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는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우도 그에 못지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와 사별한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도 해서(정경희 외, 2017) 한 가구에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초고령 부모를 둔 연소노인 자녀에 의한 노노돌봄 역할도 확대될 수 있다.

가족구성원 간의 비공식적 노노돌봄과 더불어 사회적 활동으로의 노노돌봄 역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60~70대의 노인 인구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들의 사회활동 욕구 수준도 높다. 우리 정부도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고 노인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노케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거나, 적어도 신청한 경험이 있었는데 다른 사업 유형들보다도 특히 노노케어 사업의 참여 의향이 높았다. 본 보고서에서의 ‘노노돌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의 노노케어를 직접 경험하거나(5%) 주변에서 접한 적이 있는 노인(33%)보다는 모르는 노인(62%)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적 보상이 있다면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을 가진 노인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보고서 인식조사에서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정부의 노노케어 사업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도 77%나 된다. 그러므로 공식적 노노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공식적 노노돌봄이 갖는 순기능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와 사회가 지원을 해야 한다.

2007년부터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NAP)에서도 노인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2007~2011년 제1기 인권NAP에서는 ‘취업알선체계 구축 및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노인고용기회 확대’가 핵심 추진과제였다. 2012년~2016년 제2기 인권NAP에서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취업대책 강구 및 고령자 취업기회 증진’이 핵심 추진과제로 추가되기도 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는 제3기 인권NAP에서는 노인빈곤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취업 대책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체제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권 보장’을 국가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이에 기반 해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기회 보장’, ‘다양한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독거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3기 인권NAP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비공식적·공식적 노노돌봄 상황과 결부해서 논의될 수 있는 사회보장권, 근로의 권리, 시민사회 인권교육도 권고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노노돌봄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제3기 인권NAP 핵심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가 노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제2절 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적 제언

1. 비공식적 노노돌봄 진단과 제언

가. 현황 진단

노노돌봄에 대해 노인이 갖고 있는 인식, 노노케어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인권 보호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이번 연구에서는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의 노노돌봄 인식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전화면접(유선전화 255명, 무선전화 745명)으로 실시됐다. 노노돌봄 인식조사의 조사항목은 노인 돌봄의 책임자, 노인인 배우자의 상대방 돌봄에 대한 생각, 노인인 자녀나 며느리가 부모를 모시며 돌보는 것에 대한 생각, 노노돌봄 장려에 대한 동의 정도, 노노돌봄의 장점, 노노돌봄 제공자의 어려움, 노노돌봄에 대한 사회적 우려, 노노돌봄에서의 학대, 노노돌봄에서의 인권 보호, 노노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국가나 사회에 대한 돌봄 제공 기대, 노인일자리아업 노노케어 인지, 노노케어 사업 수혜 희망 여부, 가족 외 노인 돌봄 의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노인 간 돌봄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의 인식조사 결과, 73%에 이르는 노인들이 앞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는 데 찬성을 할 정도로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노돌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직 국가(27%)나 지역사회(10%)의 책임보다 배우자(39%)와 노인인 자녀(24%)의 가족 내 노노돌봄 책임을 우선적으로 기대한다는 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간단히 소개한 바와 같이, 노노돌봄의 장점으로 ‘노인 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가 되는 점’이 64%로 가장 많았고,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17%), ‘사회적 돌봄 비용 감소’(12%), ‘돌봄을 받는 노인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는 점’(7%) 항목의 비중은 적었다.

반대로, 노인들은 노노돌봄으로 인한 우려도 가지고 있었다. 노노돌봄에서 노인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는 응답은 37%로 적었고,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63%로 다수였다. 노노돌봄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신체건강 악화’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스트레스’,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 응답 비중은 각각 21%였

다. 반면, ‘사회적 관계(친구, 지인과 관계 맺기 등) 축소’라는 응답은 8%로 소수였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차원에서 ‘돌봄 제공 노인의 건강 악화’가 가장 우려된다는 응답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노인 돌봄의 질 저하’와 ‘개인의 돌봄 부담 증가’는 각각 20%정도로 비슷했으며, ‘노인 학대 및 인권 침해’도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노돌봄 중 학대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57%) 대중매체에서 본 적만 있다고 했지만(22%), 2.4%의 노인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고, 나머지 18%의 노인도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노인들은 대체로 노노돌봄을 희망하고 노노돌봄의 장점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노인 돌봄을 하는 노인의 신체건강 악화, 정서적 스트레스, 노인 돌봄의 질 저하, 개인의 돌봄 부담 가중, 노인 학대 및 인권 침해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와 사회가 노노돌봄 당사자들을 지원하고 돌봄을 분담해야 노노돌봄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과 받는 노인 모두의 행복한 삶이 유지되고 인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정책적 제언: 가족 내 노노돌봄의 긍정적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가정 내 노노돌봄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노돌봄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의 노인부부와 단독가구에서 노노돌봄의 욕구가 많기도 했지만, 노노돌봄 제공자의 건강 악화, 개인의 돌봄 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 우려도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노돌봄에서의 노인 인권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다수였기 때문에, 노노돌봄에서의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지원 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고령의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찾아가는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및 보호입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이와 더불어 노인 돌봄기본서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읍면동 단위로 실시되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에서 고령의 노인부부와 단독가구를 핵심 사례관리서비스의 대상으로 선정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2. 공식적 노노돌봄 현황 진단과 정책적 제언

가. 제도 전반 진단 및 정책적 제언

노노케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에 의거해 수행되므로 정책적 제언에 앞서 이 지침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노노돌봄 참여자 선정기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형 선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노노돌봄 참여자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소득인정액(60점), 참여경력(5점), 세대구성(15점), 활동역량(보행능력 10점, 의사소통 10점) 영역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노노케어 유형은 연중 참여하는 12개월과 9개월로 나뉘고, 1일 3시간 이내로 월 30시간 이상의 활동을 한다. 활동비는 교통비, 식비 및 간식비, 활동 실비를 포함하여 27만 원 이내로 지급되고, 참여자 보호 차원에서 2인 1조 활동이 원칙이다. 참여자는 수혜자에게 안부확인, 말벗, 생활안전 점검 등을 제공하고, 매번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수혜자에게 서명을 받고 매월 말까지 수행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참여자는 연간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개요, 활동방법 등의 내용으로 연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행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한편, 수혜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노인 중 연령, 경제상태, 건강 등 연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으로 지원을 한다. 단, 자활간병서비스, 노인 돌봄종합(기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도우미, 방문요양서비스 등 유사 재가서비스와의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여자와 달리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식적 교육이나 안내는 부재한 상황이다.

노노돌봄 참여자의 특수성은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이기에 급여가 아닌 최저시급 미만의 활동비를 받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어서 부상을 당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수행기관 측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해둔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넓어, 근로형태의 종사자(예: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아이돌보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출퇴근재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권 강화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직은 노노돌봄 참여자를 노동, 근로자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장받는 근로

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노인학대 예방과 취약 계층 인권 보호와 증진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참여자와 수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언

노노돌봄 참여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노노케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참여자와 수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노노케어 참여자와 수혜자 두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언을 한다.

1) 노노케어 참여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노노케어 참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첫째, 노노케어 참여자가 직접 수혜자를 모집하도록 강요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참여자는 이후 수혜자와의 관계에서 균형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노케어가 필요한 노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간의 수급 불균형이 현장에서 토로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이러한 조정은 수행기관 종사자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다. 노노케어 수혜자 부족을 해결할 필요성이 높더라도 노노케어 참여자에게 수혜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것은 노노케어 참여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노노케어 참여자가 수혜자에게 노노케어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허락을 받게 해서 노노케어 참여자와 수혜자 간에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결국 수혜자가 참여자에게 과도한 서비스나 금품을 요구해도 참여자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일부 수행기관의 자체적인 관리감독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규정에 맞지 않아, 노노케어 참여자 활동에 신체적·시간적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매 활동 시 노노케어 참여자가 수혜자에게 활동일지 서명을 받게 하는 것은 현행 규정이지만, 수행기관에도 방문하여 출근도장을 찍도록 하는 등 규정에 없는 요구를 하는 사례가 대면조사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한글을 모르는 무학 노인은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

위와 같은 경우로부터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공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과 별개로 노노케어 사업에 적합한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노노케어 사업용 규정을 마련한다면 참여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배점을 낮추고, 활동유형 배정 기준을 설정하며, 서비스 내용과 범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석 확인 및 활동일지 작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참여자의 신체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한글을 모르는 무학 노인도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다. 셋째, 수혜자 발굴·모집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수혜자로부터의 금품 요구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참여자가 이에 대처할 수 있게 신고·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넷째, ‘사회적 약자·소수자(노인 포함) 당사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의 시민사회 인권교육 추진 차원에서 수행기관 담당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또는 안내를 도입한다.

2) 노노케어 수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언

한편, 노노케어 수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안부확인과 말벗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노케어 수혜자가 다른 공공 돌봄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 돌봄종합·기본서비스 등)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 중 일부의 욕구만 충족하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노노케어 수혜자는 청소, 빨래, 시장보기, 식사준비, 목욕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보다 높은 수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즉, 독거, 노인부부, 조손가구, 경증치매 등 취약계층의 노인은 말벗과 안부확인으로 충족할 수 있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욕구 이외에도 여러 일상생활수행영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벗과 안부확인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된 노노케어 이용을 선택함으로써 일상생활수행과 관련된 다른 돌봄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돌봄권, 건강권, 사회보장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돌봄 욕구를 지닌 노인의 돌봄권, 건강권, 사회보장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다른 공공 돌봄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 상 노노케어 수혜자는 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않은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수혜자도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참여자가 수혜자를 설득해서 받아오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참여자에게 부담을 주고 수혜자 모집은 어렵게 만드는 원인인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을 재정비 하는 정보인권 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관행이다. 그러므로 수혜자가 노노케어 신청 시 불필요한 증빙서류(예: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제출을 요구받지 않도록 수행기관에 지침을 명확히 교육하게 함으로써 수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국가인권위원회(201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 강은나(2018).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보건복지포럼. 264. pp.44-55.
- 김정완, 김향희(2009). 노년층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문헌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4, pp. 495-513.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 김학실(2017). 공동체 기반 서비스 공동생산(co-production)에 관한 연구-충북의 '9988행복 지키미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6(2). 79-105.
- 김화수, 김시현(2017). 노인의 언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동향. 언어치료연구, 26(3), pp.35-48
-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_____ (2008). 2008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_____ (2009). 2009년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_____ (2010).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_____ (2011).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_____ (2012). 2012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_____ (2013). 2013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_____ (2014).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_____ (2015). 2015년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종합안내
_____ (2016).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_____ (2017).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_____ (2018).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2018). 노인인권종합보고서
- 염지혜(2013). 노노(老老)케어의 시행과정과 향후 정책적 과제. 한국노년학. 33(2). 221-238.
- 원영희, 최혜지, 김주현, 김성호, 김지혜(2017).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윤기연, 정새날, 홍정아(201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이석원, 허수정, 이은아(2017). 2017년 공익활동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이석원, 변재관, 허수정, 정솔, 홍진주, 김선민(2017). 후기고령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실태 및 우선추천 일자리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이인수(2011). 미국과 캐나다 노인밀집도시의 주요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농촌지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33-62.
- 전용호(2012). 영국과 독일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그 결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평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143-169.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구, 홍송이(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인희, 김영란, 이아름, 박신아(2014). 노년기 가족돌봄의 위기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한국일보(2017.12.19.). [일자리 우수사례 대상] 서울 서대문구 ‘노노케어 프로젝트’.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2191246239256>.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5). 2015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_____ (2016). 2016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_____ (2017). 2017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 홍석원, 김영은, 박고은, 방효정, 노진원(2015). 노노케어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간접적 건강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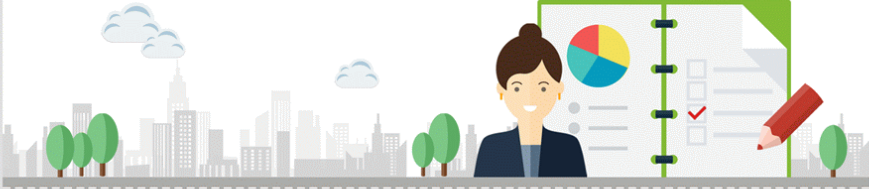
- <http://www.agewellnewyork.com/for-members/member-materials/>
- <https://www.care.com/b/l/envoy/san-francisco-ca>
- <https://www.nationalservice.gov/programs/senior-corps/senior-corps-programs/senior-companions>
- 厚生労働省(2016). 平成28年国民生活基礎調査.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k-tyosa/k-tyosa17/>.
-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2018). 韓中日人口フォーラム 발표자료

부록 1. 노노돌봄에 대한 노인인식조사 조사표

I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노노돌봄에 대한 노인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리서치 면접원 000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 간의 돌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 주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문 의 처 : 한국리서치 담당자 유승아 02-3014-1051

노노돌봄에 대한 노인인식조사



선정 질문

선문1.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_____년 (만 60세 미만 조사 종료) **1958년 이후 출생자 조사 종료**

- (1) 60세 미만(1958년 이후 출생자) ⇨ 면접중단
- (2) 60세 이상(1958년 및 1958년 이전 출생자)

선문2. 귀하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시도)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
- (12) 전북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 (17) 세종

선문2-1.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동/읍면리)

- (1) 동 지역
- (2) 읍면리 지역

선문3. 성별 (면접원 : 문지 말고 기록)

- (1) 남자
- (2) 여자

노노돌봄에 대한 노인인식조사

비공식적 노노돌봄 인식

※ 건강이 안 좋은 노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다른 노인이 돌봐주는 것을 노노돌봄이라고 합니다.

※ '돌봄'이란 신체적인 수발과 가사수발, 활동보조, 정서적 지원 등을 포함한 간병·수발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1. 귀하는 노인을 돌보는데 다음 중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배우자
- (2) 노인인 자녀
- (3) 국가
- (4) 지역사회

문2. 노인인 배우자가 상대방을 돌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전적으로 반대
- (2) 약간 반대
- (3) 약간 찬성
- (4) 전적으로 찬성

문3. 노인인 자녀나 며느리가 부모를 모시며 돌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전적으로 반대
- (2) 약간 반대
- (3) 약간 찬성
- (4) 전적으로 찬성

문4. 앞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적극 반대
- (2) 약간 반대
- (3) 약간 장려
- (4) 적극 장려

문5. 노인이 노인을 돌볼 때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노인 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는 점
- (2) 돌봄을 받는 노인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는 점
- (3) 노인 인력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점
- (4) 사회적 돌봄 비용 감소

노노돌봄에 대한 노인인식조사

문6. 노인을 돌보는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
- (2) 사회적 관계(친구, 지인과 관계 맺기 등) 축소
- (3) 신체건강 악화
- (4) 정서적 스트레스

문7. 노인이 노인을 돌볼 때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노인 돌봄의 질 저하
- (2) 노인 학대 및 인권침해
- (3) 개인의 돌봄 부담 증가
- (3) 돌봄 제공 노인의 건강 악화

문8. 노인이 노인을 돌보면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1)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음
- (2)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음
- (3) 대중매체에서 본 적만 있음
- (4) 경험하거나 접한 적 없음

문9. 노인이 건강이 안 좋은 노인을 돌볼 때 **노인 인권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충분
- (2) 조금 불충분
- (3) 조금 충분
- (4) 매우 충분

문10. 다른 노인을 돌보게 된다면,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돌봄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
- (2) 돌봄 방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
- (3) 가사활동과 돌봄 부담
- (4) 스트레스 해소 및 휴가지원
- (5) 근로자로서의 복지지원

문11. 귀하의 건강이 나빠져서 배우자 또는 다른 노인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면, **국가와 사회의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공식적 돌봄서비스 추가 제공
- (2) 노인인 돌봄제공자를 위한 시간신체적 지원
- (3) 노인인 돌봄제공자를 위한 경제적 보상
- (4) 노인에 대한 학대발생 시 신고와 처벌 강화

노노돌봄에 대한 노인인식조사

문12. 정부는 취약노인의 가정에 지역의 다른 노인이 방문해서 안부확인, 말벗, 생활 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노인에게는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노노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정부의 노노케어 사업을 알고 계셨습니까?

- (1) 직접 경험한 적 있음
- (2)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만 있음
- (3) 전혀 몰랐음

문13. 귀하의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정부의 노노케어 사업을 받고 싶습니까?

- (1) 전혀 받고 싶지 않음
- (2) 별로 받고 싶지 않음
- (3) 조금 받고 싶음
- (4) 매우 받고 싶음

문14. 귀하께 경제적인 보상을 해드린다면 가족이 아닌 다른 노인을 돌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전혀 없음
- (2) 별로 없음
- (3) 조금 있음
- (4) 매우 있음



일반적 특성

일반1.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1) 미혼
- (2) 기혼
- (3) 사별
- (4) 이혼 또는 기타

일반2. 귀하는 누구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 (1) 혼자
- (2) 배우자와만
- (3) 자녀와만
- (4) 배우자와 자녀 함께
- (5) 기타

노노돌봄에 대한 노인인식조사

일반3.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상중하로 구분할 때 귀택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하층
- (2) 중층
- (3) 상층

일반4.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1) 건강상태가 좋아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
- (2) 건강상태가 좋지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 (3) 건강상태가 나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 (4) 건강상태가 나빠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아야 한다

일반5. 귀하는 가족 등 주변 노인을 돌보고 계십니까?

- (1) 가족인 노인을 전담하여 돌봐주고 있음
- (2) 가족인 노인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봐주고 있음
- (3) 가족이 아닌 노인을 돌봐주고 있음
- (4) 돌봐주는 노인 없음

일반6. (돌봄 수혜 여부) 귀하는 현재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 (1) 전혀 없음
- (2) 가족이 전적으로 돌봐줌
- (3) 가족과 외부 사람(서비스)이 함께 돌봐줌
- (4) 외부 사람(서비스)이 돌봐줌

부록 2. 노노케어 참여자 심층대면조사 조사표

조사원				
ID	기관			
	개인			

노노돌봄 참여자 심층대면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노인 간 돌봄 실태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노돌봄 참여자 심층 대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약 100명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돌봄 정책 수립과 어르신들의 인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셔서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데는 약 30분이 걸리며, 질문 내용은 노노케어 참여경험 전반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에 참여하시는 데 동의하시면 아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조흥식



[노노돌봄 심층 대면조사 참여 동의서 및 답례품 수령 확인서]

본인은 '노노돌봄 심층 대면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본인은 '노노돌봄 심층 대면조사'의 참여 완료 후 답례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2018년 월 일 조사대상자: _____ (인)	

 일반적 특성-가.

가1. 성별

- 1) 남자 2) 여자

가2. 귀하의 생년월은 어떻게 되시나요?

_____년 _____월 (음력, 양력)

가3.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1) 미혼
2) 기혼
3) 사별
4) 기타

가4. 귀하의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중퇴 및 퇴학은 이전 학력으로 작성)

- 1) 초등학교(무학 포함)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 이상

가5. 귀하의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건강이 매우 나쁘다


 노노케어 활동내용-나.

나1. 귀하는 언제부터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_____년 _____월

나2. 귀하께서 현재 참여하고 계신 활동(일자리)과 관련하여 아래의 현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참여유형	(1) 9개월 (2) 12개월(연중)	2) 활동 조원	(1) 1인 1조 (2) 2인 1조 (3) 3인 1조 (4) 기타(_____)
3) 교통수단	(1) 도보 (2) 대중교통 (3) 자가 운전 (4) 기타(_____)	4) 1회 <u>편도</u> 이동시간	_____분
5) 월평균 노노케어 활동비 수입액	_____만 원	6) 월평균 노노케어 활동 시간	월 _____시간
7) 활동 내용 (모두선택)	(1) 말벗 (2) 안부확인 (3) 생활 안전 점검 (4) 가사(구체적으로 기입: _____) (5) 외출동행 (6)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노노케어에 대한 의견-다.

다1. 가장 적절한 노노케어 월평균 활동비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_____ 만 원

다2. 가장 적절한 노노케어 월평균 활동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_____ 시간

다3. 노노케어 서비스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활동비에 차등을 두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1) 찬성
- 2) 반대

다4. 귀하께서는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노노케어 참여를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추천
- 2) 비추천

다5. 귀하께서는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노노케어 이용을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추천
- 2) 비추천

다6. 귀하께서는 노노케어 활동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조금 만족
- (3) 조금 불만족
- (4) 매우 불만족

이제 조사원이 귀하의 노노케어 활동(어려움 및 개선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Q 노노케어 심층대면조사-라.

****(이하 질문 내용은 수행기관이나 연구참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지 않음)** 연구진이 면대면으로 질문하고 연구참여자의 답변을 녹취함. 사전에 준비된 반구조화 내용을 기본적으로 질문하지만, 연구참여자의 응답 내용과 심층대면조사 상황에 따라 더 다양하고 자세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라1. 노노케어에 참여하면서 기분이 상했던 상황이 있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내용에 아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빠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가 질문함**

라-1-1. 최초 참여 신청 시

라-1-2.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라-1-3. 활동 중 수혜자와의 관계에서

라-1-4. 활동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라-1-5. 활동 중 수행기관과의 관계에서

라-1-6. 기타

****라-1.에서 응답자들이 말하기 조심스러워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경우, 간접적인 추가질문 라2. 제시**

라2.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노노케어 참여자들의 당황스럽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2-1. 최초 참여 신청 시

라-2-2.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라-2-3. 활동 중 수혜자와의 관계에서(무시, 부당한 요구, 성적 농담 등)

라-2-4. 활동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무시, 부당한 요구, 사생활침해 등)

라-2-5. 활동 중 수행기관과의 관계에서(무시, 부당한 요구)

라-2-6. 기타

라3. 노노케어 활동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거나 불만인 점은 무엇인가요?

****응답내용에 아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빠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가 질문함**

라-3-1. 교통문제(교통편, 시간대, 교통비 등)

라-3-2. 활동비 부족

라-3-3. 신체적 부담

라-3-4. 정서적 스트레스

라-3-5. 수행기관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서비스 내용, 수혜자 발굴 등)

라3-6. 수혜자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서비스 내용, 수혜자 발골 등)

라3-7. 활동교육

라3-8. 활동일지 작성

라3-9. 사생활 침해

라3-10. 기타

라4. 노노케어를 하면서 부당한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또는 어디에 요청을 하면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나요?)

**라4-1.부당한 경험을 겪거나 보고 들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5. 주변에서 노노케어 참여하시다가 그만둔 분들을 보셨으면, 왜 그만두셨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는 앞으로도 노노케어 참여 계속하실 생각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왜 그만두고 싶으세요?)

라6. 노노케어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 내용을 늘리고 활동비를 서비스 내용별로 차등 지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7. 2인 1조로 활동하면서 불편하거나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다는 의견 있으셨나요? (또는 노노케어 참여하시면서 학대,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를 겪거나 보고 들은 경우 있으세요?)

라8. 이성(남성에게 여성, 여성에게 남성)과 매칭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아버지들이 노노케어에 참여하시거나 이용하시는 경우 보거나 들은 적 있으셨어요?

라9. 기존 참여자들에게 내년 참여자 선정 시 감점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10. 노노케어에서 이런 점은 정말 바뀌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활동일지 작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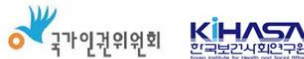
부록 3. 노노케어 수혜자 심층대면조사 조사표

조사원				
ID	기관			
	개인			

노노돌봄 수혜자 심층 대면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노인 간 돌봄 실태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노돌봄 수혜자 심층 대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노노케어 사업 수혜자 약 100명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돌봄 정책 수립과 어르신들의 인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셔서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데는 약 30분이 걸리며, 질문 내용은 노노케어 참여경험 전반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에 참여하시는 데 동의하시면 아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조홍식



[노노돌봄 심층 대면조사 참여 동의서 및 답례품 수령 확인서]

본인은 '노노돌봄 심층 대면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본인은 '노노돌봄 심층 대면조사'의 참여 완료 후 답례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2018년 월 일 조사대상자: _____ (인)	

 일반적 특성-가.

가1. 성별

- 1) 남자 2) 여자

가2. 귀하의 생년월은 어떻게 되시나요?

_____년 _____월 (음력, 양력)

가3.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1) 미혼
2) 기혼
3) 사별
4) 기타

가4. 귀하의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중퇴 및 퇴학은 이전 학력으로 작성

- 1) 초등학교(무학 포함)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 이상

가5. 귀하의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건강이 매우 나쁘다

 노노케어 이용경험-나.

나1. 귀하께서는 언제부터 노노케어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_____년 _____월

나2. 귀하께서는 노노케어 외에 다른 공공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1) 예(제도: _____) 2) 아니오

나3. 가족 중에서 귀하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1) 자녀 2) 며느리 3) 배우자 4) 기타(관계: _____) 5) 없음

나4. 현재 귀하의 노노케어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현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월 이용시간	월 평균 _____시간 (주 _____회, 회당 평균 _____시간)	2) 방문 인원	_____명
-----------	---	----------	--------

*월평균 시간을 정확히 모를 경우 환산

나5. 다음 항목에 대해 귀하께 도움이 필요한 수준과 수행 수준은 어떻습니까?

(1=매우 낮음, 2=조금 낮음, 3=보통, 4=조금 높음, 5=매우 높음)

내용	받고 <u>있는</u> 정도					받고 <u>싶은</u> 정도				
	1	2	3	4	5	1	2	3	4	5
1) 말벗										
2) 안부확인										
3) 생활 안전 점검										
4) 청소										
5) 빨래										
6) 시장보기										
7) 외출동행										
8) 식사준비(음식준비)										
9) 목욕										

 **노노케어에 대한 의견-다.**

다1. 가장 적절한 노노케어 월평균 이용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_____ 시간

다2. 귀하께서는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노노케어 이용을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추천
- 2) 비추천

다3. 귀하께서는 노노케어 활동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조금 만족
- (3) 조금 불만족
- (4) 매우 불만족

이제 조사원이 귀하의 구체적인 노노케어 이용 경험(불만 및 개선요구)에 대해 여쭙
볼 것입니다. 이에 관한 귀하의 경험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노노케어 심층대면조사-라

*****(이하 질문 내용은 수행기관이나 연구참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지 않음)*** 연구진이 면대면으로 질문하고 연구참여자의 답변을 녹취함. 사전에 준비된 반구조화 내용을 기본적으로 질문하지만, 연구참여자의 응답 내용과 심층대면조사 상황에 따라 더 다양하고 자세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라1. 노노케어 이용하면서 기분이 상했던 상황이 있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참여자의 응답에 아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빠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가 질문함. 응답을 들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문함**

- 라1-1. 최초 이용 신청 시
- 라1-2. 참여자와의 매칭 과정에서
- 라1-3. 이용 중 참여자와의 관계에서
- 라1-4. 기관과의 관계에서
- 라1-5. 기타

****라1.에서 응답자들이 말하기 조심스러워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경우, 간접적인 추가질문 라2. 제시**

라2.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노노케어 이용자들의 당황스럽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2-1. 최초 참여 신청 시
- 라2-2. 참여자와의 매칭 과정에서
- 라2-3. 활동 중 수혜자와의 관계에서(사생활침해 등)**
- 라2-4. 활동 중 수행기관과의 관계에서
- 라2-5. 기타

라3. 노노케어 이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무엇인가요?

****응답내용에 아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빠진 항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추가 질문함**

- 라3-1. 서비스 내용
- 라3-2. 참여자나 수행기관 담당자와의 관계
- 라3-3. 이용시간
- 라3-4. 장소

라-3-5. 사생활 침해

라-3-6. 기타

라4. 노노케어를 이용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또는 어디에 요청을 하셨나요?)

**라-4-1. 불만이었거나 억울했던 경험을 겪거나 보고 들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5. 주변에서 노노케어를 이용하다가 그만둔 분들을 보셨으면, 왜 그만두셨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는 앞으로 노노케어를 계속 이용하실 생각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왜 그만 이용하고 싶으세요?)

라6. 노노케어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 내용을 늘리고 이용 시간을 줄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7. 노노케어를 이용하면서 학대, 인권침해, 사생활침해를 겪었거나 보고 들은 경우 있으세요?

라8. 집 밖에서 노노케어를 이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9. 이성(남성에게 여성, 여성에게 남성)과 매칭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아버지들이 노노케어에 참여하시거나 이용하는 경우 보거나 들은 적 있으셨어요?

라10. 노노케어에서 이런 점은 정말 바뀌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부록 4. 부표 및 부그림

[부그림 1]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조사 모집단 분포(2018년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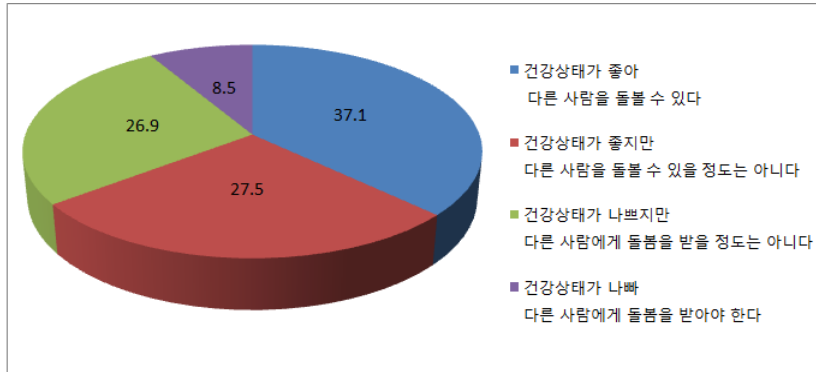
모집단	계	60~69세		70~79세		80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1,003,469	2,849,063	2,985,846	1,529,899	1,931,383	550,648	1,156,630
강원도	409,538	100,215	102,263	60,067	76,208	23,063	47,722
경기도	2,290,017	620,301	632,742	312,886	387,455	112,642	223,991
경상남도	751,230	196,445	200,307	97,921	133,178	35,399	87,980
경상북도	727,384	177,746	181,827	99,740	133,605	41,210	93,256
광주광역시	267,824	67,871	74,770	37,734	48,088	12,433	26,928
대구광역시	524,135	137,505	150,754	69,694	92,340	24,019	49,823
대전광역시	280,559	76,574	79,901	37,364	46,269	13,412	27,039
부산광역시	860,816	229,480	252,089	120,487	148,420	35,805	74,535
서울특별시	2,057,501	534,457	594,646	299,071	354,746	96,776	177,805
세종특별자치시	42,431	11,432	11,728	5,443	6,873	2,166	4,789
울산광역시	196,428	61,789	60,098	24,236	28,353	6,239	15,713
인천광역시	546,597	152,342	154,724	72,376	89,925	24,156	53,074
전라남도	545,284	120,997	121,235	80,599	111,376	32,222	78,855
전라북도	485,107	112,377	116,366	69,680	92,691	29,407	64,586
제주특별자치도	136,105	33,664	34,645	19,329	24,002	6,961	17,504
충청남도	509,663	121,157	122,778	71,608	91,822	33,976	68,322
충청북도	372,850	94,711	94,973	51,664	66,032	20,762	44,708

[부그림 2]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조사 목표할당 분포: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

표본	계	만60세~만69세		만70세~만79세		만80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000	260	273	138	174	50	105
서울특별시	187	49	54	27	32	9	16
부산광역시	79	21	23	11	14	3	7
대구광역시	48	13	14	6	8	2	5
인천광역시	50	14	14	7	8	2	5
광주광역시	23	6	7	3	4	1	2
대전광역시	25	7	7	3	4	1	3
울산광역시	19	6	6	2	3	1	1
경기도	207	56	58	28	35	10	20
강원도	37	9	9	6	7	2	4
충청북도	35	9	9	5	6	2	4
충청남도	46	11	11	7	8	3	6
전라북도	44	10	11	6	8	3	6
전라남도	49	11	11	7	10	3	7
경상북도	67	16	17	9	12	4	9
경상남도	68	18	18	9	12	3	8
제주특별자치도	13	3	3	2	2	1	2
세종특별자치시	3	1	1	0	1	0	0

[부그림 5] 건강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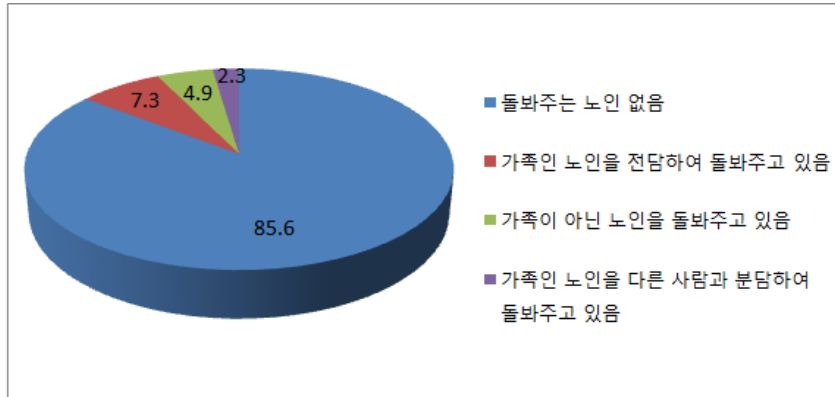
<부표 1> 건강상태: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단위: %)

전체	사례수 (명)	건강상태가 좋아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건강상태가 나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건강상태가 나빠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아야 한다	계
	(1,000)	37.1	27.5	26.9	8.5	100.0
성별						
남자	(448)	43.4	30.6	20.4	5.6	100.0
여자	(552)	32.0	25.0	32.1	10.9	100.0
연령						
60대	(533)	45.0	27.0	24.0	3.9	100.0
70대	(312)	33.3	27.9	30.8	8.0	100.0
80대 이상	(155)	17.3	28.6	28.8	25.3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40.3	28.8	25.3	5.6	100.0
사별	(187)	26.8	22.7	32.3	18.2	100.0
미혼/이혼/기타	(57)	28.1	26.3	29.8	15.8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30.9	22.8	25.6	20.7	100.0
배우자와만	(552)	39.0	30.0	25.3	5.6	100.0
자녀와만	(69)	26.1	25.9	44.3	3.7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47.8	27.7	22.1	2.4	100.0
기타	(29)	27.3	20.5	44.4	7.8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32.1	24.9	32.1	11.0	100.0
중층	(486)	41.3	29.9	22.3	6.6	100.0
상층	(29)	49.8	33.0	17.2	0.0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52.4	21.9	19.8	5.9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50.8	21.5	18.6	9.0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39.1	34.8	17.4	8.7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60.9	16.5	22.6	0.0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34.5	28.5	28.1	9.0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830)	40.1	29.0	26.1	4.7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23)	30.0	21.6	33.9	14.5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18)	0.0	27.1	23.1	49.8	100.0
외부 사람 돌봄(3)	(29)	3.5	10.4	20.8	65.3	100.0
돌봄 수혜(1+2+3)	(170)	22.2	20.3	30.5	27.0	100.0

[부그림 6]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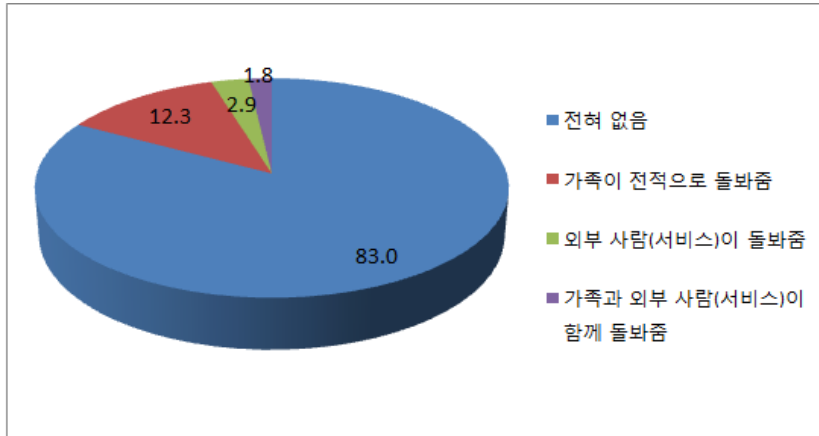
〈부표 2〉 주변 노인 돌봄 여부: 귀하는 가족 등 주변 노인을 돌보고 계십니까?

(단위: %)

전체	사례수 (명)	돌봐주는 노인 없음	가족인 노인을 전담하여 돌봐주고 있음	가족이 아닌 노인을 돌봐주고 있음	가족인 노인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봐주고 있음	계
	(1,000)	85.6	7.3	4.9	2.3	100.0
성별						
남자	(448)	87.9	6.3	2.7	3.1	100.0
여자	(552)	83.7	8.1	6.6	1.6	100.0
연령						
60대	(533)	81.4	9.4	5.6	3.6	100.0
70대	(312)	91.3	4.5	3.5	0.6	100.0
80대 이상	(155)	88.1	5.7	4.9	1.3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85.2	8.4	3.7	2.6	100.0
사별	(187)	86.8	3.2	9.4	0.5	100.0
미혼/이혼/기타	(57)	86.0	5.3	5.3	3.5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89.0	2.7	6.5	1.8	100.0
배우자와만	(552)	86.3	7.9	3.8	2.0	100.0
자녀와만	(69)	87.0	4.3	7.2	1.4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84.2	9.5	3.2	3.2	100.0
기타	(29)	48.8	27.3	13.7	10.2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86.9	5.9	5.0	2.3	100.0
중층	(486)	83.8	8.7	5.1	2.5	100.0
상층	(29)	93.1	6.9	0.0	0.0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79.6	10.0	8.0	2.4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88.5	5.7	2.9	2.9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89.4	5.1	4.1	1.5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89.9	7.7	0.0	2.3	100.0
돌봄 수혜 여부						
전혀 없음	(830)	85.5	7.3	5.1	2.0	100.0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1)	(123)	88.7	7.3	2.4	1.6	100.0
가족/외부사람 함께 돌봄(2)	(18)	62.0	16.3	5.4	16.3	100.0
외부 사람 돌봄(3)	(29)	89.6	0.0	6.9	3.5	100.0
돌봄 수혜(1+2+3)	(170)	85.9	7.0	3.5	3.5	100.0

[부그림 7] 돌봄 수혜 여부

(단위: %)



〈부표 3〉 돌봄 수혜 여부: 귀하는 현재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사례수 (명)	전혀 없음	가족이 전적으로 돌봐줌	외부 사람 (서비스)이 돌봐줌	가족과 외부 사람 (서비스)이 함께 돌봐줌	계
	(1,000)					
성별						
남자	(448)	82.7	14.8	1.7	0.8	100.0
여자	(552)	83.2	10.2	3.9	2.7	100.0
연령						
60대	(533)	87.2	10.3	0.9	1.5	100.0
70대	(312)	81.7	13.8	3.8	0.6	100.0
80대 이상	(155)	71.1	15.9	7.6	5.4	100.0
혼인상태						
기혼	(756)	83.9	13.5	1.1	1.5	100.0
사별	(187)	78.5	9.9	7.9	3.7	100.0
미혼/이혼/기타	(57)	86.0	3.5	10.5	0.0	100.0
동거상태						
혼자	(223)	81.7	6.3	8.9	3.1	100.0
배우자와만	(552)	83.8	13.4	1.3	1.6	100.0
자녀와만	(69)	81.2	18.8	0.0	0.0	100.0
배우자와 자녀 함께	(127)	82.2	16.2	0.0	1.6	100.0
기타	(29)	86.3	3.4	6.8	3.4	100.0
소득계층						
하층	(485)	82.2	11.8	3.3	2.8	100.0
중층	(486)	83.6	12.9	2.5	1.0	100.0
상층	(29)	86.3	10.3	3.4	0.0	100.0
건강상태						
돌봄 가능할 정도로 좋음	(371)	89.8	9.9	0.3	0.0	100.0
돌봄은 안 되지만 좋음	(275)	87.5	9.6	1.1	1.8	100.0
나쁘지만 돌봄 받을 정도는 아님	(269)	80.7	15.5	2.2	1.6	100.0
돌봄 받을 정도로 나쁨	(85)	46.2	20.9	22.1	10.8	100.0
주변 노인 돌봄 여부						
돌봄 제공(1+2+3)	(145)	83.5	9.6	4.9	2.1	100.0
가족을 전담하여 돌봄(1)	(73)	83.7	12.2	0.0	4.1	100.0
가족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돌봄(2)	(23)	73.9	8.7	4.3	13.0	100.0
가족이 아닌 노인 돌봄(3)	(49)	87.7	6.2	4.1	2.1	100.0
돌봐주는 노인 없음	(856)	82.9	12.7	3.0	1.3	100.0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발행 2018년 11월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화 02) 2125-9837 FAX 02) 2125-0933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제작 (주)현대아트컴(02-2278-4482)
ISBN 978-89-6114-668-5 93330

